


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연구

2012. 0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연구

2012년 01월 인쇄
2012년 01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번지
전화 02-760-4500, 600
팩스 02-760-4706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연구

/ 2012. 01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01월 23일

주 관 기 관 : 송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정무성 박사(송실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한용외 박사(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

황정은 박사(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 연구소장)

서정민(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김성미(사회복지학 석사)

김은경(사회복지학 석사)

김은정(송실대학교 석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15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21
1. 문화나눔의 개념	23
2. 문화복지의 타당성과 역할	25
3.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34
4. 국내·외 문화복지의 현황	38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55
1. 빈곤과 소외	57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국 긴급지원 사업 통합기준(안)’에 따른 구분	66
3. 사회적기업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	67
4. 서민문화정책대상	70
5.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72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79
1. 조사 방법	81
2. 수요조사 결과	87
3. 전문가집단 면접	132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137
1. 문화소외계층의 개념화와 규모	139
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별 대상수 확대 방안	158
3.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별 분석	165
4. 문화복지 추진체계 개선 방안	173
참고문헌	177
부 록	179
1. 문화나눔사업 수요조사 결과표	181
2. 문화소외계층 추정 근거	222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화관련 사업비	225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상별 문화·예술 관련 배분 사업	226
5.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설문지	237

표 목차

〈표 2-1〉 정부별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34
〈표 2-2〉 소득계층별 연간 문화행사 관람횟수	37
〈표 2-3〉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분류 및 사업비	39
〈표 2-4〉 지역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46
〈표 2-5〉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47
〈표 2-6〉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51
〈표 2-7〉 일본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 제 2의 9 내용(요약)	52
〈표 2-8〉 외국의 문화 관련 바우처 제도	53
〈표 3-1〉 절대적 빈곤 :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전 가구기준)	58
〈표 3-2〉 상대적 빈곤 : 중위소득·지출 기준 빈곤율(전 가구기준)	59
〈표 3-3〉 주관적 소득수준	60
〈표 3-4〉 소득 만족도	60
〈표 3-5〉 구빈곤과 신빈곤의 특징 비교	63
〈표 3-6〉 2012년 저소득층 소득기준	66
〈표 3-7〉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67
〈표 3-8〉 사회적기업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67
〈표 3-9〉 취약계층 범주	70
〈표 3-10〉 헌법의 평등권에 기초한 소외계층의 분류	72
〈표 3-11〉 지역별 문화향유 실태	73
〈표 3-12〉 지역별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현황(2012년 2월 8일 기준)	74
〈표 4-1〉 조사대상 지역	82
〈표 4-2〉 1차 우편 설문조사 - 2011 문화나눔사업 참여 기관 中	83
〈표 4-3〉 2차 직접 설문조사 - 공연 현장	84
〈표 4-4〉 3차 설문조사 - 1,2차 설문조사시 미포함 기관	84
〈표 4-5〉 설문지 문항 구성	86
〈표 4-6〉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7
〈표 4-7〉 성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8
〈표 4-8〉 청소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9

〈표 4-9〉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지역별)	91
〈표 4-10〉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연령별)	92
〈표 4-11〉 문화바우처 개선점(장애유무)	93
〈표 4-12〉 공연관람, 전시관람 및 창작활동을 할 의향 조사	94
〈표 4-13〉 공연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94
〈표 4-14〉 전시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중선택)	95
〈표 4-15〉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다중선택)	96
〈표 4-16〉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2가지 선택)	97
〈표 4-17〉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97
〈표 4-18〉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2가지 선택)	98
〈표 4-19〉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99
〈표 4-20〉 가장 하고 싶은 문화예술 창작활동(2가지 선택)	100
〈표 4-21〉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생각(연령별)	104
〈표 4-22〉 공연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연령별)	104
〈표 4-23〉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연령별, 2가지 선택)	105
〈표 4-24〉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청소년 기준)	106
〈표 4-25〉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노인 기준)	107
〈표 4-26〉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하고 싶은 생각(연령별)	108
〈표 4-27〉 전시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연령별, 다중선택)	108
〈표 4-28〉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연령별, 2가지 선택)	109
〈표 4-29〉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연령별)	110
〈표 4-30〉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의향 조사	111
〈표 4-31〉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연령별, 2가지 선택)	111
〈표 4-3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연령별, 3가지 선택)	112
〈표 4-33〉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연령별, 다중 선택)	113
〈표 4-34〉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 기준(연령별, 다중 선택)	114
〈표 4-35〉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연령별, 다중 선택)	115
〈표 4-36〉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장애인, 2가지 선택)	116
〈표 4-37〉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장애인)	116
〈표 4-38〉 전시를 관람 할 의향 조사(장애인)	117
〈표 4-39〉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장애인, 2가지 선택)	117
〈표 4-40〉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장애인)	118

〈표 4-41〉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장애인, 2가지 선택)	119
〈표 4-4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장애인)	120
〈표 4-43〉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 기준(장애 유무, 다중 선택)	121
〈표 4-44〉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할 의향 조사(소득별)	121
〈표 4-45〉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소득별, 2가지 선택)	122
〈표 4-46〉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소득별)	123
〈표 4-47〉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할 의향 조사(소득별)	123
〈표 4-48〉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소득별, 2가지 선택)	124
〈표 4-49〉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소득별)	124
〈표 4-50〉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의향 조사(소득별)	125
〈표 4-51〉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소득별, 2가지 선택)	125
〈표 4-5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소득별, 3가지 선택)	126
〈표 4-53〉 공연을 관람할 의향 조사(지역별)	127
〈표 4-54〉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지역별, 2가지 선택)	128
〈표 4-55〉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지역별, 2가지 선택)	128
〈표 4-56〉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의향 조사(지역별)	129
〈표 4-57〉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지역별, 2가지 선택)	129
〈표 4-58〉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지역별, 3가지 선택)	130
〈표 4-59〉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지역별)	131
〈표 4-60〉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 기준(지역별, 2가지 선택)	132
〈표 4-61〉 FGI 구성	133
〈표 4-62〉 FGI 요약	136
〈표 5-1〉 2011 최저생계비	141
〈표 5-2〉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41
〈표 5-3〉 차상위계층 현황	142
〈표 5-4〉 등록장애인 현황	143
〈표 5-5〉 노인가구 추이	144
〈표 5-6〉 노숙인 현황	145
〈표 5-7〉 다문화가정 현황	147
〈표 5-8〉 한부모가정 현황	148
〈표 5-9〉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	149
〈표 5-1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150

〈표 5-11〉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150
〈표 5-12〉 수급자수와 구성비율(2010년)	151
〈표 5-13〉 소외지역 현황	152
〈표 5-14〉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	153
〈표 5-15〉 종합병원 입원 환자 현황	154
〈표 5-16〉 청소년 현황	155
〈표 5-17〉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155
〈표 5-18〉 1,2,3 단계별 대상 현황	157
〈표 5-19〉 사업성과(계량실적 - 2011년)	159
〈표 5-20〉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대상 추정	159
〈표 5-21〉 2011년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계층별 관람 현황	160
〈표 5-22〉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대 수	161
〈표 5-2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현황	162
〈표 5-24〉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지원연계 서비스	162
〈표 5-25〉 사랑티켓 지원 방식	163
〈표 5-26〉 사랑티켓 사업성과(2011년)	164
〈표 5-27〉 사랑티켓 아동·청소년 대상 수(24세 이하)	164
〈표 5-28〉 초기학령기 인구 수(5세~7세)	165
〈표 5-29〉 노인가구	165
〈표 5-30〉 문화나눔 단위사업별 홍보 현황(2011)	166
〈표 5-31〉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 지원대상별 협력기관	167
〈표 5-32〉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168
〈표 5-33〉 예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1 장애인 여가문화 지원사업	172
〈표 5-34〉 예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1 장애인 정보·이동편의 지원사업	173

그림 목차

[그림 2-1] Maslow의 욕구 단계	25
[그림 2-2] 국가의 발전단계	27
[그림 2-3]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30
[그림 2-4]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전환구조	32
[그림 3-1] 차상위계층의 규모 추정	62
[그림 3-2] 문화예술 향유 정도가 다른 이유	64
[그림 3-3]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	65
[그림 3-4] 서민과 문화취약계층의 관계	71
[그림 3-5] 소득수준과 문화욕구를 반영한 유형분류	76
[그림 4-1] 조사 일정표	85
[그림 4-2] 문화바우처 개선점	92
[그림 4-3] 일반적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3가지 선택)	101
[그림 4-4] 문화나눔활동의 참여 분야 선택 기준(다중선택)	102
[그림 4-5]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다중선택)	103
[그림 5-1] 문화욕구와 소득수준을 반영한 문화소외계층 분류	140
[그림 5-2]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분포	142
[그림 5-3] 1단계 대상별 종합 구성도	148
[그림 5-4] 2단계 대상 종합구성도	152
[그림 5-5] 3단계 대상 종합구성도	156
[그림 5-6] 소외계층 현황	158
[그림 5-7] 1단계 대상 추진체계	175
[그림 5-8] 2단계 대상 추진체계	176
[그림 5-9] 3단계 대상 추진체계	176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 근본적으로 '복지'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부터 비롯되어, 경제적인 소득 기준 원칙하에 저소득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화와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개념과 영역도 차원을 달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변화를 모색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 과거의 복지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었다면 오늘날 복지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과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함에 따라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접근된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문화'는 궁극적으로 정서를 순화하고, 감수성을 함양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 하에서 '문화복지'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영역이 문화복지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출현과 문화복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전환을 통해 문화복지는 새로운 사회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요소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국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새로운 문화복지의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갖게 한다. 또한 기존의 문화복지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법정 저소득층을 1차적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장 서론

과연 문화복지에서 말하는 소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문화복지의 확대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다.

-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문화소외계층’이란 누구이며, 어떤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새로운 개념 정립을 위한 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문화 향유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재개념화, 재범주화해보고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화복지의 사업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틀 안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 등의 총체적인 경제 위기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복권을 통한 가정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계층의 증가를 낳았으며 이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예산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복지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을 독려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복권기금 사업은 복권 구매자의 69.2%가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서민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반영한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은 사회복지의 지원대상과 중복 될 뿐 만 아니라, 문화나눔사업의 확대지향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대상층을 파악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과 다른 각도의 기준을 적용해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상자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수혜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을 재개념화하고 범위를 명확화하여 그 규모와 요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문화나눔사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나눔사업 확대를 위해 단계별 대상 발굴 방안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복지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소외계층’의 개념화 및 범위 명확화와 더불어 규모를 예측하고, 그들의 욕구파악을 통해 대상별, 지역별, 사업별로 향후 시행방안 및 사업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 이를 통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수요분석을 통한 상호이해를 근거로 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존감 확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문화나눔사업의 양적인 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1. 문화나눔의 개념
2. 문화복지의 타당성과 역할
3.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4. 국내·외 문화복지의 현황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1. 문화나눔의 개념

- 최근 문화나눔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라는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눔의 한 영역으로 ‘문화나눔’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사업이 전개되면서부터 ‘문화나눔’ 용어가 사용되었다. 2004년, 복권기금이 문예진흥기금사업에 유입되면서 복권기금을 활용한 각종 문화사업이 전개되었고 그 가운데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문화나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문화나눔은 일반적인 나눔이 의미하는 ‘재정적 기부에 의한 분배’에 더하여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소외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사업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문화나눔은 ‘문화를 수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 단체가 문화예술 재능을 제공하여 체험하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이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삶의 열망을 얻는 사례를 통해 재정적 도움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정서적 결핍을 치유하는 효과가 나타나 문화나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와 ‘복지’의 복합어로서 ‘문화’가 ‘사회복지’라는 영역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신조어이다. 현택수(2006)의 개념정리에 따르면 문화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문화복지의 목표는 ‘문화예술’이라는 정신적 활동을 통해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심미적인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총체적인 활동을 말한다.
- 현재 한국에서 문화복지 개념에 관한 논의는 문화정책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로 각자의 영역을 강조하며 펼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이 양자가 주장하는 문화복지 정의 역시 명쾌하게 구분되어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복지 개념은 영역화 측면에서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정갑영·장현섭(1995: 28)은 문화복지를 사회전반의 가치관, 구성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규범,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적 재화 등을 창조, 변화,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 사회의 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단위 영역 속의 개인이나 집단이 상실하였거나 약화된 전체 사회 또는 하위체계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이런 체계에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기능장애를 예방하게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창의력과 적응력을 계발하도록 갖가지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 이 같은 정의를 참고하여 김민정·송주미(2004:63)도 문화복지를 모든 국민의 문화환경을 개선 및 정비하고 개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현택수(2006: 103)는 문화복지를 사회복지 하위영역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문화복지를 문화향수권을 갖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의 보편적 서비스 원리에 입각해 모든 국민의 문화환경을 개선 및 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의 확대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화복지에 대한 정의는 문화복지가 사회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며 그와 같은 접근방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여러 연구자들이 문화정책 측면에서 강조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 한편 최종혁과 동료 연구자(2009)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문화복지는 굳이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수권 보장, 일반 국민에 대한 문화적 공공서비스 제공,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공공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문화복지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좁게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넓게는 일반대중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개인들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잠재역량 등을 높이기 위한 작간접적인 일체의 문화예술적 노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도 역시 사회복지 관점을 어느 정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행간을 통해 감지할 수 있으나 ‘문화 예술적 노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문화정책계와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사회복지계를 아우르는 다소 객관적인 노력이 감안된 정의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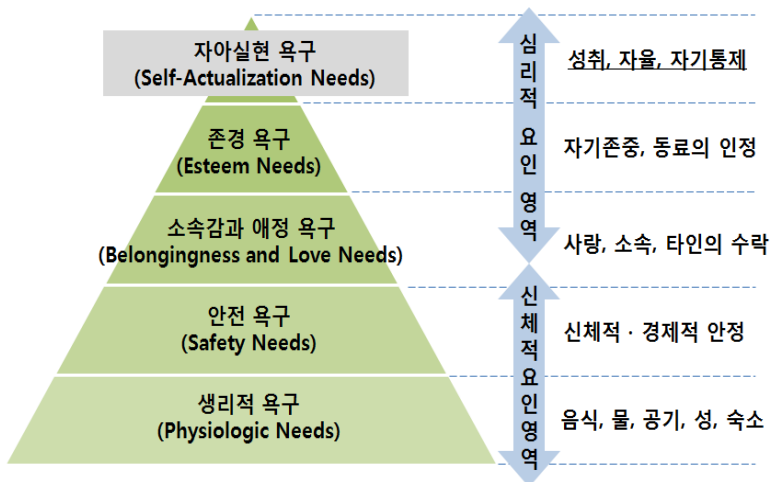
2. 문화복지의 타당성과 역할

1) 인간의 욕구와 문화

□ 문화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대상이자 영역이 되려면, 우선 인간의 문화적 욕구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충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기본적 욕구이자 사회적 욕구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택수(2006)의 정리를 재 인용하여 몇몇 학자들의 주장에서 그 타당한 단서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Maslow의 5단계 욕구설

[그림 2-1] Maslow의 욕구 단계



□ Abraham Maslow는 <동기와 성격(Motivatioin and Personality), 1943>이라는 책에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5단계)로 상승하는 인간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 5단계 욕구는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로서, 문화복지의 타당성은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결핍된 상태는 소외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며 권태를 느끼고 제한된 일상활동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된 삶은 건강한 호기심과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며 즐겁게 일하여 개인의 가치 실현과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문화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물질적·사회적 욕구가 충족된 후 자아실현의 고차원적인 욕구에 해당되며, 이는 문화가 개인의 재능, 잠재력, 가능성을 실현시켜주고 심미적이고 수준 높은 창조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2) Harvey의 9가지 인간 욕구의 영역

- Harvey는 인간의 욕구 영역을 음식, 주택, 의료, 교육, 사회와 이웃봉사, 소비재, 여가, 지역편의시설, 교통시설 등 아홉 가지로 설정하였다(Harvey, 1973: 102).
- Harvey(1978: 102, 박경일, 2007: 116에서 재인용)는 사회적 욕구에 음식, 주택, 의료, 교육 등과 더불어 오락적 기회를 포함하였고, 사회복지가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오락적 기회, 즉 여가는 점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욕구 중 하나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시대 보다 커지고 있고, 여가에 따른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다른 사회적 요소들처럼 여가에 대해서도 혜택의 사각지대가 부각되고 있다.

(3) Lowy

- Lowy는 인간의 욕구를 일차적 욕구와 이차적 욕구로 나누고 있다. 일차적 욕구에는 ① 생물학적/생리적인 것- 음식, 영양, 식사, 성, 의복, 주택, ② 경제- 소득, ③ 보건-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안정, ④ 심리적- 애정/반응/보장, 유용성/새로운 경험, 일체감과 신분의식 등을 포함한다. 이차적 욕구는 ① 사회적- 상호작용적 역할과 상호 인간관계, 가족, 동료집단, 비동료집단, 조직과의 상호관계, ② 활동- 직업(일), 이동, ③ 여가-레크레이션, ④ 문화적인 것- 정보, 지식, 심미, 놀이, ⑤ 정치적인 것- 법적 지위/보호, 참여/지역사회와 국가의 일에 참여, ⑥ 영적(종교적)인 것- 존재의 의미, 미지의 세계(죽음을 포함하여) 등을 의미한다(Lowy,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1979: 116).

- Lowy가 말한 일차적 욕구는 Maslow가 말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기초로 하면서 소속의 욕구를 일부 포함하고, 이차적 욕구는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기초로 하면서 소속의 욕구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이의 분류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일차적 욕구에 해당되지만, 직업적인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는 이차적 욕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일차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외식을 하는 것은 이차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볼 때 문화는 의식주 같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1차적 욕구는 아니다. 그러나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존재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 수준 이상으로 필요한 사회적 욕구이다. 문화복지는 이렇게 삶의 조건이 변화하고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려는 정책적·제도적 배려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으로서 문화복지는 충분히 그 존립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2) 복지사회와 문화복지

-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전환은 사회권(Social rights)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켰으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에 대비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우리사회에 문화복지가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제기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2] 국가의 발전단계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 국가의 발전단계는 일반적으로 발전국가, 개발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의 단계를 거쳐 복지사회로 이어지며 복지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함께 민간차원의 나눔 운동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사회, 심라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 국가발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반성적 고찰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강한 욕구가 표출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창의적 인재 배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는 하드웨어보다 인간의 창조성, 감수성 같은 휴먼웨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발전에 있어서 경제와 문화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는 문화에 대한 향수를 고조시켰으며 문화예술 창조 욕구를 증가시켰고, 이와 더불어 문화 소외현상과 문화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문화복지가 거론되었다.
- 1993년 문민정부에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사회 분야 과제로서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였고, 당시 문화복지는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복지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한국형 복지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인 전제였다. 이는 복지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적, 물질적 측면만을 강조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개념이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경제적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정신적, 문화적 욕구 충족이 조화되는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복지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복지국가 모델을 발전시킨 서구 국가들이 물질적,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상실, 인간소외, 가족해체, 근로의욕 저하, 청소년 문제, 마약 등 약물의 남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지의 역할과 타당성이 강조되었다 (문화체육부, 1996:5~6).
- 복지사회의 발전단계는 사회복지의 기능적 개념에 입각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1) 선별적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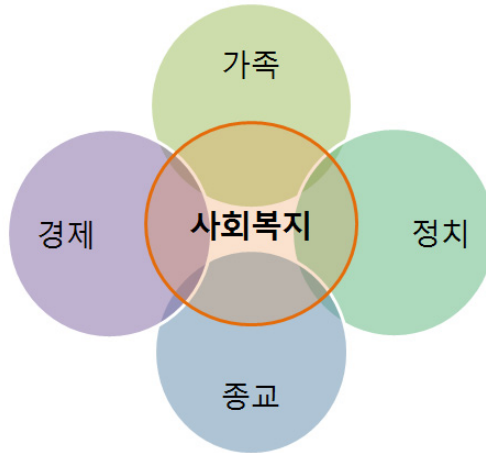
- 선별적 개념의 사회복지지는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가 기능적으로 실패할 때 임시적으로 보충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며 사회복지활동은 선별적이고 주변 예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 할 뿐이다. 또한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기존 사회제도들이 기능하여 사회복지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며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불충분 할 경우 제3의 대안,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복지적 개입이 정당화된다. 즉 보편적 복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지를 말하며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진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이면서 한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충적 복지의 개념이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는 고도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현대의 사회복지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의 토대인 시장논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선별적 복지는 현대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초기 사회복지의 기능적 개념에 불과하며 보충적, 일시적, 사후적 또는 대체적인 성격의 사회복지로 볼 수 있다.

(2) 보편적 복지

- 보편적 개념의 사회복지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서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사회복지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된다.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시민권이자 보편적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며 급여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집합적인 연대의 원리를 강조한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며, 사회복지제도는 각 개인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 복지사회를 사회복지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입장에서 사회 통합 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지는 핵심적인 사회제도로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그림 2-3]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 문화복지는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주요한 개념의 하나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체계에서 보다 상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욕구의 충족을 통해 복지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적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국민 개개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문화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복지의 핵심적 내용이며, 이는 문화예술이 그 자체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문화권의 개념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이렇게 가치재(merit goods)로서 인식하고 하나의 권리로 인정한다면 개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수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다. 한국에서도 헌법(제11조)과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등을 통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를 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 구체적인 위상은 어떤 사회복지를 채택하는가에 직결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사회와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에서의 문화복지의 위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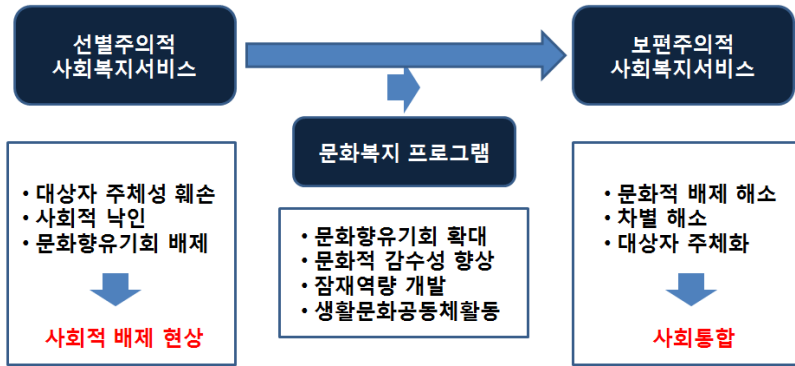
- 문화복지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을 의미한다. 자아실현과 문화생활의 기회 확대, 즉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면서 동시에 가족 및 공동체와의 화합과 민주적 참여 속에 상호 정서적 지지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의 구축이 사회복지의 최종 지향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복지사회(Welfare Society)에서의 문화복지의 의미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확대된 복지영역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국가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오일 쇼크(1973-1974)가 발생하여 선진 복지국가의 경제 발전을 강타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케인즈식 경제주의를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완전고용의 이념에 강박관념을 느낀 정부가 고용책에 과도한 투자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이다. 보모 같은 국가(nanny state)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온 개인이나 집단에게 책임과 자유정신을 되돌려주고 참여정신을 복돋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원 분야의 활동이 강조되었다.
- '복지사회'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한 복지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를 느끼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말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 개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간적인 삶의 구현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한마디로 '사회의 인간화'를 요구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 이런 차원에서 '문화복지'는 복지사회의 완성을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개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고,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복지사회'에 문화적 차원의 복지활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미완성의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그림 2-4]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전환구조



3) 문화소외 현상에 따른 문화복지의 역할

-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창의성 개발이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문화와 지식, 정보가 가장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활용성 높은 지배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벗어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구조를 원하게 되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문화를 즐긴다는 것, 즉 문화향수는 삶의 질을 좌우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그러나 공공재, 적어도 준공공재로 분류되어야 하는 문화적 서비스가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경제구조 상에서의 가격가치 형성이 틀을 갖추어감에 따라 사회의 전 구성원이 즐겨야할 문화와 예술이 일반 서민들로서는 즐기기 어려운 고급 활동으로 인식되거나 변질되어 문화적인 소외의 개념을 생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빈곤과 소외의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 소외를 통해 나타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사회에서는 문화 향유권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이는 최근 정착된 주 5일 근무제와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주 5일 수업제 등으로 여가 및 가족 간의 공동 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향유 욕구는 늘어난 반면 사회경제적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문화소외계층은 저소득에 따른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낮은 학력, 산간벽지나 취약지역 거주, 소수민족 출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주류문화로부터 배제되거나 독자적인 자신의 문화를 생산하고 체험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되었다.
- 복지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의 역할과 기능은 더 중요해질 것이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력을 증진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향수와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는 개개인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회요인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경향은 문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양극화는 미래 사회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의 결핍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양극화의 재생산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문화에서는 창작이건, 향유건 최소한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어 사회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문화복지의 활동 비용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여러 조건에서도 국민과 국가의 문화역량 수준을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은 반드시 고려되기도 한다.
-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의 실천에도 국가의 역할만을 무한정 주장하거나 강조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만큼이나 민간분야의 참여와 의지 실현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개인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문화복지가 추구하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과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사회 개발에 대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 변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데 있다.

3.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 국내의 문화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각 정부별 문화복지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정부별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시기	배경 및 목표	관련사업	비고	
전두환 정부	삶의 질 언급 문화권 →	문화발전 혜택이 전국에 확산	지방 문화시설 건립	문화복지 직접언급 없음
노태우 정부	삶의 질 →	국민문화 향수증대	관련 통계조사 실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발전 10개년계획
민민정부	복지의 개념확장 →	삶의질 세계화 문화감수성 증진	문화의집 조성	문화복지기획단 문화복지언급
국민의 정부	창의성제고와 국가발전 →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문화자원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와 국가발전
참여정부	취약계층 문화 기회 확대	저소득층, 노인, 이주노동자, 낙후지역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예술교육 강조	문화복지대상 명확화, 범위축소 복권기금활용	
현정부	문화정책 방향 1. 문화예술 본연의 가치 강조 2. 예술지원 체계 개선 3.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4. 예술이 복지 및 창작 역량 제고 5. 녹색생활문화 기반 조성 6. 고유문화자원의 활용 및 콘텐츠구성 활성화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수정인용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 문화를 복지적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을 ‘문화복지’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문화 복지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 무렵이다. 제5공화국은 헌법에 문화를 삽입함으로써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문화국가 구성원리를 표방하였으며, ‘문화복지’를 직접 언급하고 정책화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주창하였다. 어휘적으로 ‘문화적 복지’를 언급하면서 지역 문화시설의 건립과 격차해소, 이를 통한 지역문화의 진흥 등에 대하여 노력하였다.
- 이 후 1990년 문화부가 설립되고, 문화정책이 영역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문화복지라는 용어의 사용은 점차 빈번해졌다. 또한 문화향수 증진이 화두였는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1990년 시작)’. 관련 통계조사(1988년 시작) 등을 수행하는 등 문화 향수자에 대한 관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민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세계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OECD 가입과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경제뿐 아니라 여가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결핍으로서의 자유(사회복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문화복지)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1996년 문화복지기획단의 설립과 ‘문화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복지를 정책영역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실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시기 문화복지의 중점정책은 일반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에서 문화체험을 하여 개개인의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 곧 문화의 집 건립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 후 국민의 정부에서 문화정책의 목표는 ‘창의적 문화복지국가’였는데, 이것은 문화를 통한 창의성의 발현이야말로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원동력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역할확대, 문화지구, 문화프로그램 정보, 이른바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 문화자원봉사자 육성,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 문화복지는 개개인의 감수성 증진이라기보다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창의성을 강조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003년에 등장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중장기 문화정책 비전을 담은 ‘창의 한국’을 발표하면서 문화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7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취약계층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층의 문화권 신장”을 내세웠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복지가 주요 문화정책으로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가 문화복지의 핵심영역이 되었다. 근 30여 년에 걸쳐 발전해온 현재의 문화복지는 문화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문화생활 향상을 복지의 중요한 측면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 기존의 문화복지가 국민 모두의 감수성 증진과 창의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하여, 그 대상의 범위가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목적이 감수성(창의성) 제고보다는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변되는 특정 대상만을 향한 ‘선택적’ 문화복지 정책을 크게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하였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주로 사회 전체의 문화향유, 즉 ‘보편적’ 복지 정책을 지향하는데 반해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즉 선택적 복지를 전면에 부각시킨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의 대체성격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을 부각시킨 이유는 기본적인 의식주나 전통적인 복지 영역인 복지나 의료 분야 같은 영역 이상으로 문화 영역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왔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2010년 조사한 소득계층별 연간 문화행사 관람횟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의 연평균 문화행사 관람횟수는 4.18회이지만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은 0.89회로서 문화 향유권에 대해 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더욱이 이 수치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격차가 크게 벌어져 2008년의 경우에는 9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문화향유 수준의 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과거의 틀을 넘어서 이제는 문화복지에까지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소득계층 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표 2-2〉 소득계층별 연간 문화행사 관람횟수

가구소득		0~100만	100~199만	200~299만	300~399만	400만~	국민평균
관람횟수	2010년	0.89회	2.33회	4.16회	4.65회	5.84회	4.18회
	2008년	0.55회	2.74회	4.44회	6.11회	7.64회	4.88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문화향수 실태조사〉

- 이러한 문화복지 수요의 증가 측면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 재원(財源)의 변화도 문화복지 정책이 강화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조성된 이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고를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체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복권기금이 그 조성과정에서의 역진적 성격, 즉 복권기금 구매자의 69.2%가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이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정 모금 활동이 중단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는 좀 더 많은 복권기금을 배정받고 아울러 그에 따른 현실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전과 같은 예술가와 예술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활동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문화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정책이 정부의 주도로 2005년에 시작된 것이다.
-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이후 친서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고, 문화복지 역시 이 같은 국가정책의 기초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 2010년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문화복지’ 라고 분명히 언급하였고 이의 실제 내용은 ‘문화를 누릴 기회의 고른 보장’, 대도시와 농어촌의 ‘문화격차 해소’에 관련되어 있었다.
-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은 국민들의 경제적 욕구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 즉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간이 지닌 문화적 욕구 충족은 ‘삶의 질’ 확보와 직결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문화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복지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우선 강조 되었다.

- 근래에 들어 우리 국민들은 국민소득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절대적인 문화적 욕구는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연장선상에서 문화를 개입 시켜 문화복지를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삼아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과 사업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이다. 이미 많은 선진의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서 벗어나 문화적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추세이다. 궁극적으로 문화복지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어 국내·외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문화역량을 극대화시켜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문화복지의 수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설민희, 2007).

4. 국내·외 문화복지의 현황

1) 국내현황

(1)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나눔사업의 목적

-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기타 특수한 환경적 여건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양극화해소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이 창의적 힘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함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표 2-3〉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분류 및 사업비

(단위:백만원)

사업명(사업비)		주관기관	사업내용	
소외계층 문화순회 (5,800)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산촌 및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을 문화예술 단체가 직접 찾아가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400)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장애 예술가 개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문화격차를 좁히기 위해 장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문화 나눔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2,400)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3~24세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지역 회원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공연 7,000원, 전시 1,000원)를 지원하는 사업
		문화바우처 (5,000)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료 및 도서 구입비(연간 5만원 한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문학 나눔 (2,000)	우수문학 도서보급	한국도서관협회	연4회 분기별로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작은 도서관, 교정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포하는 문학 향수 지원사업
		문학향수 (전국청소년 시낭송축제)	한국도서관협회	시를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시를 낭송하면서 시의 아름다움, 문학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문학체험 프로그램
		문학향수(문 학집배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에피루스	시인과 소설가가 직접 고른 국내외 우수한 시와 문장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주2회(월,목)메일링 서비스
	문화 멘토사업	사랑의책나누기 운동본부	군부대 인근 청소년들에게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지원	
	전통 나눔	전통나눔 (1,500)	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전통문화 공연·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DVD 발간 사업 추진
지역 시설 활용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4,800)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한 지역 문화인프라 시설인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지원 (600)	한국박물관협회	우수한 지역 문화 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1,200)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 사각지대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비 합계			23,700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2)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① 예술향유

- 예술행사 관람률

- 지난 1년 동안(2009. 3. 1~2010. 2. 28) 예술행사 관람률은 67.2%로, 2008년의 67.3%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2008년 조사 뿐 아니라 2003년 조사 이후 예술행사 관람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분야별로 보면, 미술전시회, 전통예술공연, 연극, 무용 분야의 관람경험이 늘었다. 예술분야별 연간 관람률은 문학행사 3.8%, 미술전시회 9.5%, 클래식 음악화오페라 4.8%, 전통예술공연 5.7%, 연극 11.2%, 무용 1.4%, 영화 60.3%, 대중가요콘서트/연예 7.6%로 나타났다.

평균 관람횟수는 문학행사 0.1회, 미술전시회 0.2회, 클래식음악화오페라 0.1회, 전통예술공연 0.1회, 연극 0.2회, 무용 0.04회, 영화 3.3회, 대중가요콘서트/연예 0.1회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여 영화부문의 연평균관람 횟수만 줄었고 다른 부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 예술행사 관람 희망분야

- 전체의 78.5%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희망분야는 영화 80.2%, 대중가요 콘서트/연예 40.5%, 연극 37.2%, 미술전시회 15.1%, 전통예술공연 13.6%,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11.9%, 문학행사 6.8%, 무용 3.8%의 순서로 나타났다(의향자3,923명 기준). 또한, 2008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예술행사의 내용과 수준'(2010년 39.0%, 2008년 41.6%)과 '관람비용의 적절성'(2010년 38.3%, 2008년 41.2%)이 예술행사 관람의 주요한 기준이었다.

- 예술행사 관람의 걸림돌

- 예술행사 관람의 걸림돌은 시간부족(41.5%), 비용과다(29.3%)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여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는 응답(2008년 29.0%)은 늘어난 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2008년 35.1%)은 줄었다. 예술행사 관람에서 뿐 아니라, 모든 문화활동에서 '시간부족'이란 응답이 대폭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하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②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9.2%였고, 지난 1년 동안(2009. 3.1~2010. 2. 28)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4.6%였다. 분야별 교육 경험률은 문학 1.9%, 미술 4.0%, 서양음악 2.9%, 전통예술 1.1%, 무용 0.8%, 연극 0.2%, 영화 0.6%, 가요/연예 0.9%, 역사문화유산 0.7%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여,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영화/비디오 분야에서 교육 경험이 약간 늘었다.

-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의향

- 전체의 16.6%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미술(4.7%), 문학(3.4%), 전통예술(2.8%), 서양음악(2.7%), 가요/연예(2.5%), 역사문화유산(2.1%), 영화(1.8%), 연극(1.5%), 무용(1.1%)의 순서로 나타났다(전체 5,000명 기준).

③ 문화시설이용

- 문화시설 이용률

- 지난 1년 동안(2009. 3. 1~2010. 2. 28) 10개 문화시설(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의 이용률은 52.2%, 그리고 문화행사(공연, 전시회, 문화강좌) 참여율은 26.6%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이용률(문화행사참여율)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민회관 11.5%(4.9%), 문화예술회관 11.5%(8.1%), 복지회관 11.4%(4.3%), 청소년회관 4.2%(1.8%), 문화원 2.1%(1.3%), 도서관 20.5%(3.5%), 박물관 14.8%(9.0%), 문화의 집 1.2%(0.6%),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1.7%(1.0%), 사설문화센터 6.0%(3.0%)로 나타났다.

- 문화행사 참여의향

- 전체의 51.5%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문화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희망 프로그램은 ‘공연관람’ (50.7%), ‘영화관람’ (25.2%), ‘미술전시회관람’ (9.7%), ‘문학강좌’ (8.6%), ‘예술관련 교양강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좌' (2.5%), '예술창작' (2.3%), '기타' (1.1%)의 순서로 나타났다(응답자 2,574명 기준). 또한, '프로그램의 수준' (56.4%)을 문화행사 참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④ 문화활동

- 문화관련 자원봉사 경험률

- 문화관련 자원봉사 경험률은 7.3%, 지난 1년동안(2009. 3.1~2010. 2. 28) 문화관련 자원봉사경험률은 3.2%, 연평균 자원봉사 횟수는 11.23회 였다.

-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

-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문학 0.4%, 미술 0.8%, 서양음악 0.4%, 전통예술 0.5%, 무용 0.4%, 연극 0.1%, 영화 0.5%, 가요/연예 0.3%, 역사문화유산 0.2%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전체의 14.4%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문화관련 동호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

⑤ 문화관광

- 지난 1년 동안(2009. 3. 1~2010. 2. 28)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률은 47.1%, 전체의 70.6%는 향후 1년 이내에 역사문화 유적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볼거리의 수준/다양성' (52.2%)을 가장 중요한 방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동일한 기간의 지역축제 관람률은 50.7%, 전체의 77.1%는 향후 1년 이내에 지역문화 축제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볼거리의 수준/다양성' (72.3%)을 가장 중요한 관람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⑥ 사이버 문화활동

- 인터넷 이용자들의 9개 문화관련(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영화/비디오, 가요/연예, 역사문화유산)사이트 접속률은 69.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5,000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문화관련 사이트 접속률은 50.0%였다.
- 사이트별 접속률을 전체 5,000명 기준(인터넷 이용자 3,619명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학 10.1%(14.0%), 미술 6.4%(8.8%), 서양음악 4.4%(6.1%), 전통예술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2.4%(3.3%), 무용 1.4%(1.9%), 연극 8.2%(11.4%), 영화 42.7% (59.1%), 가요/연예 27.0%(37.3%), 역사문화유산 7.0%(9.6%)였다.

⑦ 주요결과 분석 및 전망

- 큰 변화 없는 문화향유 경험

- 문화향유 경험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직접 예술행사를 관람하거나 문화시설 등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집단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시설 이용률이 2010년에 늘어난 것은(2008년 45.2% → 2010년 52.2%) 도서관과 박물관 관람률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도서관 정책의 강화, 그리고 박물관 무료관람 등의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직접적인 문화향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도농 간 격차 감소

- 첫째, 군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군지역이 도시지역을 상회하였다. 셋째, 예술행사 관람률에서 도시지역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군 지역은 2008년 대비 7.9% 상승하였다.

- 소득별 격차는 여전하지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는 늘어남

-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예술행사 관람률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친서민 문화정책이 다소 효과를 보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보다 소득별 격차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세대별 격차는 해소되지 않음

- 10대와 20대가 주요 관람자이고, 30세 이상부터는 점차적으로 예술행사 관람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예술행사 관람경험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고 연령층의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 문화향유의 여건변화 : 시간부족

-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술행사 관람 뿐 아니라 모든 문화활동의 걸림돌에서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시간부족이란 응답이 선행조사에 비하여 약 1.5배 증가한 점이다. 더욱이 ‘시간부족’으로 인해 문화활동이 어렵다는 의견은 성, 연령, 지역,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집단에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에 처음 나타난 결과로 매우 주의 깊은 해석을 요구한다.

2) 해외현황

- 해외의 문화복지 현황을 박조원 외(2011)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 문화관광 분야의 세계 제일 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현재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화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자유와 기회의 평등’ 강조, 문화적 접근성(accessibility) 확대, 자선후원제도의 강화, 예술교육의 중요성 강조, 문화/인종적 다양성(diversity) 강화를 특징으로 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연계하여 사회발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다른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도 각 주가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란 본질적으로 다양성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국가가 개입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근본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은 국립예술기금에서 맡고 있으며 각 주의 예술위원회가 있어 지원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다(권정화, 2003).
-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조직으로는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NEA), 국무부 내 공보담당 차관(Under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 Public Affairs), 예술 및 인문학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President'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 PCAH) 등이 있다. 특히 미국국립예술기금(NEA)은 1965년에 설립되어 순수 독립기구로 남아있으며 의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 받아 지역단위에서 공적, 사적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예술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예술적 탁월성에의 접근(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프로그램’과 ‘Challenge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America Fast-Track 보조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 ① 예술적 탁월성에의 접근(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예술적 창의성을 증진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유산을 보존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탁월성 및 문화 접근성 증진에 효과적인 사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적, 인종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예술활동에의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취약계층(Understand)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지원한다. 이 외에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관객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광범위한 예술적 형식과 활동을 경험하고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15,000~70,0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 ② Challenge America Fast-Track 보조금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예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예술단체에게 각 10,000달러를 지원하며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을 경우 1년 동안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그 외 주정부 및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주정부 및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뉴욕은 장애인을 위한 Theater Access Project(TAP)를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는 지역사업부의 레크레이션 보조금(Recreation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리조나 지역은 마리코파 카운티의 노인층을 위한 Community Ac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케네디 센터의 특별 티켓할인제도(Special Ticket Discount Card)등은 지역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김세훈, 2005).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표 2-4〉 지역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	내용
뉴욕	Theater Access Project(TAP)	장애인들이 뉴욕시의 공연예술을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을 예약하여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뉴저지	Recreation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레크레이션 보조금
아리조나	Community Action Program	노인을 위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
아이오와	'I-CARD' : Iowa-Cultural Alliance Recruitment and Development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으로서 문화예술기관의 무료 및 할인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나누어 줌으로서 경제적인 빈곤에 관계 없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갖도록 함
오스틴	하트하우스 (www.Hearthouse.org)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기관이며 방과 후 자율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학습 지원을 제공

- 위에서 살펴본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Juman Service), 대통령 예술인문과학자문위원회(PCOTAH: President Committee of the Arts and Humanities), 국립인문학 기금(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주예술단체협회(NALAA: 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Arts Agencies) 등이 있다. 또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 제도로서 대표적인 법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Service Act)상의 사회서비스 포괄 보조금인데 총 29종류의 지원서비스 중 문화적 혜택과 연관된 항목으로 레크레이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이 있다.

(2) 영국

- 영국의 공공정책은 크게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으며 문화정책 영역 또한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정책 및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밀접히 연관되며,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등을 통해 이들이 가지는 잠재적 역량을 계발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상황들을 예방해 나가기 위한 다중의 목적을 가지고 운용된다. 예컨대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은 많은 경우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이라는 정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며, 동 정책은 청소년 범죄, 인권, 평등, 건강 그리고 복지 등의 주제와 상호성을 가지며 추진되고 있다.

- 영국의 문화정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의회에 의해 결정되며 문화매체·체육부는(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는 문화정책의 총괄부서로서 국립문화예술기관들의 접근성, 우수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서는 ‘New Audiences Fund’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버밍엄에서는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1년에 4파운드로 레저시설을 할인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Passport to Leisure Card’ 제도와 이동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ravel Passes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Touring performance)’, 예술활동 참여에 무료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Arts Express Networking Project’, ‘예술택시 Project(Getting There Art Taxi Scheme)’, 빈곤지역 어린이들의 스포츠 및 예술활동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예산 지원금 제도로 ‘예술과 체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sport and arts)’이 있고 문화매체·체육부는 무료 박물관/미술관 입장 제도를 주관하고 있다.

〈표 2-5〉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Passport to Leisure Card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1년에 4파운드로 레저시설을 할인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Travel Passes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이동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Touring performance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
The Arts Express Networking Project	예술활동 참여에 무료교통 서비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	60세 이상 노인이 지역의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 보다 저렴한 할인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Space for sport and arts	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예술활동에의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Day Service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 레저, 재활, 교육, 일자리 기회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3) 프랑스

-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문화정책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본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1959년에 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유산의 보호, 예술활동의 지원, 예술활동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창작 진흥을 위해 사회당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청소년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예술교육 시간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대 배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계층과 집단들에게 보다 많이 문화 향수권을 부여한다. 1981년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는 ‘소외계층을 향한 문화전개’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① 병원으로 찾아가는 문화

-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주도하에 메세나 협조로 주로 영화, 도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병원에 제공

② 감옥으로 찾아가는 문화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프랑스 법무부와 문화 통신부의 협조를 통하여 2003년에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시

③ 문화관련 바우처 사업

- 프랑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련 바우처 사업은 체크바캉스 (Cheque Vacances) 제도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 됨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4) 스웨덴¹⁾

-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문화정책 기초는 평등을 지향하는 보편주의 정책이며, 고급이나 민속예술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며, 이러한 정부지원 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보다 당연한 ‘문화권(cultural right)’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 스웨덴은 국가가 획득한 경제자본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문화 서비스를 증대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자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삶 속에서 아비투스²⁾를 형성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연 감상이나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 음악회 참석, 독서 등의 여가행위는 단순한 오락행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습득해 온 아비투스의 문화적 실천이며, 이러한 문화적 욕구나 취향은 양육과 교육의 산물인 것이다. 스웨덴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체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교육 사업추진이 공적 문화시설의 중요한 역할이라 인식하고 있다.

① 1975년 신문화정책(Ny Kulturpolitik)의 수립

- 1986년 저격을 당해 우리나라에도 보도된 바 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수상이 1968년 당시 스웨덴의 교육부 장관이었다. 팔메는 1968년 문화정책을 점검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는 1972년에 ‘신문화정책’이라고 불리는 백서를 완성했다. 이 백서는 관계기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1974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백서에는 문화정책을 위한 기본 원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예술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이를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담겨져 있는 정책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결의서는 ‘문화정책은 사회 환경의 개선과 보다 폭넓은 의미의 평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 사람들에게 개인 스스로의 창조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며, 서로

1) 홍재웅(2010), 스웨덴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서 요약 발췌

2) 아비투스(habitus)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제창한 개념으로 일정하게 구조화된 개인의 성향체계, 즉 권력 기반의 사회질서가 생산, 지각,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장을 의미한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함
- 상업주의 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스스로 이에 저항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의 문화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보다 많이 허용해 주어야 함
 - 문화예술활동과 문화 정책 결정의 지방분권을 촉진해야 함
- 이와 같은 원칙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공공지원은 고급 문화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화예술활동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준다'고 명시해 둔 결의서에 의거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마추어 단체들에게도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1978년 '아이들과 문화'라는 보고서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아이들의 문화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문학, 연극, 영화, 문화기관 등 아이들의 문화 영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30억 크로나(약 한화로 5,007억원)를 투자할 것을 건의 하고 있다.
- 스웨덴의 경우 문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는데, 할당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 정도의 문화 예산을 지출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지방정부는 약 10% 내외, 기초지방정부는 43% 내외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즉 문화 예산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지만,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은 주로 공연예술과 지역 도서관 운영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지출 영역이다.
- 국민이 모두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과 재정적인 후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화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생활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스웨덴의 각 가정들이 스스로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문화적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스웨덴의 전체적인 문화 지출 규모 중에서 각 개인과 가정(61%)이 부담하는 규모가 국가(39%)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5)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5년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자유로이, 사용하기 쉬운’이라는 모토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정책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상황, 연령, 국적 등을 불문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며 활기차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일본은 1977년 ‘장애자 플랜 - Normalization 7개년 전략’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문화활동 등 자기 표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여러 기구를 개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노인과 관련하여서는 1994년 ‘고령자 사회참가촉진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클럽’ 조성사업을 통해 시니어 스포츠, 취미 및 레크레이션활동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2-6〉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주관	프로그램	내용
주정부	고령자 사회참가 촉진사업 및 고령자 클럽	시니어 스포츠, 취미 및 레크레이션활동, 학습 및 지도자 연수, 자원봉사 등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Barrier-Free Theater	자막 및 음성안내 서비스, 탁자서비스, 이용료 및 입장료 할인
지방자치단체	우시쿠시의 「문화예술진흥조례」	장벽제거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예술활동 환경 조성
	나가노시의 Art Support	장애인 문화 활동 리더 양성 강좌
민간	‘일본 연극협회’의 문화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 시설 및 화장실 개선 • 고령자를 위해 정기적인 지정극장에서의 연극관람권 쿠폰 발행 및 배포 • 고령자 초대 연극관람회 실시 • 연극 관람 시 탁자서비스 실시

- 일본의 문화복지관련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수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청소년, 학교의 문화예술활동 등을 규정하여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도모하고 환경 정비와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2002년 제정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제 2의 9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에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표 2-7〉 일본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제 2의 9 내용(요약)

구분	내용
국민의 감상 등의 기회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친근하게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에 대한 지원 실시 • 국민문화제 개최를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가 및 관심 환기 기회 충실 도모 •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에 기여하는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문화자원봉사활동의 장을 정비하고 정보제공, 상호교류 추진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장애인 등이 문화시설 등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창조하기 쉬운 환경 정비 촉진 • 문화예술등의 공연 및 전시 등에서 자막 및 음성안내서비스, 탁아서비스, 이용료 및 입장료 할인 •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에 배려한 활동을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대응 촉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이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직접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충실 도모 • 각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조연을 행하는 지도자 양성 및 확보 촉진 • 각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이동을 위한 교육활동 및 체험기회 제공과 학교교육과의 연계촉진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활동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고교육에 걸쳐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풍부한 마음과 감성을 갖는 인간 육성 • 종합적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체험학습 등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감상기회 충실 도모 • 문화예술 지도를 행하는 교원의 자질향상 도모 및 지역예술가, 문화예술 활동 지도자, 문화재보호 관련자 등과의 협력

자료 : 김세훈 외(2005)

제2장 문화나눔사업의 의의

(6) 외국의 문화 관련 바우처 사업

〈표 2-8〉 외국의 문화 관련 바우처 제도

국가	바우처	내용
미국	New York의 Cultural Voucher	197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예술 기관을 이용하는 관객층의 확대와 문화관련 프로그램 영역의 확장을 목표로 함
	아이오와주의 I-CARD	저소득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1,200명 저소득 인구가 무료 또는 할인티켓을 이용하여 문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레크레이션 바우처	1998년 여름 기간동안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체험기회 제공
	뉴 햄프셔주의 여행바우처	관광국 위주로 진행되어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20 달러(1박) 상당을 지급하며 숙박가격 할인 제공
영국	Passport to Leisure Card	학생,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1년에 4파운드 제공
	간병인을 위한 휴가바우처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휴가 지원금 바우처
일본	지역진흥권제도	지방정부에서 발행하여 노인, 청소년의 보호자로 제한된 국민들이 지역내 모든 상품구매가 가능한 지역진흥권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
프랑스	체크바캉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 공무원, 민간인, 군인을 대상으로 함
호주	연금수급자 컨세션 카드	문화/여가활동 보조, 교육비 보조, 교통요금 할인 혜택
	건강관리카드	문화/여가활동 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통요금 할인, 세금할인 등
	고령자카드	고령자에게 문화공연 및 체육시설 이용 시 무료이용 또는 할인 서비스 제공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1. 빈곤과 소외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국 긴급지원 사업 통합기준(안)'에 따른 구분
3. 사회적기업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
4. 서민문화정책대상
5.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1. 빈곤과 소외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의 결과, 빈부 또는 소득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빈곤격차가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보다는 사회구조에 의한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을 구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라는 의식이 확대되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등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 따라 빈곤문제를 다루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 서울시의 경우, 복지정책 강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서울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발굴하여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소득부문은 서울 지역별로 경제 수준의 편차가 나타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계나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만족할 만한 최저 수급액을 계산해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은 따로 분류해 가중치를 둔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민복지기준선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등의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1) 빈곤의 이해

- 소득과 빈곤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이 있다. 개념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절대 빈곤층', 즉 극빈층이라고 한다.

- 이에 반해 '상대적 빈곤'이란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통 가구총소득이 중위층 평균소득의 40~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상대적 빈곤층'이라 한다. 또한 가구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70%에 속하는 계층은 '상대적 빈곤의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1)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이란 개인 및 가족이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인간다운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흔히 빈곤선(poverty line)이라는 절대적 최저수준에 따라 정의되며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전적인 빈곤개념 하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을 말하며, 독자적 능력으로 최소 한의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표 3-1〉 절대적 빈곤 :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전 가구기준)

(단위:%)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10	12.1	7.8	8.7	11.4	6.2

*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출처 : 2011 빈곤통계연보

(2)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를 정의하거나 또는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 상대적 빈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불평 등 측면을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강조한다. 즉,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불평등 혹은 상대적 박탈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사회의 소득분배격차에서 발생하는 계층간 소득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 상대적 빈곤 : 중위소득·지출 기준 빈곤율(전 가구기준)

(단위:%)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10	12.7	17.0	21.8	9.4	14.0	19.7	9.3	13.8	19.3	4.4	8.4	14.2	5.1	9.9	16.0

* 1인가구 포함, 농어촌 가구 제외, 출처 : 2011 빈곤통계연보

(3) 주관적 빈곤

- 주관적 빈곤이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의되는 빈곤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안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기준보다 빈곤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주관적 소득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30만원 수준이었으며 가구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 대비 가구 실제 소득수준에 대해 「여유있다」가 19.6%이며, 「적정하다」 30.8%, 「모자람」이 49.5%로 ‘모자르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표 3-3〉 주관적 소득수준

(단위 : 만원, %)

구분	가구당 월평균 최소생활비	계	여유 있음	적정		적정	모자람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11	229.7	100.0	19.6	2.8	16.9	30.8	49.5	34.0	15.5	
지역별	도 시	238.8	100.0	20.4	3.0	17.4	30.9	48.8	33.3	15.4
	농 어 촌	188.5	100.0	16.2	1.7	14.5	30.7	53.1	37.2	15.9
성별	남 자	254.1	100.0	21.5	3.1	18.4	31.2	47.3	33.1	14.2
	여 자	149.8	100.0	13.5	1.6	11.9	29.7	56.8	37.0	19.8
연령별	19~29세	161.7	100.0	25.7	4.4	21.3	36.5	37.7	26.5	11.2
	30~39세	262.6	100.0	22.5	2.8	19.7	31.1	46.4	32.7	13.8
	40~49세	292.1	100.0	21.5	2.6	18.9	28.7	49.9	33.9	16.0
	50~59세	255.1	100.0	22.0	3.6	18.4	31.9	46.1	31.0	15.1
	60세 이상	135.7	100.0	12.7	1.9	10.8	30.8	56.4	39.0	17.4

□ 이 밖에도 소득으로 인한 상대적 의식을 알아 본 결과, 본인 소득에 대해 49.1%가 「불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9년 46.6%보다 2.5%p 증가한 것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50대와 60세 이상은 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50%를 넘고 있었다.

〈표 3-4〉 소득 만족도

(단위 : %)

구분	계	소득 있음	소 계				보통	불만족	불만족		
			소 계	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11	100.0	72.3	100.0	11.7	1.5	10.3	39.2	49.1	35.7	13.4	
성별	남 자	100.0	86.3	100.0	11.2	1.3	9.9	39.2	49.7	36.3	13.4
	여 자	100.0	59.0	100.0	12.5	1.7	10.8	39.2	48.2	34.8	13.4
연령별	19~29세	100.0	62.0	100.0	13.1	1.6	11.4	43.2	43.7	33.8	9.9
	30~39세	100.0	75.7	100.0	12.7	1.2	11.5	40.6	46.7	35.1	11.6
	40~49세	100.0	79.9	100.0	12.8	1.6	11.2	39.3	47.9	33.6	14.3
	50~59세	100.0	74.9	100.0	11.4	1.4	10.0	38.6	50.1	35.1	15.0
	60세 이상	100.0	67.3	100.0	8.5	1.4	7.1	34.8	56.6	41.1	15.5

주: 1)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4) 빈곤 문화

- 빈곤문화란 문화적 측면에서 정의된 빈곤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빈곤을 의미한다. Oscar Lewis는 문화적 빈곤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정의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가치, 행동 등에서 다르고 나아가 그들만의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전승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빈곤문화는 사회의 주된 제도에 참여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어렵게 해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며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으로 인해 문화가 악순환 되는 특성이 있다.
- 일반적으로 빈곤문화는 사회적·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빈곤계층을 강제로 철거시키는 급진적인 방법과,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중간계층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으로 이를 대체시키는 점진적인 방법이 있다. 그동안 빈곤계층의 인구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결부시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간계층의 문화적 특성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채택되어 왔다.

2) 차상위계층과 신빈곤층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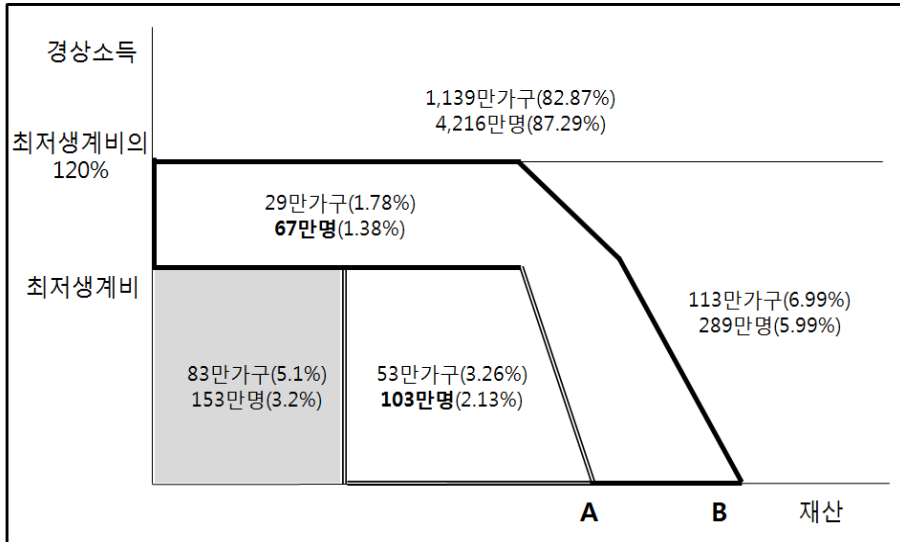
(1)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빈민(working poor), 저소득(low income),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등이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특정의 선 바로 위에 위치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기준시점에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계층이며 따라서 공공부조에서는 1차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36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차상위 계층은 언제라도 상황이 변화되면 절대빈곤층으로 하락하여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에서 중요한 계층이 된다.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그림 3-1] 차상위계층의 규모 추정

(단위: %, 가구, 명)



* 자료 : 2011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2) 신빈곤층

- 신빈곤층은 위에서 언급한 차상위계층의 한 부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은 있으나 고용의 비정상적 구조로 인하여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 비정규직, 장기실직자, 농민 및 청년실업자가 있으며 IMF 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이들이 대표적이다. 신빈곤층은 종전의 빈곤층과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불안정, 산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새로이 빈곤문제를 겪는 계층으로, 이들은 심각한 빈곤의 문제를 겪어 보지 않아 빈곤에 대한 내성(耐性)과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표 3-5〉 구빈곤과 신빈곤의 특징 비교

구분	구빈곤	신빈곤
사회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도시적 산업화 속의 빈곤 • 인구의 지리적 배치에 따른 빈곤 • 비공식부문의 빈곤 • 인구 다수가 하층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첨단산업화 속의 빈곤 • 도시계층화의 고착화에 따른 빈곤 • 공식부문의 주변부에 있는 빈곤 (예:영세 하청업체 근로자) • 중산층화 속의 빈곤
인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중심 • 전 연령층 • 저학력저기술 • 정상가정 • 이농세대 • 자의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화 • 고령화 • 학력저하탈기술화 • 결혼가정 • 하층 도시근로자의 세대 • 자기 해체적
빈곤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빈곤 • 물질적 결핍 • 빈곤의 상대성이 적음 • 생계생필품의 빈곤 • 절대소득이 적음 • 개인적 빈곤 • 희망의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빈곤 • 비물질적 결핍 • 빈곤의 상대성이 급격히 증대 • 비생계(주택, 교육, 문화)적 빈곤 • 소득 및 고용활동이 불안정함 • 사회적 빈곤, 지역적 빈곤 • 절망의 빈곤

* 자료 : 김윤재·허은희, 『최신사회문제론』, 유허출판사, 2010

3) 문화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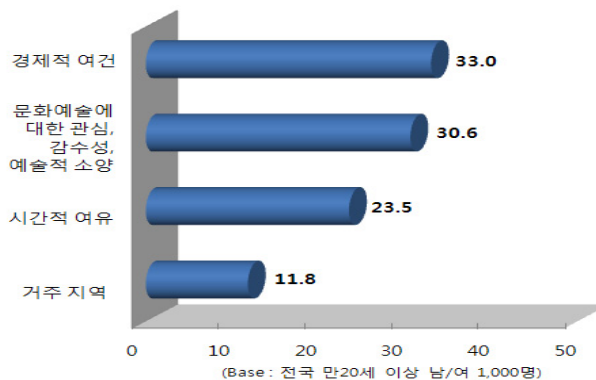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보았던 빈곤문제 가운데 문화빈곤 즉 문화적 소외계층은 사회의 주된 제도들에 참여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막아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이 악순환 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물론 ‘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빈곤계층이 영위하는 문화는 사회제도 및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류사회에 속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또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문화인류학자 루이스(Lewis)는 빈곤자를 중심으로 빈곤생활을 관찰한 결과 빈곤계층에서 계승되는 빈곤한 자의 가치관이나 생활태도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현대사회에 적용해 볼 때 상대적 박탈의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현대사회의 ‘신빈곤’ 역시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욕구의 증대가 한층 더 향상된 생활수준이나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요구함으로써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서 생기는 결핍감각에 입각한 빈곤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빈곤문제와 문화소외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상대적 빈곤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 문화 심리적 소외 등은 경제적 차원의 결핍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 신빈곤을 결정하는 새로운 주요 원인으로 ‘상대성의 심화(extended relativity)’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신빈곤은 특히 소비층의 생활활동과 관련하여 ‘박탈과 결핍의 상대성’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출현하고 있다. 주거부문, 교육부문, 여가문화활동 부문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대적 격차와 박탈 그리고 계층별 비교의식의 심화가 빈곤의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신빈곤은 물질적인 영역보다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사회적 삶의 보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문화복지 정책과 문화를 통한 사회적 연대감 창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1년 실시한 ‘문화복지 인식과 수요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는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정책, 특히 초중고 시절 예술관람 및 교육의 증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림 3-2] 문화예술 향유 정도가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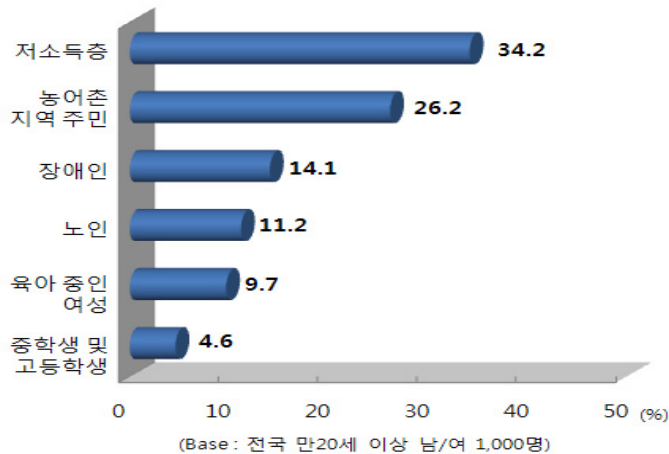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복지 인식과 수요조사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 조사결과 문화예술의 향유(관람 및 참여)의 차이는 경제적 여건(33.0%)과 문화예술 관심과 소양(30.6%), 시간적 여유(23.5%)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문화복지정책이 비용과 예술적 소양을 모두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또한 문화복지정책 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예술 향유(관람 및 참여)가 어려운 사람을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사람은 저소득층(34.2%)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지역주민(26.2%), 장애인(14.1%), 노인(11.2%), 육아 중인 여성(9.7%)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들이 저소득층 이외에도 문화복지의 대상이 많다고 인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문화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읍면지역 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 및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3]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



-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구분을 명문화하여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 및 분야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국 긴급지원사업 통합기준(안)에 따른 구분

- 긴급지원사업은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저소득층의 개념

- ‘저소득층’이라 함은 매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일컫는다.

2) 저소득층 소득기준

- 가구별 월 평균소득(정부보조금 포함),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 한다.

〈표 3-6〉 2012년 저소득층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2012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200%
		저소득층 월 평균소득액(월)
1인가구	533,354	1,106,708
2인가구	942,197	1,884,394
3인가구	1,218,873	2,437,745
4인가구	1,495,550	2,991,100
5인가구	1,772,227	3,544,453
6인가구	2,048,903	4,097,806
7인가구	2,325,580	4,651,160

- 재산수준은 주택, 임대보증금, 토지, 자동차, 현금 및 은행예금, 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표 3-7〉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129) 재산기준(2011)
- 재산기준의 경우 가장 최근 고시된 정부기준에 준하여 산출함
- 지역구분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3. 사회적기업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 구분

-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구분은 다음 〈표 3-8〉와 같다

〈표 3-8〉 사회적기업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다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기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취약계층 범위 판단방법

1. 저소득자(제1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출처〉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2. 고령자(제2호)

- 55세 이상인 사람
-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3. 장애인(제3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4. 성매매피해자(제4호)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지급대상자(제5호)

- (청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① 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 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자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 실업계를 제외한 고3 재학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자 ⑤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쪽에 선정된 자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용안정정보망 구직표-학력) ②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대학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력조회)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청소년 : 매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선정 통보문) ④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 실업계를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 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중 NEET쪽에 선정된 재지방고용노동관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담당자 확인서) 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자

6. (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미만)에 회사를 그만 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 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직전 이력(퇴사사유 : 임신, 출산, 육아) 및 구직등록증

7. 북한이탈주민(제6호)

-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8. 가정폭력 피해자(제7호)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고 확인서, 상담 확인증

9.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제8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10. 결혼이민자(제9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 등증 상 F-2 또는 F-5

11. 갱생보호 대상자(제10호)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2. 범죄구조피해자(제11호)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13. 기타(제12호)

• 1년이상 장기 실직자

☞ 취업 비경력자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등의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를 인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4. 서민문화정책대상³⁾

1) 취약계층의 범주의 다의성과 서민문화정책의 대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비정규직, 고령자 등이 포함된다.
- 노동 취약계층 : 여성, 연소자,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비정규직이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 문화적 취약계층 :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면서 노동 취약계층과는 일부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 남성이 추가 되며, 연소자가 노동 취약계층인 반면 고령자는 문화적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표 3-9〉 취약계층 범주

범주 \ 특성	성별	연령	소득	장애	국적	지역	가족 형태	고용 형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	한부모 소년가장	비정규직
노동 취약계층	여성	연소자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	한부모 소년가장	비정규직
문화적 취약계층	남성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농어촌	한부모 소년가장	비정규직

*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로 표시함

3) 우주희(2009), 서민문화정책 추진 전략에서 요약 발췌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2) 문화적 취약계층의 범위

- 문화적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건강, 경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일컫는 광의의 개념이다. 중산층 이상도 시간, 건강, 문화적 경험 부재 등의 원인으로 인한 문화적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문화적 취약계층을 서민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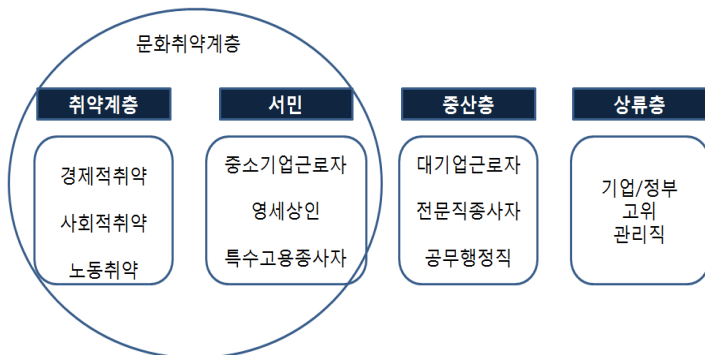
3) 서민의 범위

- ‘서민’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문화 향유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 외에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지역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어려운 특성을 가져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서민과 문화적 취약계층의 관계

- 서민을 문화적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나, 문화적 취약계층을 서민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민문화정책의 대상은 중산층을 제외한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희(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서민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포함하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을 제외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사람들은 물론, 생업에 종사하여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문화를 자율적으로 향유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계층을 모두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다.

[그림 3-4] 서민과 문화취약계층의 관계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평등권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소외 계층을 분류한 경우도 있다.

〈표 3-10〉 헌법의 평등권에 기초한 소외계층의 분류

구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소외계층	재소자, 전과자, 집행유예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새터민 등	저소득층, 실업자, 비정규직, 농어민, 도시빈민, 신용불량자 등	비문해자, 저학력자, 동성애자, 다문화가족, 사투리 사용자 등	어린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자료: '사회를 위한 디자인 이슈와 소외계층에 대한 디자인 감성의 방향, 천정인, 2009

5.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의 개념을 이원영(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고자 한다. '소외'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전체성 이론을 도입하였다. 그는 전체성이 와해되면 인간의 소외와 고독이 심화된다고 보았는데, 인간은 주관성만으로는 결핍과 불안감을 느껴 대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를 통해 대상 속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르페브르는 인간은 전체성을 지향하는 전체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공동선과 공동체적 의식 함양을 지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외계층'은 전체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을 벗어난 그룹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체성, 즉 전체와 부분을 소외의 개념과 연계시켜 설명하기 위해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이론도 연관 지을 수 있다. 헤겔 역시 '소외'의 개념을 부분과 전체의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공동체는 개인에 대하여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을 살리는 본바탕이며, 전체는 부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즉 사회는 개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은 단순히 전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는 유기체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 이렇게 사회를 전체라 두고 부분에 속하는 소외계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크게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중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분류하는 취약계층을 일컫는 것이며, 문화소외계층은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말한다. 이에 대해 프랭크 파킨(Frank Parkin)은 ‘사회적 배제’ 개념을 통한 견해를 설명했는데, 사회적 배제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겨날 수 있다는 환경적인 조건을 전제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도 사회적 배제 상황이 나타나 문화소외계층에도 자연스럽게 속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영역에서의 배제 상황이란 문화 활동 참여의 장애, 사회적 상호의사소통 관계로부터의 배제, 다양한 가치와 삶의 태도·사고방식으로서의 배제 등이다. 이들의 문화적 욕구나 권리에 대한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문화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와 기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즉 문화적 소외계층에는 비단 경제적 소외계층 외에도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노숙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입소자 및 이용자, 농어촌이나 도서산간벽지 거주민 등 지리적 소외계층, 군인이나 교정시설, 북한이탈주민, 제도적인 교육과정에 얽매어 있는 청소년 등 그 밖의 특수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제 문화 정책에서는 경제적 소외계층 외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해 어떻게 수용하고 배려 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 다른 관점에서 같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소외계층의 문제가 결합함으로써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 <표 3-11>에 나타난 것처럼 도시와 비도시 간의 문화향유 격차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표 3-11〉 지역별 문화향유 실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국민평균
5.12회	5.10회	2.63회	4.88회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 이는 기본적으로 공연장과 같은 문화 관련 인프라의 문제일수도 있고 문화적 환경 자체로부터의 영향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현실적 격차를 무시한 채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구의 경우 이러한 지역성의 문제는 시설의 편재성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뤄지기도 했다(Skot-Hansen, 199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가 서울과 광역시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함에 따라 접근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다. 즉, 도시와 비도시 거주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격차는 곧 소비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표 3-12〉 지역별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현황(2012년 2월 8일 기준)

지자체명	발급 대상자 수(명)	카드발급자(명)	발급률(%)
서울	65,260	62,477	95.7
부산	43,960	36,821	83.8
대구	32,760	32,760	100.0
인천	22,180	22,067	99.5
광주	19,880	19,880	100.0
대전	14,760	14,760	100.0
울산	5,880	5,880	100.0
경기	83,640	70,386	84.2
강원	27,300	24,226	88.7
충북	23,480	14,056	59.9
충남	29,178	25,449	87.2
전북	44,880	44,256	98.6
전남	43,680	30,467	69.8
경북	49,580	37,217	75.1
경남	42,332	30,055	71.0
제주	7,380	7,380	100.0
합계	556,130	478,137	85.9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 실제로 문화바우처의 소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와 비도시 거주자의 경우 위의 <표 3-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문화바우처 카드의 발급률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을 제외하고는 광역시와 도 지역 간에 발급률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으로 인해 비도시민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같은 문화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최옥채(2011)의 연구에서는 문화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복지 개념을 정의하는 선행문헌에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문화복지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즉 취약계층과 모든 국민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문화복지의 선별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연구자는 어느 한쪽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뿐 결국은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유형을 좀 더 상세히 정리했다.

1) 취약계층

-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단순히 구별을 위한 방법일 뿐 사실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들이 문화적으로도 취약한 계층으로 연결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이들 계층은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설정한 대상들이며, 따라서 사회복지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나 질 면에서는 차원을 구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하위분야, 혹은 일부분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복합화 하는 방안, 즉 서비스를 추진하는 체제안에서의 공동화 방안 등을 모색해 봐야 하는 과제가 있다.

2) 모든 국민

- 문화복지 대상자로 모든 국민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이상적이고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 선행한다는 전향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추진 과정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논의 사항이 있다. 예컨대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모든 국민을 문화복지 대상으로 했을 때 소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화복지 욕구 수준 및 유형이 같을까? 그리고 동일한 방법론의 서비스가 양자 측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을까? 단순히 기초적인 문화 쪽 욕구보다 미세한 고차원적인 예술 쪽 욕구를 추구하는 각각의 욕구 차이 문화복지를 한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앞에 소개한 문화복지 개념의 모호함과 이를 무시한 채 현장에서 문화복지를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소모적인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여 문화복지 개념과 추구하는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복지를 수행할 때 이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분류하기에 앞서 문화욕구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소득수준과 문화욕구를 반영한 유형분류



- 분류된 유형의 각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도 낮고 소득 수준도 낮은 계층(기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이며, 두 번째 유형은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은 높고 소득 수준은 낮은 계층(1차적인 문화소외계층)으로 이 두 유형은 문화향유 기회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은 낮고 소득 수준은 높은 계층(문화 욕구 결여 계층)

제3장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현황

으로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도 높은 계층(자발적 문화 향유 계층)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중심으로 문화소외계층을 개념화하였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1. 조사 방법
2. 수요조사 결과
3. 전문가집단 면접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1.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문화복지 수혜 대상을 파악하고 그 대상들이 원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영역을 재분류하여 사업을 설계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하는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기존의 문화나눔사업의 수혜자 뿐 아니라 확대 개념으로의 문화 복지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대상을 선별하고자 전국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지역별 소외계층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 구체적인 표본추출방법으로써 할당표집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 인구통계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한 후 앞서 제시한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직접 혹은 관리자를 통해 배포 및 수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 조사는 2011년 12월 7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우편 설문을 진행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공연 현장을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2차 조사에서 제외된 지역과 대상을 중심으로 면접원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1대1 면접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1) 모집단

- 모집단은 전국 16개 사도에 거주하는 12세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다. 모집단 기준은 “2010 전국주민등록 인구통계”(통계청)를 이용하였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2)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조사계획 초기에는 1,2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문 특성상 문항이 많고 설문대상 중 저학력자가 많은 관계로 무효 값이 발생함에 따라 본 조사의 신뢰할 만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표본크기를 1,300명으로 확대하였다.

3) 표본추출방법

- 표본은 할당표집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 첫째, “2010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총인구를 조사한 후 통계청의 인구별 통계를 활용하여 16개 시도별 사군구의 총인구 대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다문화 가정, 노인 등 경제·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 둘째, 16개 시도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하여 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조사대상 사군구를 선정하였다.
- 그 결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대상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도권	서울	노원구	경기도	수원시	-	
		강서구		안산시		
		구로구		고양시		
	인천	부평구				
중부권	-		충남	천안시	강원	홍천군
영남권	부산	사하구	경북	포항시	-	
		사상구				
		진구				
	대구	달서구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동구						
호남권	광주	북구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김제시		
			전남	여수시	-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셋째, 각 사군구에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협력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문화시설을 선정하였다. 이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신뢰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인 설문응답자는 문화나눔사업에 직접적인 참여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준다.
- 그 결과 선정된 사회복지기관 및 문화시설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1차 우편 설문조사 - 2011 문화나눔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	기관명	조사대상
서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다운복지관	일반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부평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부산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대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광주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경기도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안산시군자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전북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전남	동여수노인복지관	노인
	여수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주) 소외계층 문화순회 중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수혜 기관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이 후 2011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진행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지방문예회관 공연 리스트를 참고하여 1차 설문조사에서 제외된 지역 및 대상을 기준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3〉 2차 직접 설문조사 - 공연 현장

지역	공연현장	조사대상
서울	진각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
강원도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충남	천안 성정초등학교	일반
전북	김제여고	청소년
대구	동구 문화체육회관	일반

주) 소외계층 문화순회 중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및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개발 지원 수혜 기관

- 마지막으로 1차 및 2차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이 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4-4〉 3차 설문조사 - 1,2차 설문조사시 미포함 기관

구분	지역	기관명	조사대상
대도시	서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대전	○○외국인복지관	다문화가정
	광주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부산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청소년쉼터	청소년
		○○도서관	청소년
중소도시	창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창원	○○○전당	일반·청소년
	창원	○○센터	일반·청소년
농어촌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완주군	○○경로대학	노인
	창녕군	○○○읍사무소	일반
	창녕군	○○도서관	청소년

주) 문화나눔사업 미참여 기관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넷째, 위의 조사대상 지역에서 추출된 사회복지기관과 문화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조사기간 및 절차

- 설문조사는 2011년 12월 7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시행하였다. 우편 설문조사의 경우 우선으로 사전안내 및 협조공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설문조사는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어주고 답을 받아 적는 면접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조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 조사 일정표

조사 계획 수립	2011년 10월 24일 - 11월 7일 조사 계획서 작성 및 자문
설문지 작성	2011년 11월 8일 - 16일 조사설계 자문 및 설문지 작성
조사원 교육	2011년 11월 17일 - 21일 조사원 모집 완료 및 조사원 교육
1차 수요조사	2011년 11월 22일 - 12월 14일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코딩 진행
1차 FGI	2011년 12월 15일 1차 FGI 실시
2차 수요조사	2011년 12월 16일 - 23일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코딩 진행
중간보고	2011년 12월 29일 중간보고회 실시
3차 수요조사	2011년 12월 29일 - 2012년 1월 4일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코딩 진행
통계 처리	2012년 1월 4일 - 8일 데이터 통계 처리 및 분석
결과 분석	2012년 1월 9일 - 12일 결과분석 및 보고서 1차 작성
2차 FGI 및 자문회의	2012년 1월 13일 2차 FGI 및 자문회의 실시
보고서 발간	2012년 1월 13일 - 1월 18일 보고서 완성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5) 조사 도구 및 내용

-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201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참고하고 수요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 및 영역별에 대해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 구성은 공통요인과 각 대상별 특성에 따른 개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설문지 문항 구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 대상
인구학적 특성	지역, 성별, 나이, 장애 유무, 혼인여부	최종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	일반
		학력,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학력	청소년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인지 및 참여	문화나눔 각 사업별 참여 유무, 참여 경로, 참여 동기, 미참여 이유		일반
문화바우처에 대한 수요	문화바우처 도움 정도, 개선점 및 보완점		
공연·전시 관람에 대한 수요	공연·전시 수요 여부, 원하는 공연 및 전시 유형,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필요한 지원 내용 및 필요 정도		
기타 문화나눔 사업에 대한 수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개선점 및 보완점,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여부, 참여하지 않는 이유		
전반적인 문화나눔에 대한 수요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활동 영역,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영역,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기준,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꺼려지는 이유		

6) 자료분석

-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rding)과 오류검토 작업 및 편집과정을 거쳐,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성인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둘째,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을 산출하여 성별, 연령, 소득, 지역, 학력, 장애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2. 수요조사 결과

1) 일반현황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43명에 대한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지역, 장애유무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 4-6>과 같다.
- 응답자 성별의 경우 남자가 362명으로 전체의 34.7%였고, 여자가 전체의 65.1%에 해당하는 679명이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37.1세로, 12~19세가 307명(29.4%), 20~64세가 579명(55.5%), 65세 이상이 155명(14.9%) 이었다. 지역의 경우 대도시가 50.3%, 중소도시가 38.7%, 농어촌이 11.0%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는 장애가 151명(14.5%), 비장애가 885명(84.9%)으로 나타났다.

〈표 4-6〉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43)

구분	빈도(명)	%
1. 성별		
남	362	34.7
여	679	65.1
무응답	2	0.2
2. 연령		
12-19	307	29.4
20-64	579	55.5
65이상	155	14.9
무응답	2	0.2
3. 지역		
대도시	524	50.3
중소도시	404	38.7
농어촌	115	11.0
무응답	0	0.0
4. 장애유무		
장애	151	14.5
비장애	885	84.9
무응답	7	0.7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2) 성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연구는 성인대상자 총 73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성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7>과 같다.
-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22.3%(164명), 고졸이 32.8%(241명), 대졸이 39.9%(293), 대학원 졸 이상이 4.0%(29명)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주부가 27.7%(203명)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이 137명(18.7%), 사무직이 136명(18.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3.2%(96명), 100만원 미만이 32.5%(237명),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25.8%(188명),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14.5%(106명),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6.4%(47명), 400만원 이상이 4.7%(34명)으로 나타났다.

〈표 4-7〉 성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34)

구분	빈도(명)	%
1. 학력		
중졸이하	164	22.3
고졸	241	32.8
대졸	293	39.9
대학원 졸 이상	29	4.0
무응답	7	1.0
2. 직업		
사무직	136	18.5
서비스/판매직	40	5.4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32	4.4
자영업	46	6.3
농업, 어업, 축산업	9	1.2
주부	203	27.7
학생	42	5.7
정년퇴임 연금생활자	7	1.0
무직	137	18.7
기타	68	9.3
무응답	14	1.9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3. 월평균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96	13.2
100만원 미만	237	32.5
100만원-200만원 미만	188	25.8
200만원-300만원 미만	106	14.5
300-400만원 미만	47	6.4
400만원 이상	34	4.7
무응답	26	3.5

(3)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 청소년 대상자 총 30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청소년 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이 130명(42.3%), 중학교 재학이 108명(35.2%), 초등학교 재학이 19명(6.2%), 고등학교 졸업이 15명(4.9%), 초등학교 졸업이 11명(3.6%), 중학교 졸업이 9명(2.9%), 대학생이 9명(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은 중층이 154명(50.2%), 기초수급자가 54명(17.6%), 중상층이 40명(13%), 차상위 계층이 30명(9.8%), 상층이 18명(5.9%), 최상위 계층이 5명(1.6%)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의 학력으로 고졸이 121명(39.4%), 대졸 115명(37.5%), 중졸이하가 30명(9.8%), 대학원 졸 이상이 32명(10.4%)으로 나타났다.

〈표 4-8〉 청소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7)

구분	빈도(명)	%
1. 학력		
초등학교 재학	19	6.2
초등학교 졸업	11	3.6
중학교 재학	108	35.2
중학교 졸업	9	2.9
고등학교 재학	130	42.3
고등학교 졸업	15	4.9
대학생	9	2.9
무응답	6	2.0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2. 부모의 경제력		
기초수급자	54	17.6
차상위계층	30	9.8
중	154	50.2
중상	40	13.0
상	18	5.9
최상	5	1.6
무응답	6	2.0
3. 가장의 학력		
중졸이하	30	9.8
고졸	121	39.4
대졸	115	37.5
대학원 졸 이상	32	10.4
무응답	9	2.9

(4) 분석을 위한 일반적 특성의 고려사항

- 조사과정에서는 상기와 같이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분석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변수의 구분내용을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성인의 경우, 결혼 유무와 직업을, 청소년의 경우 가장의 학력을 조사하였으나 결혼 유무, 직업, 청소년 가장 학력 등이 수요 변화에 큰 특징을 나타나지 않아 분석과정에서 기술하지 않았다.
- 또한 소득수준은 성인의 경우 6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① 수급자 및 이에 해당하는 월 100만 원 미만과 ②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월 100만 원 - 300만원 미만, ③ 월 300만 원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 목적에 맞게 조정 하였다. 성인과 청소년을 합하여 전체를 분석할 경우, 부모의 경제력을 청소년의 소득수준으로 보고 분석하였으며, 6단계의 부모의 경제력을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과 중 ③ 중상 이상 등 3단계로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2) 사업별 문화복지 수요조사 분석

(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조사

□ 사업별 수요조사 분석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참여경로 및 참여동기와 문화나눔사업 중 문화바우처의 개선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①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한 응답자 637명의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지역의 문화 및 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 참여한 경우(57.3%)이며, 그 다음이 주위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참여한 경우(14.4%)이고, 세 번째는 지자체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7.5%)으로 나타났다.

□ 참여경로를 지역별로 보면, 세 번째로 많은 경로인 지자체를 통한 경우가 대도시는 4.8%, 중소도시가 9.2%, 농어촌이 13.9%로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자체를 통한 경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는 관련기관을 통해서가 37.7%, 가족의 권유를 통해서 22.6%,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서가 15.1%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관련기관을 통해서가 80.0%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주위사람 권유(7.2%), 지자체를 통해서(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지역별)

구 분	문화, 복지 관련 기관		지자체		주위사람 소개		가족 권유		기타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대도시	213	58.4	15	31.3	47	51.0	11	23.9	28	32.6
중소도시	122	33.4	23	47.9	34	37.0	27	58.7	45	52.3
농어촌	30	8.2	10	20.8	11	12.0	8	17.4	13	15.1
계	365	100.0	48	100.0	92	100.0	46	100.0	86	100.0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10〉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연령별)

구 분	문화, 복지 관련 기관		지자체		주위사람 소개		가족 권유		기타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19세 이하	55	15,2	8	16,7	22	23,9	33	71,7	28	32,5
20-64세	208	57,3	32	66,7	61	66,3	9	19,6	54	62,8
64세 이상	100	27,5	8	16,7	9	9,8	4	8,7	4	4,7
계	363	100,0	48	100,0	92	100,0	46	100,0	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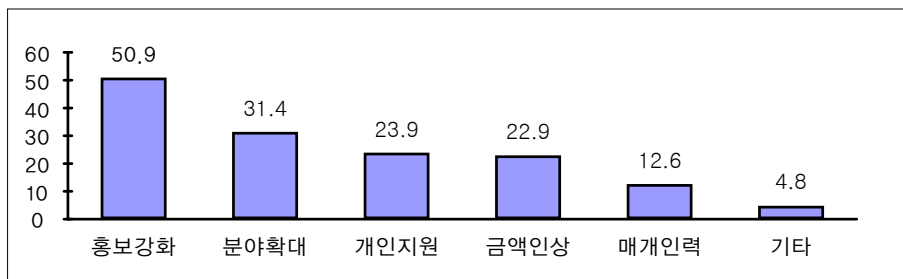
②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참여동기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응답자 634명 기준) 지역 문화 및 복지기관의 권유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참여한 것이 21.6%,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참여한 경우가 19.7%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때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문화바우처 개선점

- 문화바우처 사업을 위해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조사 한 결과 825명(장애유무기준)의 응답자가 1,211건의 개선점을 선택하였다. 첫째, 문화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한다 50.9%, 둘째,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바우처 지원분야를 확대해야한다 31.4%, 셋째, 가구당 지원에서 개인당 지원으로 변경해야한다 23.9%, 넷째, 문화바우처 지급금액을 인상해야한다 22.9%, 끝으로 문화바우처 사업과 수혜자 간에 연결시켜 주는 매개인력이 필요하다 12.6%로 나타났다.

[그림 4-2] 문화바우처 개선점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문화바우처 사업 개선점에 대한 응답자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문화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한다 46.0%, 문화바우처 지급금액을 인상해야 한다 43.8%,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바우처 지원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32.8%, 가구당 지원에서 개인당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30.7%, 문화바우처 사업과 수혜자 간에 연결시켜 주는 매개인력이 필요하다 13.9%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은 문화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한다 51.9%,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바우처 지원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31.1%, 가구당 지원에서 개인당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22.5%, 문화바우처 지급금액을 인상해야 한다 18.8%, 문화바우처 사업과 수혜자 간에 연결시켜 주는 매개인력이 필요하다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문화바우처 개선점(장애유무)

구 분	장애인 (N=137)		비장애인 (N=688)	
	빈도(명)	%	빈도(명)	%
개인지원	42	30.7	155	22.5
홍보강화	63	46.0	357	51.9
금액인상	60	43.8	129	18.8
분야확대	45	32.8	214	31.1
매개인력	19	13.9	85	12.4
기타	5	3.6	35	5.1

(2) 공연, 전시, 창작활동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

① 공연, 전시, 창작활동에 대한 선호도 분석

- 향후 1년 이내에 공연, 전시,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의향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표 4-12〉로 나타났다.
- 공연을 관람할 생각이 있다가 86.4%(893명)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전시관람 75.8%(774), 창작활동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3.7%(749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관람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관람 중에서도 전시보다 공연 관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공연관람, 전시관람 및 창작활동을 할 의향 조사

구 분	있 다		없 다	
	빈도(명)	%	빈도(명)	%
공연관람 생각	893	86.4	141	13.6
전시관람 생각	774	75.8	247	24.2
창작활동 생각	749	73.7	267	26.3

-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141명에게 공연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다중 응답)한 결과 132명이 총 216건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공연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가 37.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시간이 나지 않아서가 31.1%, 홍보부족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몰라서가 30.3%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연시설이 열악하다든지(4.5%), 프로그램 수준이 낮거나(6.8%), 공연을 같이 관람할 동반자가 없는 것(9.8%)은 소수의 응답자만이 선택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공연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데 있어서 주된 이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공연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N=132(복수응답)

순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49	37.1
2	시간이 나지 않아서	41	31.1
3	홍보부족으로 내용을 몰라서	40	30.3
4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19	14.4
5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17	12.9
6	교통이 불편해서	15	11.4
7	동반자가 없어서	13	9.8
8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9	6.8
9	기타	7	5.3
10	시설이 열악하여서	6	4.5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또한 전시 관람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 247명 중 전시를 관람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235명이 총 371건(인당 1.63건)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 전시 관람의 경우에도 공연관람과 같이 관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1위에서 3위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가 응답자의 48.1%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시간이 나지 않아서가 24.7%, 홍보부족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가 21.3%로 나타났다. 전시시설의 열악함이나 전시를 함께 관람할 동반자가 없는 문제, 부대비용이 과다한 문제는 전시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4-14〉 전시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중선택)

N=235(복수응답)

순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13	48.1
2	시간이 나지 않아서	58	24.7
3	홍보부족으로 내용을 몰라서	50	21.3
4	교통이 불편해서	37	15.7
5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24	10.2
6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23	9.8
7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22	9.4
8	동반자가 없어서	22	9.4
9	시설이 열악하여서	10	4.3
10	기타	12	5.1

- 이상과 같이 공연이나 전시 관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 상당수가 공연이나 전시 관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재미를 위해 향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모르거나,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관람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한편 창작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267명을 대상으로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중 255명이 인당 1.43건을 다중응답 하여 총 364건을 선택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창작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응답자 중 52.9%가 창작활동에 소질이 없어서 창작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간이 없어서가 35.3%, 창작활동을 할 기회가 없어서가 16.9%로 세 가지 이유가 대부분(105.1%)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소용되는 비용(11.0%)이나 지도할 선생이 없는 것(11.0%), 창작활동을 할 장소가 없는 문제(7.5%) 등은 창작 활동 불참 이유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다중선택)

N=255(복수응답)

순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소질이 없어서	135	52.9
2	시간이 없어서	90	35.3
3	기회가 없어서	43	16.9
4	비용이 없어서	28	11.0
5	지도해줄 선생이 없어서	28	11.0
6	기타	21	8.2
7	장소가 없어서	19	7.5

② 공연 관람, 전시 관람, 창작활동별 세부 수요분석

가. 공연관람에 대한 수요 및 요구사항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887명이 선호하는 공연에 대해 2가지씩 다중응답 한 결과 총 1,748건을 선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16〉과 같다.
- 총 응답자 887명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은 연극으로 응답자의 70.7%가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 영화가 53.0%, 클래식 음악이 31.5%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유형의 공연 중 무용(15.0%)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16〉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2가지 선택)

N=887(복수응답)

순위	공연 종류	빈도(명)	비율(%)
1	연극	627	70.7
2	영화	470	53.0
3	클래식 음악	279	31.5
4	전통예술	214	24.1
5	무용	133	15.0
6	기타	25	2.8

- 프로그램 내용이나 관람 인프라 등 공연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필요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표 4-17〉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구 분	N	전혀필요없음 + 필요 없음		보 통		필요함 + 매우 필요함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재미있는 공연 제공	1,002	21	2.1	153	15.3
교통편의 제공	999	76	7.6	220	22.0	703	70.3
수준 높은 공연 제공	988	53	5.4	255	25.8	680	68.8
지역 공연시설 확충	1,007	54	5.4	295	29.3	658	65.3
식사 및 간식 제공	1000	115	11.5	245	24.5	640	64.0
찾아 가는 공연	986	84	8.5	286	29.0	616	62.5
수도권 공연 순회공연	978	93	9.5	312	31.9	573	58.6
해설이 있는 공연	987	116	11.7	319	32.3	552	55.9
사전 교육 후 관람	981	204	20.8	355	36.2	422	43.0

- 공연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로 공연의 재미, 교통편의, 수준 높은 공연, 지역 공연시설 확충, 식사 및 간식 제공, 찾아 가는 공연, 수도권 공연 지방 순회공연, 공연에 대한 해설, 사전 교육 후 관람 등 9개 항목을 제시하여 필요성 정도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친 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재미있는 공연 제공(82.6%)이었으며, 그 다음이 교통편의 제공(70.3%), 수준 높은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공연 제공(68.8%), 지역 내 공연시설 확충(65.3%), 식사 및 간식 제공 (64.0%), 찾아 가는 공연(6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필요성이 가장 낮은 분야는 사전교육 후 관람(43.0%)이었으며, 해설이 있는 공연(55.9%), 수도권 공연의 지방 순회공연(58.6%) 순으로 나타났다.

나. 전시 관람에 대한 수요 및 요구사항

- 향후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71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시에 대해 조사(다중응답) 한 결과 총 1,400건을 선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4-18>과 같다.
- 총 응답자 714명이 가장 선호하는 전시는 사진 전시로 총 응답자의 48.5%가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그림전시 45.2%, 의상전시가 27.0% 순이었고, 가장 선호도가 낮은 전시 분야는 서예(11.3%)로 나타났다.

〈표 4-18〉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2가지 선택)

N=714(복수응답)

순위	전시 종류	빈도(명)	비율(%)
1	사진 전시	346	48.5
2	그림 전시	323	45.2
3	의상 전시회	193	27.0
4	도자기 공예 전시	163	22.8
5	고미술 전시	162	22.7
6	도서 전시회	117	16.4
7	서예	81	11.3
8	기타	15	2.1

- 전시 관람을 위해 프로그램 내용이나 관람 인프라 등 지원의 필요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 전시 관람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써 재미있는 전시, 교통편의, 수준 높은 전시, 지역 전시시설 확충, 식사 및 간식 제공, 찾아 가는 전시, 수도권 전시 지방 순회전시, 해설이 있는 전시, 사전 교육 후 관람 등 9개 항목을 제시하여 필요성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정도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친 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재미있는 전시 제공(77.0%)이었으며, 그 다음이 교통편의 제공(69.3%), 수준 높은 전시 제공(68.8%), 지역 내 전시시설 확충(65.3%), 해설 있는 전시 제공(62.8%), 식사 및 간식 제공(61.7%), 찾아 가는 전시(6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필요성이 가장 낮은 분야는 사전교육 후 관람(50.1%)이었으며, 그 다음 지방 순회전시(58.4%)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구 분	N	전혀필요없음 + 필요 없음		보 통		필요함 + 매우 필요함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재미있는 전시 제공	982	32	3.2	194	19.8
교통편의 제공	989	90	9.1	214	21.6	685	69.3
수준 높은 전시 제공	978	60	6.1	245	25.1	673	68.8
지역 내 전시시설 확충	989	64	6.4	279	28.2	646	65.3
해설이 있는 전시	984	106	10.8	260	26.4	618	62.8
식사 및 간식 제공	984	134	13.6	243	24.7	607	61.7
찾아 가는 전시	975	90	9.3	292	29.9	593	60.8
지방 순회 전시	969	79	8.2	324	33.4	566	58.4
사전 교육 후 관람	970	151	15.5	333	34.3	486	50.1

다.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 및 요구사항

- 향후 1년 이내 창작활동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창작활동에 대해 조사(다중응답)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 총 응답자 737명이 1,447개를 선택 하였으며, 이중 가장 선호하는 창작활동은 연극으로 응답자의 42.5%가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이 음악(37.3%), 미술(34.6%), 영화(28.1%), 전통예술(20.2%), 문학(1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선호도가 낮은 창작활동 분야는 무용(12.2%)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20〉 가장 하고 싶은 문화예술 창작활동(2가지 선택)

N=737(복수응답)

순위	전시 종류	빈도(명)	비율(%)
1	연극 창작활동	313	42.5
2	음악 창작활동	275	37.3
3	미술 창작활동	255	34.6
4	영화 창작활동	207	28.1
5	전통예술 창작활동	149	20.2
6	문학 창작활동	141	19.1
7	무용 창작활동	90	12.2
8	기타 창작활동	17	2.3

(3) 일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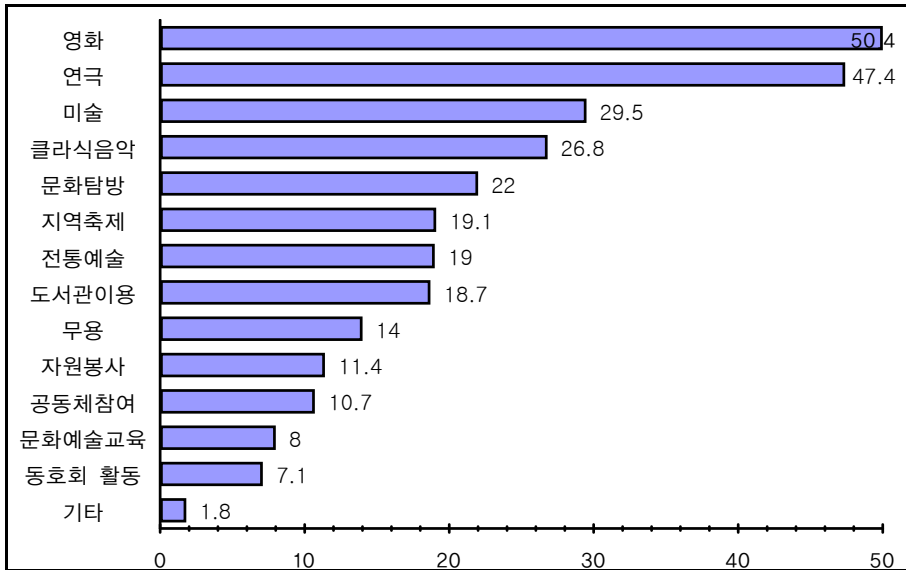
① 일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도 분석

- 향후 1년 이내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990명이 총 2,830개를 선택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 일반적인 문화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영화로 990명 중 50.4%(499명)가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 연극이 47.4%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이 영화와 연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술이 29.5%, 클래식 음악이 26.8%, 문화탐방이 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분야로는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7.1%), 문화예술교육(8.0%), 공동체 참여(10.7%), 문화예술 자원봉사 참여(11.4%)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그림 4-3] 일반적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3가지 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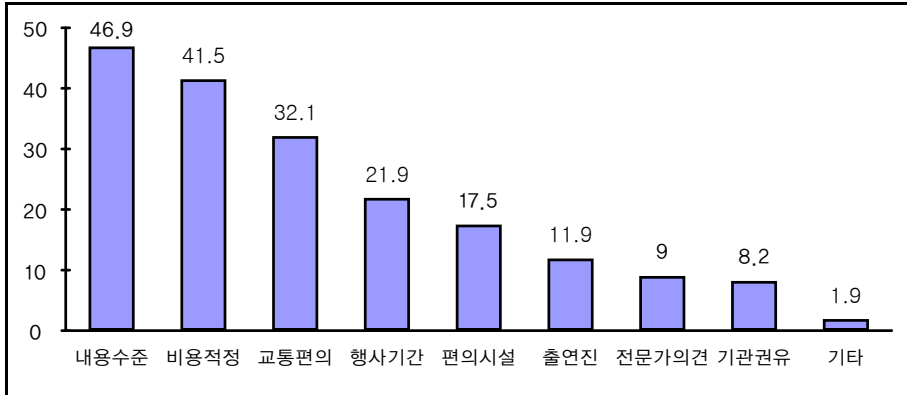
②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 분야의 선택 기준

- 문화나눔활동 참여 시 선택기준에 대해 조사(다중응답)한 결과 응답자 994명이 총1,898건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46.9%가 이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의 적절성(41.5%), 교통의 편리성(32.1%), 문화행사의 기간(21.9%), 편의시설의 구비여부(17.5%), 주체단체 및 출연진의 유명도(1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나눔활동 참여 시 복지 및 문화 관련기관장의 권유(8.2%)나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보도(9.0%) 등이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그림 4-4] 문화나눔활동의 참여 분야 선택 기준(다중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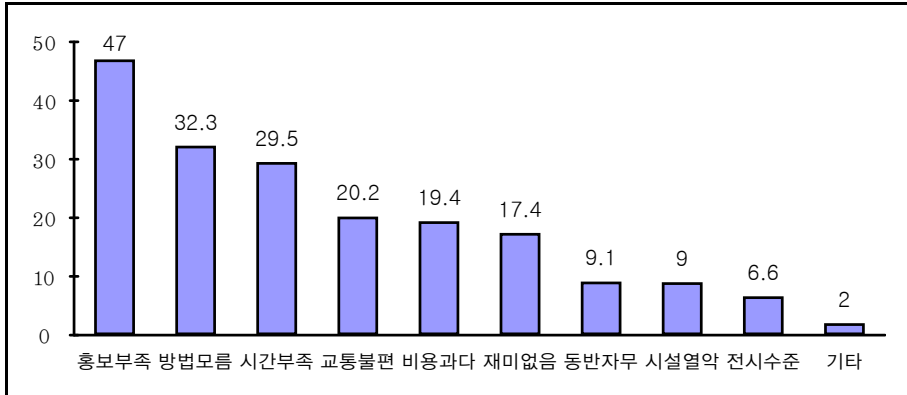
③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65명이 총 1,859건을 선택하였으며, 항목별 내용은 [그림 4-5]와 같다.
- 홍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47.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른다가 32.3%로 프로그램 내용이나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9.3%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다가 응답자 중 29.5%, 교통이 불편하다가 20.2%,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가 19.4%, 프로그램이 재미없다가 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다(9.0%),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6.6%)는 문화나눔활동의 참여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그림 4-5]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다중선택)

(단위: %)



- 문화나눔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분야의 선택 기준과 꺼려하는 이유를 종합해 볼 때 ① 문화나눔사업을 홍보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알려 주고,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② 대상 계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수준이 높아야한다는 점 ③ 대상자에 따라 교통편의 및 부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대상별 문화 수요조사 분석

(1) 청소년, 노인의 문화 수요

- 문화 수요 설문조사를 연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응답자 1,043명 중 2명(0.2%)이 나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12세에서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307명(29.4%), 20세에서 64세가 579명(55.5%), 65세 이상 노인층이 155명(14.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응답자의 자료를 청소년과 노인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① 청소년 및 노인의 공연에 대한 수요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연 관람에 의향이 있는 대상으로 청소년은 82.7%, 노인은 81.2%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 89.6%로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나타나 청소년과 노인층에 비해 중장년층이 다소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생각 (연령별)

구분	12-19세 이하		20-64세		65세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254	82.7	516	89.6	121	81.2
없다	53	17.3	60	10.4	28	18.8
계	307	100.0	576	100.0	149	100.0

-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하고 싶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가 50.0%(25명)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가 28.0%(14명), ‘홍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내용을 몰라서’가 20.0%(10명)로 나타나 상위 세 가지 이유가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가 68.0%(17명)로 가장 높았으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가 32.0%(8명), ‘교통이 불편해서’가 24.0%(6명)로 세 가지 이유가 전체의 72.1%를 차지해 청소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공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학교 수업으로 인한 시간문제와 공연관람 경험이 아직 부족하여 공연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표 4-22〉 공연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연령별)

구분	12-19세 이하 (N=50)		20-64세 (N=57)		65세 이상 (N=25)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재미없음	25	50.0	16	28.1	8	32.0
시간부족	14	28.0	27	47.4	0	0.0
홍보부족	10	20.0	13	22.8	17	68.0
방법모름	5	10.0	10	17.5	4	16.0
비용과다	5	10.0	10	17.5	2	8.0
교통불편	4	8.0	5	8.8	6	24.0
기타	11	22.0	18	31.5	6	24.0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공연에 대해 조사(다중응답)한 결과 885명의 응답자가 총 1744건을 선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23>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2~19세는 연극이 82.1%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영화가 65.7%, 클래식음악이 25.1% 순으로 나타났다. 20~64세의 경우 연극에 대한 선호도가 75.0%로 가장 높았으며, 영화가 48.1%, 클래식음악이 3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선호하는 공연으로는 전통예술이 62.0%로 가장 높았으며, 영화가 46.3%, 무용이 36.4% 나타나 청소년층은 연극을,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통예술을 뚜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연령별, 2가지 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251)		20-64세 (N=513)		65세 이상 (N=121)		계 (N=885)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클래식음악	63	25.1	198	38.6	17	14.0	278	31.4
전통예술	26	10.4	113	22.0	75	62.0	214	24.2
연극	206	82.1	385	75.0	35	28.9	626	70.7
무용	31	12.4	58	11.3	44	36.4	133	15.0
영화	165	65.7	247	48.1	56	46.3	468	52.9
기타	10	4.0	11	2.1	4	3.3	25	2.8

- 공연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필요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 내 공연시설 확충, 수준 높은 공연 제공, 재미있는 공연 제공, 수도권 공연단 지방 순회, 찾아가는 공연, 해설 있는 공연, 사전 교육 후 관람, 식사 및 간식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9개 항목을 제시하고 ‘전혀 필요 없음’에서부터 ‘매우 필요함’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9개 항목에 대해 평균 304.9명이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51.4%이었고, ‘전혀 필요 없다’와 ‘필요 없다’가 13.4%로 나타나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공연 제공’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4%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편의 제공이 63.2%, 식사 및 간식 제공이 61.3%, 수준 높은 공연 제공이 56.0%, 지역 공연시설 확충 수준 높은 공연 50.5% 순으로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필요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전 교육 후 관람(28.9%)이나, 해설 있는 공연(36.8), 수도권 공연단 지방 순회공연(42.7%) 등은 상대적으로 지원의 필요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청소년 기준)

구 분	N	전혀필요없음 + 필요 없음		보 통		필요함 + 매우 필요함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재미있는 공연 제공	305	11	3,6	67	22,0
교통편의 제공	305	28	9,2	84	27,5	193	63,2
식사 및 간식 제공	305	28	9,2	90	29,5	187	61,3
수준 높은 공연 제공	305	31	10,2	103	33,8	171	56,0
지역 공연시설 확충	305	25	8,2	126	41,3	154	50,5
찾아 가는 공연	305	45	14,7	113	37,0	147	48,2
수도권 공연 순회공연	305	45	14,8	130	42,6	130	42,7
해설이 있는 공연	305	63	20,7	130	42,6	112	36,8
사전 교육 후 관람	304	92	30,3	124	40,8	88	28,9

-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공연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 9개 항목에 대해 평균 131.9명이 응답하였고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74.4%였으며, ‘전혀 필요 없다’와 ‘필요 없다’가 9.7%로 나타나 노인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공연 제공’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3%로 나타나 청소년과 동일하게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교통편의 제공이 83.9%, 식사 및 간식 제공이 77.8%, 해설 있는 공연이 75.2%, 찾아가는 공연이 75.2%, 지역 공연시설 확충이 73.8%, 수준 높은 공연 제공이 70.6%, 수도권 공연단 지방 순회공연 66.2%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전 교육 후 관람’이 55.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9개 항목 모두에 대해 대부분이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25〉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노인 기준)

구 분	N	전혀필요없음 + 필요 없음		보 통		필요함 + 매우 필요함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재미있는 공연 제공	133	2	1.5	11	8.3
교통편의 제공	136	8	5.8	14	10.3	114	83.9
식사 및 간식 제공	140	19	13.6	12	8.6	109	77.8
찾아 가는 공연	129	7	5.4	25	19.4	97	75.2
해설이 있는 공연	129	7	5.4	25	19.4	97	75.2
지역 공연시설 확충	141	2	1.4	35	24.8	104	73.8
수준 높은 공연 제공	126	3	2.4	34	27.0	89	70.6
수도권 공연 순회공연	124	9	7.3	33	26.6	82	66.2
사전 교육 후 관람	129	30	23.3	28	21.7	71	55.1

-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 청소년과 노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성을 느끼는 순위로는 1위가 재미있는 공연 제공(청소년 : 74.1%, 노인 : 90.3%), 2위 교통편의 제공(청소년 : 63.2%, 노인 : 83.9%), 3위 식사 및 간식 제공(청소년 : 61.3%, 노인 77.8%)으로 청소년과 노인이 같게 나타나고 있으나, 항목별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청소년보다 노인이 더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9개 항목 전체에 대해 ‘필요’ 및 ‘매우 필요함’의 평균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51.4%인데 비해 노인은 74.4%로 나타나 노인이 청소년보다 공연관람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필요성을 느끼는 항목에서 청소년 및 노인 모두 재미있는 공연이나 교통편의 및 식사 제공 등 공연 관람을 위한 1차적 조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공연을 향유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나 해설 있는 공연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 및 노인의 전시에 대한 수요

- 전시회 관람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5〉와 같다.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63.2%(192명)가 전시를 관람할 의향이 있었으며, 20~64세 중장년층의 경우 84.7%(483명),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6.9%(97명)이 전시를 관람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장년층이 청소년과 노인층에 비해 전시를 관람하고 싶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하고 싶은 생각(연령별)

구분	12-19세 이하		20-64세		65세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192	63.2	483	84.7	97	66.9
없다	112	36.8	87	15.3	48	33.1
계	304	100.0	570	100.0	145	100.0

-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하고 싶지 않는 응답자 24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35명이 총 371건(157.9%)을 선택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가 53.21%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없어서’가 24.8%, ‘홍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내용을 몰라서’가 20.2%로 나타나 상위 세 가지 이유가 98.2%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층의 경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홍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가 31.9%, ‘교통이 불편해서’가 21.3%로 나타나 상위 세 가지 이유가 93.6%로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24.8%)가 상당한 이유로 나타났으나 노인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단한사람도 없었으며, 오히려 교통이 불편해서 전시 관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전시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연령별, 다중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109)		20-64세 (N=79)		65세 이상 (N=47)		계 (N=235)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재미없음	58	53.2	36	45.6	19	40.4	113	48.1
시간부족	27	24.8	31	39.2	0	0.0	58	24.7
홍보부족	22	20.2	13	16.5	15	31.9	50	21.3
교통불편	14	12.8	13	16.5	10	21.3	37	15.7
방법모름	6	5.5	10	12.7	8	17.0	24	10.2
전시수준	5	4.6	11	13.9	7	14.9	23	9.8
기타	32	29.4	23	29.1	11	23.4	66	28.1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772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시에 대해 조사(다중응답)한 결과 712명의 응답자가 총 1,396건을 선택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의 <표 4-28>과 같다.
-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선호하는 전시 유형으로 사진(6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이 46.3%, 의상이 40.4% 순으로 나타났다. 20~64세의 경우, 사진이 48.2%로 나타나 청소년과 선호하는 전시 유형이 동일하였고, 그림이 46.4%, 도자기가 2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그림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예가 36.3%, 고미술이 32.5% 순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전시 관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 계층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 및 그림 관련 전시에 대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연령층에 따라 선호하는 전시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8〉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연령별, 2가지 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190)		20-64세 (N=442)		65세 이상 (N=80)		계 (N=712)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도 서	27	14.2	79	17.9	10	12.5	116	16.3
그 림	88	46.3	205	46.4	30	37.5	323	45.4
사 진	118	62.1	213	48.2	15	18.8	346	48.6
서 예	7	3.7	45	10.2	29	36.3	81	11.4
고미술	25	13.2	109	24.7	26	32.5	160	22.5
도자기	30	15.8	110	24.9	23	28.8	163	22.9
의 상	76	40.3	99	22.4	17	21.3	192	27.0
기 타	3	1.6	10	2.3	2	2.5	15	2.1

- 전시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 9개 항목에 대하여 ‘전혀 필요 없음’부터 ‘매우 필요함’까지 5단계로 나누어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여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친 비율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29>와 같다. 수준 높은 공연, 수도권 공연단 지방 순회, 교육 후 관람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12-19세 이하 청소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전반적인 항목에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교통편의 제공 (12-19세 이하 : 61.6%, 20-64세 : 69.3%, 65세 이상 : 86%), 식사 및 간식제공 (12-19세 이하 : 59.7%, 20-64세 : 58.8%, 65세 이상 : 78.4%), 해설이 있는 전시(12-19세 이하 : 48%, 20-64세 : 67.8%, 65세 이상 : 99명 76.2%) 등의 항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다른 층에 비해 다소 높게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연령별)

구분	12-19세 이하		20-64세		65세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지역 내 전시시설 확충	149	49.7	393	71.2	103	76.3
수준 높은 전시 제공	161	53.6	422	76.0	89	73.5
재미있는 전시 제공	202	67.3	445	80.4	108	85.1
공연단 지방 순회 전시	123	41.0	364	66.7	78	64.5
찾아 가는 전시	140	46.7	363	66.6	89	69.5
해설이 있는 전시	144	48.0	374	67.8	99	76.2
사전 교육 후 관람	109	36.3	309	56.7	67	54.5
식사 및 간식 제공	179	59.7	322	58.8	105	78.4
교통편의 제공	285	61.6	382	69.3	117	86.0

③ 청소년 및 노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

-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의향을 조사할 결과 응답자 1,014명 중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305명 중 72.1%(220명)가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0-64세 중장년층의 경우 565명 중 76.3%(431명)가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144명 중 66.7%(96명)가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노인이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30〉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의향 조사

구분	12-19세 이하		20-64세		65세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220	72.1	431	76.3	96	66.7
없다	85	27.9	134	23.7	48	33.3
계	305	100.0	565	100.0	144	100.0

- 선호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문학, 미술,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등을 제시하여 조사(다중응답)한 결과,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선호하는 창작활동으로 연극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화가 50.7%, 음악이 38.8% 순으로 나타났다. 20~64세 이하의 중장년층에서는 연극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이 40.7%, 음악이 36.3% 순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통예술이 48.3%로 가장 높았고, 음악이 38.2%, 무용이 3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선호도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4-31〉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연령별, 2가지 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219)		20-64세 (N=427)		65세 이상 (N=89)		계 (N=735)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연극 창작활동	117	53.4	187	43.8	8	9.0	312	42.4
음악 창작활동	85	38.8	155	36.3	34	38.2	274	37.3
미술 창작활동	55	25.1	174	40.7	26	29.2	255	34.7
영화 창작활동	111	50.7	83	19.4	13	14.6	207	28.2
전통예술 활동	17	7.8	89	20.8	43	48.3	149	20.3
문학 창작활동	27	12.3	101	23.7	12	13.5	140	19.0
무용 창작활동	22	10.0	39	9.1	28	31.5	89	12.1
기타	7	3.2	6	1.4	4	4.5	17	2.3

④ 청소년 및 노인의 전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

- 일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미술 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생활문화 공동체 참여, 도서관 이용 및 독서 등 13개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분야로 나누어 보다 광범위한 유형을 제시 한 후,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2>와 같다.

-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영화가 71.0%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극이 56.3%, 클래식 음악이 26.0% 순으로 나타났고, 20~64세 중장년층의 경우 연극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영화가 45.6%, 미술이 32.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통예술이 45.1%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탐방이 36.8%, 연극이 2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별로 좋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대상에 따라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역시 잘 선별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연령별, 3가지 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300)		20-64세 (N=555)		65세 이상 (N=133)		계 (N=988)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영 화	213	71.0	253	45.6	33	24.8	499	50.5
연 극	169	56.3	260	46.8	39	29.3	468	47.4
미 술	77	25.7	181	32.6	34	25.6	292	29.6
클래식음악회	78	26.0	155	27.9	30	22.6	263	26.6
역사문화유산	31	10.3	138	24.9	49	36.8	218	22.1
지역문화 축제 참가	66	22.0	102	18.4	21	15.8	189	19.1
전통 예술	24	8.0	104	18.7	60	45.1	188	19.0
도서관 이용 및 독서	71	23.7	95	17.1	19	14.3	185	18.7
무 용	40	13.3	74	13.3	24	18.0	138	14.0
문화예술 자원봉사	48	16.0	50	9.0	15	11.3	113	11.4
생활문화 공동체참여	21	7.0	73	13.2	12	9.0	106	10.7
문화예술 관련 교육	18	6.0	54	9.7	7	5.3	79	8.0
문화예술 동호회참여	20	6.7	42	7.6	8	6.0	70	7.1
기 타	12	4.0	4	0.7	1	0.8	17	1.7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을 알아보기 위해 미술 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전통 예술 공연, 연극, 무용, 영화 등 9개 유형을 제시한 후 조사(다중응답)한 결과, 12~19세 이하 청소년에서는 영화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연극이 49.7%로 나타나 청소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연극 및 영화 관련 교육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64세의 경우 연극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전시가 30.4%, 영화가 29.6%로 나타났고,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전통예술(35.8%) 및 역사문화탐방(31.3%)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층에서는 참여하고 싶은 교육 분야에 영화가 28.3%, 무용이 25.5%, 미술 전시가 21.7%으로 나타나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연령별, 다중 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193)		20-64세 (N=375)		65세 이상 (N=106)		계 (N=674)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미술 전시회	36	18.7	114	30.4	23	21.7	173	25.7
클래식 음악회	34	17.6	91	24.3	19	17.9	144	21.4
전통예술 공연	9	4.7	77	20.5	38	35.8	124	18.4
연극	96	49.7	131	34.9	7	6.6	234	34.7
무용	32	16.6	33	8.8	27	25.5	92	13.6
영화	112	58.0	111	29.6	30	28.3	253	37.5
도서관이용 및 독서	27	14.0	47	12.5	13	12.3	87	12.9
역사문화유산 탐방	19	9.8	84	22.4	33	31.1	136	20.2
문화예술 자원봉사	16	8.3	32	8.5	7	6.6	55	8.2
기타	5	2.6	9	2.4	9	8.5	23	3.4

- 문화나눔사업 참여 시 선택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수준,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주최 단체 등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다중응답)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한 결과 992명이 총 1,896건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4>와 같다.

-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문화나눔사업 참여 시 중요한 선택기준으로서 ‘프로그램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비용의 적절성’이 38.7%로 나타났다. 20~64세 이하 중장년층에서도 ‘프로그램의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의 적절성’이 44.7%로 나타나 청소년과 동일한 선택기준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교통의 편의성’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의 적절성’이 35.1% 나타나 선택기준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동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34>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 기준 (연령별, 다중 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302)		20-64세 (N=559)		65세 이상 (N=132)		계 (N=992)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비용의 적절성	117	38.7	250	44.7	46	35.1	413	41.6
프로그램 수준	128	42.4	295	52.8	43	32.8	466	47.0
문화행사기간	74	24.5	135	24.2	8	6.1	217	21.9
출연진유명도	39	12.9	60	10.7	19	14.5	118	11.9
교통편의성	94	31.1	166	29.7	59	45.0	319	32.2
편의시설구비여부	59	19.5	97	17.4	18	13.7	174	17.5
전문가의견 및 언론보도	17	5.6	64	11.4	8	6.1	89	9.0
문화기관장권유	13	4.3	39	7.0	29	22.1	81	8.2
기타	9	3.0	10	1.8	0	0.0	19	1.9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12~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홍보부족’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부족’이 31.6%, ‘프로그램 참여방법을 몰라서’가 25.9% 순으로 나타났다. 20~64세의 연령층에서도 ‘홍보부족’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참여방법을 몰라서’가 35.0%, ‘시간부족’이 30.7%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층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홍보부족’이 40.3%, ‘프로그램 참여방법을 몰라서’가 36.4%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히 ‘교통 불편’이 23.3%, ‘재미가 없어서’가 23.3%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35〉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연령별, 다중 선택)

구분	12-19세 이하 (N=294)		20-64세 (N=540)		65세 이상 (N=129)		계 (N=963)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홍보부족	133	45.2	269	49.8	52	40.3	454	47.1
방법모름	76	25.9	189	35.0	47	36.4	312	32.4
시간부족	93	31.6	166	30.7	25	19.4	284	29.5
교통불편	57	19.4	108	20.0	30	23.3	195	20.2
비용과다	53	18.0	110	20.4	24	18.6	187	19.4
재미없음	72	24.5	66	12.2	30	23.3	168	17.4
기타 외	85	28.9	150	27.8	22	17.1	257	26.7

(2) 장애인의 문화수요

- 전체 응답자 1,043명 중 장애인(151명, 14.5%)의 문화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비장애인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① 장애인의 공연에 대한 수요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장애인 전체 149명 중 133명(89.3%)이었으며, 비장애인에서는 전체 880명 중 756명(85.9%)이 응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공연에 대한 수요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응답자 889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공연을 조사(다중응답)한 결과 882명이 총1,394건을 선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36〉과 같다. 장애인의 경우 영화가 63.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연극이 54.6%, 클래식 음악이 32.3%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연극이 73.5%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그 다음 영화가 51.2%, 클래식 음악이 31.3%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36〉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장애인, 2가지 선택)

구분	장애인 (N=130)		비장애인 (N=752)		계 (N=882)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클래식음악	42	32.3	235	31.3	277	31.4
전통예술	41	31.5	170	22.6	211	23.9
연극	71	54.6	553	73.5	624	70.7
무용	15	11.5	118	15.7	133	15.1
영화	83	63.8	385	51.2	468	53.1
기타	3	2.3	22	2.9	255	2.8

- 공연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여,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친 비율을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간 비교한 결과는 〈표 4-37〉과 같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의견 차이를 보인 항목은 ‘사전 교육 후 관람’으로 장애인은 57.3%(79명)가 사전 교육에 대해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한 반면, 비장애인은 40.6%(341명)만이 사전 교육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식사 및 간식제공’으로 장애인은 76.3%(109명)가 이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경우 62.1%(530)로 나타나 장애인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장애인은 81.9%(118명)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 반면, 비장애인은 68.5%(582명)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표 4-37〉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장애인)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빈도(명)	%	빈도(명)	%
지역 공연시설 확충	89	63.1	565	65.5
수준 높은 공연 제공	90	64.3	586	69.5
재미있는 공연 제공	114	80.8	710	82.8
수도권 공연 순회공연	79	56.8	491	50.7
찾아 가는 공연	86	61.4	527	62.6
해설이 있는 공연	88	64.3	461	54.4
사전 교육 후 관람	79	57.3	341	40.6
식사 및 간식 제공	109	76.3	530	62.1
교통편의 제공	118	81.9	582	68.5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② 장애인의 전시에 대한 수요

- 향후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비교해본 결과, 장애인 중에서는 82.9%(121명)가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비장애인의 경우 74.7%(649명)가 응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전시관람 선호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전시를 관람 할 의향 조사(장애인)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121	82.9	649	74.7
없다	25	17.1	220	25.3
계	146	100.0	869	100.0

- 향후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770명에게 관람하고 싶은 전시회를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 711명이 총1,394건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39〉와 같다. 장애인의 경우 관람하고 싶은 전시 유형으로 사진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이 32.2%, 고미술이 29.6%, 서예가 27.8%, 도자기가 2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관람하고 싶은 전시유형으로 사진이 50.5%, 그림이 47.8%로 나타나 두 분야에 선호도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9〉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장애인, 2가지 선택)

구분	장애인 (N=115)		비장애인 (N=596)		계 (N=711)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도서	22	19.1	94	15.8	116	16.3
그림(조각)	37	32.2	285	47.8	322	45.3
사진	45	39.1	301	50.5	346	48.7
서예	32	27.8	49	8.2	81	11.4
고미술(골동품)	34	29.6	128	21.5	162	22.8
도자기(공예품)	32	27.8	129	21.6	161	22.6
의상	22	19.1	169	28.4	191	26.9
기타	4	3.5	11	1.8	15	2.1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전시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여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의 비율을 합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4-40>과 같다. 필요성에 대해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사 및 간식제공’으로 장애인의 경우 76.1%(108명)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반면, 비장애인은 59.2%(498명)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은 ‘교통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은 80.5%(116명)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경우 67.2%(567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전 교육 후 관람’에서 장애인은 60.1%(83명), 비장애인은 48.4%(402명)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4-40〉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장애인)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빈도(명)	%	빈도(명)	%
지역 내 전시시설 확충	90	63.4	554	65.6
수준 높은 전시 제공	98	69.0	573	68.7
재미있는 전시 제공	108	77.1	646	77.0
공연단 지방 순회 전시	83	58.9	482	58.4
찾아 가는 전시	86	61.8	506	60.7
해설이 있는 전시	99	69.7	517	61.7
사전 교육 후 관람	83	60.1	402	48.4
식사 및 간식 제공	108	76.1	498	59.2
교통편의 제공	116	80.5	567	67.2

③ 장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소외계층 비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가 20.3%, ‘1인당 지원 증액’이 1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35.0%였으며, ‘소외계층 비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가 32.1%이었고, ‘장르 확대’가 16.4%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문화예술 창작활동 의향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은 82.9%가 찬성한 반면, 비장애인은 72.1%에 불과해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의욕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선호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문학, 미술,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등 다양한 활동 유형을 제시하여 조사(다중응답)한 결과는 <표 4-41>과 같다. 장애인의 경우, 선호하는 창작활동으로는 음악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이 34.7%, 전통예술이 33.1%, 연극이 29.8%, 문학이 25.6% 영화가 24.0% 순으로 나타나 여러 분야를 골고루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선호하는 창작활동으로 연극이 44.9%, 음악이 37.4%, 미술이 34.3%, 영화가 29.1%로 나타나 소수 분야만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장애인, 2가지 선택)

구분	장애인 (N=121)		비장애인 (N=612)		계 (N=733)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문학 창작활동	31	25.6	109	17.8	140	19.1
미술 창작활동	42	34.7	210	34.3	252	34.4
음악 창작활동	46	38.0	229	37.4	275	37.5
전통예술 창작활동	40	33.1	108	17.6	148	20.2
연극 창작활동	36	29.8	275	44.9	311	42.4
무용	10	8.3	80	13.1	90	12.3
영화	29	24.0	178	29.1	207	28.2
기타(무용 등)	6	5.0	11	1.8	17	2.3

④ 장애인의 전반적인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수요

- 일반적인 문화활동 13개 분야 가운데 선호하는 문화활동을 조사(다중응답)한 결과는 <표 4-42>와 같다. 장애인의 경우, 선호하는 문화활동으로 영화 50.7%, 연극 35.4%, 미술 31.9%, 클래식 음악 27.8%, 전통예술 27.8%, 역사문화유산 탐방 26.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영화 50.7%, 연극 49.6%, 미술 29.1%, 클래식 음악 26.6%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4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장애인)

구분	장애인 (N=144)		비장애인 (N=841)		계 (N=985)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미 술	46	31.9	245	29.1	291	29.5
클래식 음악회	40	27.8	224	26.6	264	26.8
전통 예술	40	27.8	147	17.5	187	19.0
연 극	51	35.4	417	49.6	468	47.5
무 용	17	11.8	122	14.5	139	14.1
영 화	73	50.7	426	50.7	499	50.7
생활문화 공동체참여	21	14.6	84	10.0	105	10.7
도서관 이용 및 독서	25	17.4	158	18.8	183	18.6
문화예술 관련 교육	19	13.2	59	7.0	78	7.9
역사문화유산 탐방	38	26.4	177	21.0	215	21.8
문화예술 자원봉사	7	4.9	105	12.5	112	11.4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15	10.4	55	6.5	70	7.1
지역문화 축제 참가	24	16.7	163	19.4	187	19.0
기 타	3	2.1	15	1.8	18	1.8

- 문화나눔사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9개 항목을 제시하여 조사(다중응답) 한 결과는 다음의 〈표 4-43〉과 같다. 장애인의 경우, 중요한 선택기준으로서 ‘교통편 의성’이 39.6%로 나타났으며, ‘비용의 적절성’이 37.5%, ‘프로그램의 수준’이 34.0% 순으로 나타나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동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준’이 49.4%, ‘비용의 적절성’이 42.4%, ‘교통의 편의성’이 30.7% 순으로 나타나 문화나눔사업 참여에 대한 선택기준에 있어서 장애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편, 장애인의 경우,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보도(6.9%),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및 이웃들의 권유(9.7%)는 문화나눔사업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43〉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 기준(장애 유무, 다중 선택)

구분	장애인(N=144)		비장애인(N=844)		계(N=988)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비용의 적절성	54	37.5	358	42.4	412	41.7
프로그램 수준	49	34.0	417	49.4	466	47.2
행사기간	33	22.9	184	21.8	217	22.0
출연진 유명도	19	13.2	98	11.6	117	11.8
교통편의	57	39.6	259	30.7	316	32.0
편의시설	39	27.1	135	16.0	174	17.6
전문가 의견	10	6.9	78	9.2	88	8.9
기관장 권유	14	9.7	67	7.9	81	8.2
기 타	3	2.1	15	1.8	18	1.8

(3) 저소득층의 문화수요

- 월 소득을 100만원미만(수급자 포함), 1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수요를 저소득층(300만 원 미만)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① 저소득층의 공연에 대한 수요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300만 원 이상이 88.9%(12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300만원 미만 88.5% (423명), 수급자 및 100만원 미만이 83.0%(318명)로 소득이 적을수록 공연 의향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44〉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할 의향 조사(소득별)

구분	수급 + 100만		100-300만		300만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318	83.0	423	88.5	128	88.9
없다	65	17.0	55	11.5	16	11.1
계	383	100.0	478	100.0	144	100.0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선호하는 공연을 2가지를 선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연극, 영화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영화 55.1%, 연극 53.2%, 전통예술 3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다수(76.2%)의 응답자가 연극을 선호하였고 클래식 음악과 영화가 44.4%로 나타났다.
- 클래식 음악은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며, 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5〉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소득별, 2가지 선택)

구분	수급 + 100만 (N=316)		100-300만 (N=422)		300만 이상 (N=126)		계 (N=864)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클래식음악	87	27.5	125	29.6	56	44.4	268	31.0
전통예술	117	37.0	65	15.4	26	20.6	208	24.1
연극	168	53.2	346	82.0	96	76.2	610	70.6
무용	61	19.3	54	12.8	14	11.1	129	14.9
영화	174	55.1	233	55.2	56	44.4	463	53.6
기타	11	3.5	11	2.6	2	1.6	24	2.8

- 공연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여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의 비율을 합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준 높은 공연, 사전교육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미있는 공연을 제공해 달라는 것은 모든 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 포함 1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교통 편의제공(82.2%)과 식사 및 간식 제공(77.9%)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46〉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소득별)

구분	수급 + 100만		100-300만		300만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지역 공연시설 확충	246	66.9	308	65.3	87	62.6
수준 높은 공연 제공	238	68.2	329	70.0	97	69.3
재미있는 공연 제공	301	83.2	391	83.0	116	82.9
수도권 공연 순회공연	212	61.6	277	59.3	69	50.0
찾아 가는 공연	223	63.5	291	62.0	83	60.5
해설이 있는 공연	214	61.2	251	53.5	68	48.9
사전 교육 후 관람	168	48.2	182	39.0	57	41.6
식사 및 간식 제공	285	77.9	264	56.4	69	50.4
교통편의 제공	300	82.2	307	65.4	74	54.1

② 저소득층의 전시에 대한 수요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이 72.3%(274명)로 다른 계층보다 전시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1년 이내 전시를 관람할 의향 조사(소득별)

구분	수급 + 100만		100-300만		300만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318	83.0	423	88.5	128	88.9
없다	65	17.0	55	11.5	16	11.1
계	383	100.0	478	100.0	144	100.0

- 관람하고 싶은 전시회를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의 경우 그림 39.5%(98명), 사진 35.9%(89명) 순으로 선호하였고,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경우 연극 58.8%(202명), 그림 47.7%(164명) 순으로, 300만원 이상의 경우 그림 48.6%(51명)과 사진 46.7%(49명)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48〉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소득별, 2가지 선택)

구분	수급 + 100만 (N=248)		100-300만 (N=344)		300만 이상 (N=105)		계 (N=697)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도서	43	17.3	51	14.8	23	21.9	117	16.8
그림(조각)	98	39.5	164	47.7	51	48.6	313	44.9
사진	89	35.9	202	58.7	49	46.7	340	48.8
서예	55	22.2	14	4.1	10	9.5	79	11.3
고미술(골동품)	70	28.2	65	18.9	24	22.9	159	22.8
도자기(공예품)	67	27.0	62	18.0	27	25.7	156	22.4
의상	59	23.8	107	31.1	22	21.0	188	27.0
기타	7	2.8	6	1.7	2	1.9	15	2.2

- 전시 관람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여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의 비율을 합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해설이 있는 전시와 식사 및 간식제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미있는 전시 제공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은 교통편의 제공(수급자와 100만원 미만 : 79.5%, 100만원 - 300만원 미만 : 65.6%, 300만 원 이상 : 54.5%)에 대해서 높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소득별)

구분	수급 + 100만		100-300만		300만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지역 내 전시시설 확충	245	67.7	301	65.2	81	59.5
수준 높은 전시 제공	246	70.7	320	68.9	91	66.4
재미있는 전시 제공	276	78.2	382	78.1	102	74.5
공연단 지방 순회 전시	207	60.4	268	57.9	71	53.0
찾아 가는 전시	215	61.1	288	62.8	72	53.4
해설이 있는 전시	228	63.8	299	64.7	72	52.9
사전 교육 후 관람	185	53.5	229	49.7	59	44.0
식사 및 간식 제공	272	35.6	261	56.6	54	40.3
교통편의 제공	291	79.5	302	65.6	73	54.5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③ 저소득층의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

-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의 경우 71.2%(267명), 100만-300만원 미만이 74.6%(350명), 300만 원 이상이 79.0%(113명)로 공연관람이나 전시 관람보다는 다소 떨어지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0〉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의향 조사(소득별)

구분	수급 + 100만		100-300만		300만 이상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267	71.2	350	74.6	113	79
없다	108	28.8	119	25.4	30	21.0
계	375	100.0	369	100.0	143	100.0

- 선호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2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음악 40.5%, 미술 35.1%, 전통예술 33.2%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3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연극 44.6%, 음악 41.1%, 미술 35.7%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전통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선호가 고소득층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소득별, 2가지 선택)

구분	수급 + 100만 (N=262)		100-300만 (N=348)		300만 이상 (N=112)		계 (N=722)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문학 창작활동	47	17.9	69	19.8	24	21.4	140	19.4
미술 창작활동	92	35.1	120	34.5	40	35.7	252	34.9
음악 창작활동	106	40.5	115	33.0	46	41.1	267	37.0
전통예술 창작활동	87	33.2	48	13.8	12	10.7	147	20.4
연극 창작활동	71	27.1	183	52.6	50	44.6	304	42.1
무용 창작활동	43	16.4	32	9.2	13	11.6	88	12.2
영화 창작활동	54	20.6	114	32.8	35	31.3	203	28.1
기타(무용 등)	11	4.2	2	0.6	4	3.6	17	2.4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 또한 현재 복권기금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점을 살펴보면 1위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100만 원 미만 : 40.5%, 300만 원 이상 : 43.7%), 2위 소외계층 비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100만원 미만 : 27.6%, 300만 원 이상 : 23.9%), 3위가 문화예술분야를 장르별로 더 확대해야 한다(100만원 미만 : 13.2%, 300만 원 이상 : 18.3%) 순으로 나타났다.

④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수요

□ 일반적인 문화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문화활동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영화(100만 원 미만 : 43.1%, 100만-300만원 미만 : 57.0%, 300만 원 이상 : 50.0%)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은 영화(43.1%)에 이어 연극 38.3%, 미술 29.4%, 전통예술 28.3%, 역사문화탐방 26.7%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의 경우 영화(50.0%)에 이어 연극 47.2%, 클래식 음악 38.7%, 미술 26.1%, 도서관 이용 23.9%로 나타났다. 전통예술과 대중문화는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소득이 오를수록 클래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의 경우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7.5%), 문화예술 자원봉사(7.8%), 문화예술교육(8.9%), 생활문화 공동체 참여(9.7%)는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소득별, 3가지 선택)

구분	수급 + 100만 (N=360)		100-300만 (N=461)		300만 이상 (N=142)		계 (N=963)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미술	106	29.4	141	30.6	37	26.1	284	29.5
클래식음악회	95	26.4	104	22.6	55	38.7	254	26.4
전통예술	102	28.3	59	12.8	18	12.7	179	18.6
연극	138	38.3	255	55.3	67	47.2	460	47.8
무용	55	15.3	62	13.4	18	12.7	135	14.0
영화	155	43.1	263	57.0	71	50.0	489	50.8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생활문화 공동체참여	35	9.7	47	10.2	21	14.8	103	10.7
도서관 이용 및 독서	66	18.3	81	17.6	34	23.9	181	18.8
문화예술 관련 교육	32	8.9	37	8.0	9	6.3	78	8.1
역사문화유산	96	26.7	85	18.4	31	21.8	212	22.0
문화예술 자원봉사	28	7.8	66	14.3	18	12.7	112	11.6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27	7.5	29	6.3	11	7.7	67	7.0
지역문화 축제 참가	62	17.2	95	20.6	29	20.4	186	19.3
기타	10	2.8	7	1.5	1	0.7	18	1.9

(4) 지역별 문화수요

① 지역별 공연에 대한 수요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 도시가 90.3%(361명), 농어촌이 89.6%(103명)으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가 82.9%(42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53〉 공연을 관람할 의향 조사(지역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 다	429	82.7	361	90.3	103	89.6
없 다	90	17.3	39	9.8	12	10.4
계	519	100.0	400	100.0	115	100.0

- 향후 1년 이내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에게 선호하는 공연이 무엇인지를 2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극(62.9% - 78.8%), 영화(50.5% - 58.2%)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연극 62.9%, 영화 58.2%, 클래식음악 28.4% 순으로 중소도시는 연극 78.8%, 영화 47.5%, 클래식음악 35.5% 순으로, 농어촌은 연극 74.8%, 영화 50.5%, 클래식음악 30.1%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54〉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지역별, 2가지 선택)

구분	대도시 (N=426)		중소도시 (N=358)		농어촌 (N=103)		계 (N=887)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클래식음악	121	28.4	127	35.5	31	30.1	279	31.5
전통예술	118	27.7	75	20.9	21	20.4	214	24.1
연극	268	62.9	282	78.8	77	74.8	627	70.7
무용	77	18.1	41	11.5	15	14.6	133	15.0
영화	248	58.2	170	50.5	52	50.5	470	53.0
기타	12	2.8	10	2.9	3	2.9	25	2.8

② 지역별 전시에 대한 수요

- 관람하고 싶은 전시회를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사진 47.4%, 그림 44.7%, 고미술 24.0% 순으로, 중소도시는 사진 49.5%, 그림 42.9%, 의상 32.2% 순으로, 농어촌은 그림 54.3%, 사진 48.9%, 의상 3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5〉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지역별, 2가지 선택)

구분	대도시 (N=333)		중소도시 (N=289)		농어촌 (N=92)		계 (N=714)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도서	59	17.7	46	15.9	12	13.0	117	16.4
그림(조각)	149	44.7	124	42.9	50	54.3	323	45.2
사진	158	47.4	143	49.5	45	48.9	346	48.5
서예	58	17.4	16	5.5	7	7.6	81	11.3
고미술(골동품)	80	24.0	62	21.5	20	21.7	162	22.7
도자기(공예품)	70	21.0	77	26.6	16	17.4	163	22.8
의상	72	21.6	93	32.2	28	30.4	193	27.0
기타	9	2.7	4	1.4	2	2.2	15	2.1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③ 지역별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

-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가 70.0%, 중소도시가 76.6%, 농어촌이 80.7%로 나타나 농어촌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지도 선생 등 창작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56〉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의향 조사(지역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있다	362	70.0	295	76.6	92	80.7
없다	155	30.0	90	23.4	22	19.3
계	517	100.0	385	100.0	114	100.0

- 선호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2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음악 39.34%, 미술 37.4%, 연극 34.9% 순으로, 중소도시는 연극 47.5%, 음악 37.7%, 미술 32.4% 순으로, 농어촌은 연극 56.5%, 영화 31.5%, 미술 30.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갈수록 연극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4-57〉 가장 하고 싶은 창작활동(지역별, 2가지 선택)

	대도시 (N=361)		중소도시 (N=284)		농어촌 (N=92)		계 (N=737)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문학 창작활동	72	19.9	55	19.4	14	15.2	141	19.1
미술 창작활동	135	37.4	92	32.4	28	30.4	255	34.6
음악 창작활동	142	39.3	107	37.7	26	28.3	275	37.3
전통예술 창작활동	78	21.6	50	17.6	21	22.8	149	20.2
연극 창작활동	126	34.9	135	47.5	52	56.5	313	42.5
무용	53	14.7	26	9.2	11	12.0	90	12.2
영화	96	26.6	82	28.9	29	31.5	207	28.1
기타(무용 등)	12	3.3	4	1.4	1	1.1	17	2.3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④ 지역별 전반적인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수요

- 일반적인 문화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문화활동을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영화, 연극을 주로 선호하였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영화 51.3%, 연극 46.5%, 미술 32.3% 순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영화 49.5%, 연극 46.6%, 클래식음악 30.7% 순으로, 농어촌은 연극 54.0%, 영화 49.6%, 지역 축제 37.2%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와 연극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58〉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지역별, 3가지 선택)

구분	대도시 (N=499)		중소도시 (N=378)		농어촌 (N=113)		계(N=990)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미술	161	32.3	99	26.2	32	28.3	292	29.5
클래식 음악회	117	23.4	116	30.7	32	28.3	265	26.8
전통 예술	95	19.0	75	19.8	18	15.9	188	19.0
연극	232	46.5	176	46.6	61	54.0	469	47.4
무용	76	15.2	52	13.8	11	9.7	139	14.0
영화	25	51.3	187	49.5	56	49.6	499	50.4
생활문화 공동체참여	56	11.2	38	10.1	12	10.6	106	10.7
도서관 이용 및 독서	94	18.8	72	19.0	19	16.8	185	18.7
문화예술 관련 교육	50	10.0	26	6.9	3	2.7	79	8.0
역사문화유산 탐방	118	23.6	69	18.3	31	27.4	218	22.0
문화예술 자원봉사	52	10.4	50	13.2	11	9.7	113	11.4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36	7.2	25	6.6	9	8.0	70	7.1
지역문화 축제 참가	85	17.0	62	16.4	42	37.2	189	19.1
기타	12	2.4	5	1.3	1	0.9	18	1.8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총 9개 분야 중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영화, 연극을 주로 선호하였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영화 38.8%, 연극 31.4%, 중소도시는 연극 37.8%, 영화 35.3% 순으로, 농어촌은 연극 41.2%, 영화 37.6%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59〉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지역별)

구분	대도시 (N=353)		중소도시 (N=238)		농어촌 (N=85)		계 (N=676)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미술 전시회	97	27.5	61	25.6	15	17.6	173	25.6
클래식 음악회	66	18.7	56	23.5	22	25.9	144	21.3
전통예술 공연	57	16.1	52	21.8	15	17.6	124	18.3
연극	111	31.4	90	37.8	35	41.2	236	34.9
무용	54	15.3	28	11.8	11	12.9	93	13.8
영화	137	38.8	84	35.3	32	37.6	253	37.4
도서관이용 및 독서	47	13.3	31	13.0	9	10.6	87	12.9
역사문화유산 탐방	79	22.4	33	13.9	25	29.4	137	20.3
문화예술 자원봉사	34	9.6	18	7.6	3	3.5	55	8.1
기타	18	5.1	2	0.8	3	3.5	23	3.4

- 문화나눔사업의 선택기준을 다중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준 46.7%, 비용의 적절성 40.8%, 교통의 편의성 35.4% 순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프로그램수준이 48.3%, 비용의 적절성 39.8%, 교통의 편의성 29.7% 순으로, 비슷하나 농어촌의 경우는 우선 비용의 적절성(50.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프로그램수준 42.9%, 교통편의성 25.0% 순으로 문화나눔사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60〉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 기준(지역별, 2가지 선택)

구분	대도시 (N=505)		중소도시 (N=377)		농어촌 (N=112)		계 (N=994)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비용의 적절성	206	40.8	150	39.8	57	50.9	413	41.5
프로그램 수준	236	46.7	182	48.3	48	42.9	466	46.9
문화행사 기간	104	20.6	98	26.0	16	14.3	218	21.9
출연진 유명도	71	14.1	34	9.0	13	11.6	118	11.9
교통 편의성	179	35.4	112	29.7	28	25.0	319	32.1
편의시설 구비	108	21.4	50	13.3	16	14.3	174	17.5
전문가 의견	36	7.1	39	10.3	14	12.5	89	9.0
기관장 권유	60	11.9	17	4.5	5	4.5	82	8.2
기 타	12	2.4	7	1.9	0	0.0	19	1.9

3. 전문가집단 면접

1) FGI의 설계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FGI에서는 문화나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경기문화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자(현장 실무자)가 FGI에 참여하였고, 2차 FGI에서는 현장 전문가로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메세나 협회, CJ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1) FGI 과정

〈표 4-61〉 FGI 구성

구분	날짜	시간	장소	참여자
1차 FGI	2011.12.15 (목)	10:30- 12:3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층 회의실	한국문화의집협회 우지연 사무처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권영옥 사무국장 경기문화재단 임재춘 예술교육지원센터 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효원
2차 FGI	2012.1.13. (금)	14:00- 16: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층 회의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수삼국장 메세나 협회 이병권 사무처장 CJ 문화재단 곽대석 사무국장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김현주

(2) FGI 주요 질문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조사 연구를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소외계층의 조작적 개념화 및 범위 논의
 - 문화소외계층의 대상별, 지역별 분포를 통한 사각지대 파악
 - 사회복지시설과의 매칭(파트너십) 모색
 - 문화복지수요조사 결과 내용 논의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관련 제언
 -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견 추가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통합적인 의견 제시

2) FGI의 분석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조사 연구를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문화소외계층의 조작적 개념화 및 범위, 사회복지시설과의 매칭(파트너십) 모색,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관련 제언(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화나눔사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1) 문화소외계층의 조작적 개념화 및 범위

- 문화소외계층을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개념화할 수 없다.
- 문화프로그램 안에서 경제적인 기준만으로 문화소외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지역적인 문화적 격차, 한 지역 안에서의 계층적, 세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소득 중심의 대상보다는 문화공연시설, 공연회수, 주요작품의 질 등을 고려하여 소외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문화는 정량이 아닌 정성적인 것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을 구분해야 한다.
- 문화나눔사업에서 집행자를 제외하고 수요자, 예술인, 심지어 프로그램까지도 소외되어 있다.
- 문화적 소외와 문화적 무관심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소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문화적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바 이는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 문화복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소외계층의 정의도 명확해질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과의 매칭(파트너십) 모색

- 사회복지기관, 문화의집,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운영하면서 정보 공유. 공동사업 모색하고 있다.
- 사회복지기관과 매칭사업을 했다. 매칭할 경우 재능기부자 예술인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진행하였다.
- 기존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과 잘 연결이 되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복지계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특히, 아동)의 창출욕구 개발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복지계와 매칭되었을 때 복지계는 경제적인 것만 찾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볼런티어를 통해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이를 운영할 기회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를 제공한다면 문화와 볼런티어(복지)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

(3)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관련 제언

- 관람을 통해 자존감 회복의 효과, 문화적 주체성 회복, 주체성 회복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자존감 만들어 교류와 소통이 된다. 문화바우처는 이러한 향유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 다른 여러 사업들을 엮을 수 있는 매개자 필요하며 바우처와 기획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정보력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지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안에서 제대로 설계될 수 있는 환경 필요하다.
- 지역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기획사업의 형태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 단순한 예술교육이 아닌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 질적 평가 방식의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
- 소극적인 서비스제공이 아닌 적극적인 문화예술 창출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장르별, 대상별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및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분석

〈표 4-62〉 FGI 요약

주제	전문가 의견
문화소외계층의 조작적 개념화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것만으로 개념화 할 수 없음 · 보편적 복지 차원 접근 · 문화적 무관심 및 문화제공자(예술인)도 소외에 포함
사회복지시설과의 매칭(파트너십)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련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 모색 · 사군구와 연계하면 다양한 사업 진행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개발 필요 · 문화사업에 볼런티어를 연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관련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자 필요 · 홍보강화 · 지속적이고 유기적 연결을 위한 환경 · 참여하는 사업의 다양화 · 평가틀 개발 필요 · 장르별, 대상별 매뉴얼 지원 ·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설계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1. 문화소외계층의 개념화와 규모
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별 대상수 확대 방안
3.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별 분석
4. 문화복지 추진체계 개선 방안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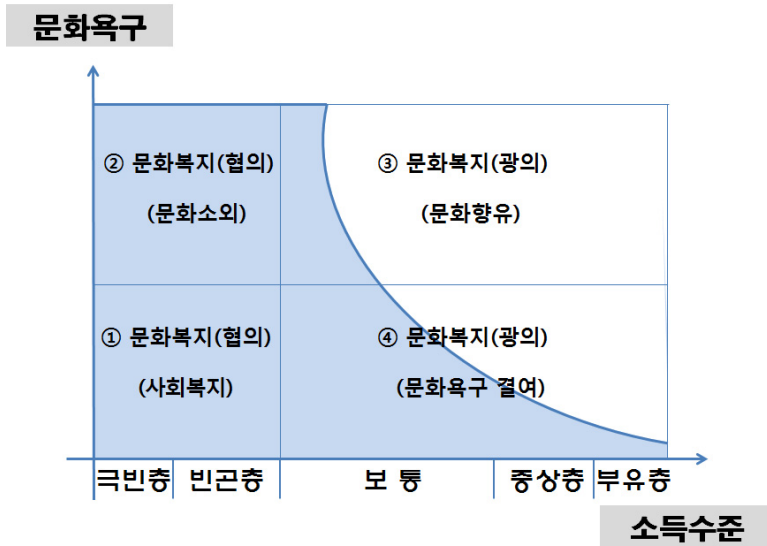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1. 문화소외계층의 개념화와 규모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소외 계층의 분류의 개념을 사회적 소외와 문화적 소외를 통합하여 단계별 접근 방법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모든 국민이나에 대한 명제 중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집단을 구체화하여 우선순위를 매겨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결국 우리나라 전 국민 수(2011년 기준) 48,580,000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에 따른 해당 인구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가능한 중복되는 인구에 대한 제외 분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문화소외계층의 총량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는 수요층을 세분화하기에 앞서 크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을 소득 수준과 접목시켜 크게 4가지 형태의 유형분류를 시도해보면 [그림 5-1]과 같다.
- [그림5-1]에서는 ①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도 낮고 소득 수준도 낮은 계층(기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②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은 높고 소득 수준은 낮은 계층(1차적인 문화소외계층) ③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은 계층(자발적 문화 향유 계층), ④ 문화에 대한 욕구 수준은 낮고 소득 수준은 높은 계층(문화 욕구 결여 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특히 ①과 ②는 협의의 문화복지 대상으로, ③과 ④는 광의의 문화복지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광의의 문화복지 대상은 자발적으로 문화 향유가 가능하거나, 문화 욕구가 생기면 즉시 문화 향유가 가능한 계층으로 간주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아래 그림과 같이 ①과 ②영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그 밖에 ③과 ④영역을 부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그림 5-1] 문화욕구와 소득수준을 반영한 문화소외계층 분류



-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욕구와 소득수준으로 문화소외계층을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접근방법 및 전략을 논하기 위해 앞서 3장에서 제시하였던 빈곤의 개념과 소득에 따른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수준에서 출발한 문화소외계층의 범주 및 인원수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단계에서 제시하는 문화소외계층은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득 수준과 개별화 된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산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지역적인 소외나 집단의 특성을 지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고 지역적 접근의 표면적인 문제는 없으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계층을 산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화복지 사업의 규모와 서비스 방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1단계 문화소외계층의 범주 및 대상수〉

개별화된 서비스가 주로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1)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생계, 주거, 교육 및 장애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표 5-1〉 2011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표 5-2〉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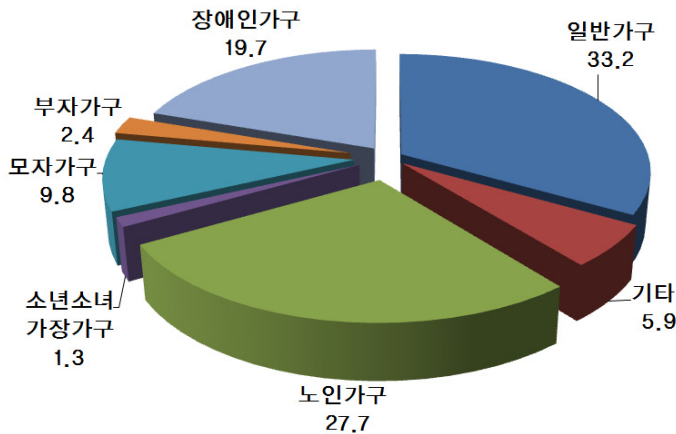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14,256	149,198	108,586	73,749	65,821	48,338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8,851	209,175	66,503	57,408	72,989	110,894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6,210	122,450	104,797	24,595	1,553,820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2011)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그림 5-2]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분포

(단위 : %)



2)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주소지별 과세표준 규모 1,200만원~3,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인원을 파악해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차상위계층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55,427	39,946	25,279	33,966	13,139	14,899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1,115	145,995	12,979	13,512	17,680	13,413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155	20,654	27,350	5,359	560,598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통계자료(2011), 과세표준 규모 주소지별 연소득 1200만~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자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인원 현황

- 이상의 (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2) 차상위 계층은 기본적으로 중복 인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1호)에서는 15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는 일정한 장애율 이상일 때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을 등록 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 분야 뿐 아니라, 문화복지에서도 1차적인 소외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의 <표 5-4>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지역별 등록 장애인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4>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14,522	172,765	117,141	131,815	68,518	71,164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49,013	500,704	101,067	94,654	130,646	134,235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47,918	170,396	180,880	31,874	2,517,312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2011)

- 여기서 등록 장애인 중 (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중복 비율은 68%, (2) 차상위 계층과의 중복인원 21.3%이고 등록장애인 5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의 가족원으로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나타났다.(자료 :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4) 독거 노인

-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며,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손자나 자녀, 손자녀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1인 노인가구의 노인을 말한다.
- 정확하게 통계적인 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통계청의 2010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 독거노인은 총 102만 1008명으로 집계됐으며,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이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등재된 65세 이상 노인이 95만 5612명,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있지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8만 601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 5-5〉 노인가구¹⁾ 추이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	노인가구1)	(구성비)	독거노인가구2)	(구성비)
2000	14,507,010	1,733,525	11.9	543,522	3.7
2010	17,152,277	2,982,240	17.4	1,021,008	6.0
2020	19,011,815	4,231,578	22.3	1,512,082	8.0
2030	19,871,144	6,410,665	32.3	2,338,354	11.8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주 : 1) 가구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가구의 연령이 65세 이상인면서 혼자 사는 가구

- 특히 독거노인 중 22.9%는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에 의존한다는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2) 차상위 계층과의 중복인원은 독거 노인 중 22.9%를 산출했다.

5) 노숙인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후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노숙인 대신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박성배, 1999 ; 육성철, 1999 ; 최우립, 2000). 198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의하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 능력이 결여된 정신 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자들’을 말한다(보건사회부, 1987).
- 특히,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노숙인들은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대부분 실직 및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자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랑인들과는 구별된다(김미숙, 1998 ; 서울시, 1998 ; 송경용, 1998). 한국도시연구소(1999)에서는 노숙인을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거주자 또는 안정된 주거가 확보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주로 주거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 이와 같이, 노숙인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노숙인은 좁은 의미로는 ‘잠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며, 넓은 의미로는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실제로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나 차안, 버려진 건물, 임시보호시설,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임시로 얹혀사는 사람들’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Johnson, 1995 ; 김수현, 1998).
- 결국 노숙인들은 사회복지 계층인 동시에 문화소외계층의 범주에서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노숙인에 대한 통계는 거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로 일정기간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한국도시생활연구소 등에서 노숙인들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의로 파악한 자료를 노숙인 통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 <표 5-6>과 같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표 5-6〉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109	141	146	25
강원	충남	계	
2	27	1,450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2011), 전국 홈리스 실태 조사 보고

- 그러나 노숙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있어 (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2) 차상위 계층과의 중복인원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6)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혼혈이’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거나 천시되어 온 특수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현재는 다문화가정으로 부르는 것에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 왔다(정지영, 2008).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범주가 포함될 수 있다(오연경, 2008).
 - 첫째,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하여 만든 가정을 말한다.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 다문화가정의 대표적 형태임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들 외에도 다문화 가정이 존재한다.
 - 둘째, 이주노동자 가족이다. 국내로 이주해 온 이주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자녀를 동반 입국시키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공식, 비공식적 부부로 맺어진 이주노동자들이 출산을 하며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지만 엄연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 셋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다.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거나 연구하는 학자들은 탈북이주민 역시 낯선 곳으로 이주해 온 일반적 이주민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문화충격’과 ‘문화적 갈등’을 고려할 때,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이들 다문화 가족원과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역별 통계는 <표 5-7>과 같다. 다만 북한이탈 주민은 지역별 통계 자료가 없어 전체 인원으로만 파악하였다.

〈표 5-7〉 다문화가정 현황

(단위 : 가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15,043	14,550	9,759	19,388	5,353	6,839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7,023	118,455	6,675	10,010	16,091	8,834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366	14,960	22,044	2,587	386,977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복 인원 산출 근거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외인 주민 현황 조사에 따른 '한국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비율 4.9%인 142,248명 중 7,024명이 수급자'와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보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보사연)에 따른 '다문화가정(1990년 이후 혼인가정) 중 등록장애인은 11만 5305명'의 자료와 다문화가정 중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 21.3%, 100~200만원 미만 : 38.4%, 200~300만원 미만 : 18.7%'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했다.

7) 한부모가정

- 한부모는 배우자와의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이르는 용어로 현대사회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대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아이없는 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하나이기는 하나, 생계와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가 돌봐야 하는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 또한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심리적인 갈등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소외계층에서도 1단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한부모 가정에 대한 통계 자료는 다음의 <표 5-8>와 같다.

<표 5-8> 한부모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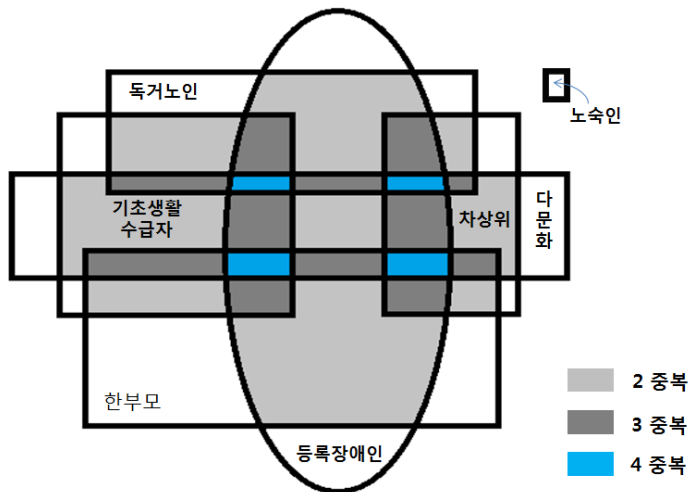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867,798	337,604	232,637	248,625	142,568	132,083	78,393	859,378	110,083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09,662	122,094	138,837	112,693	167,484	225,542	45,832	3,931,313	

자료 : KOSIS (2010), 총 인구전수 조사 - 2세대 부+미혼자녀(모+미혼자녀)명수

- 한부모 가족 중에서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평가자료('10년, 12월 말 행복e음 통계자료)에 의거, 수급자 중 12.2%, 차상위 중 388,179명을 중복 인원으 로 간주해 산출했다.
- 위의 항목별 계층인원을 종합적으로 합산한 인원은 10,478,402명이며, 이들 중 각 계층별 중복 근거에 의한 중복 인원수 1,522,706명을 차감해서 문화소외계층의 1단계 대상 규모를 추정해 보면 총 8,966,715명으로 다음의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1단계 대상별 종합 구성도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2단계 문화소외계층 범주와 대상수〉

지역이나 시설, 기관의 동일 대상이 밀집되어 집단 서비스가 가능하며, 절대적 빈곤 계층이 일부 포함 된 상대적 빈곤 계층

1)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 문화소외계층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나 입소자는 사회복지 소외 계층이면서도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보다는 집단 서비스 형태의 실천이 가능한 영역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 중 사회복지관과 외부 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정신 요양 시설을 제외하고 생활시설 입소자와 이용시설 이용자 현황을 파악 했다.

〈표 5-9〉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부랑안노숙인 시설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랑인시설 •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 •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	복합노인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 이들 시설 및 기관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 따른 규모를 파악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5-10>과 같다.

〈표 5-1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구분	분류	입소인원(명)	시설수
1	아동복지생활시설	17,119	280
2	노인복지생활시설	108,129	4,150
3	장애인생활시설	24,395	452
4	부랑인, 노숙인생활시설	8,958	37
5	정신질환자요양시설	11,613	59
6	결핵 및 한센인	458	5
합계		170,672	4,983
총 인구대비%		0.351%	

자료 : 보건복지 통계연보(2011)

〈표 5-11〉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26,022	75,416	70,467	73,177	60,835	49,094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939	42,056	49,967	54,367	66,698	65,671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9,607	79,430	104,468	32,133	1,459,862	

자료 :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87만9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이고, 수급자를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 1,458,198명(94.1%), 시설수급자 91,662명(5.9%)로 나타나 이를 중복 인원으로 간주하여 추정 인원을 산출했다.

〈표 5-12〉 수급자수와 구성비율(2010년)

(단위: 명, %)

구 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1,549,820	1,458,198	91,622	878,799가구
구성비	100	94.1	5.9	

2) 노인 여가 시설(경로당) 이용자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경로당이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설 중 하나이며 이용 노인 수가 가장 많은 여가복지시설이다.
- 전국의 경로당 시설수는 60,700개소에 달하며, 이용 인원은 각 시설별로 10명씩으로 보아 경로당 이용인원을 전국 607,000명으로 산출했다.

3) 도서산간지역(지역적 소외계층)

-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국에서 분류하는 도서산간지역을 기준으로 소외지역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분류된 지역 중 총 거주인구 4,000명 미만 지역 주민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도서산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수는 총 780곳이며, 강원도(207곳), 전라남도(188곳), 경상북도(111곳)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 중 인구 4,000명 미만인 곳은 총 285곳으로 강원도(83곳), 전라남도(58곳), 경상북도(53곳)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다음의 〈표 5-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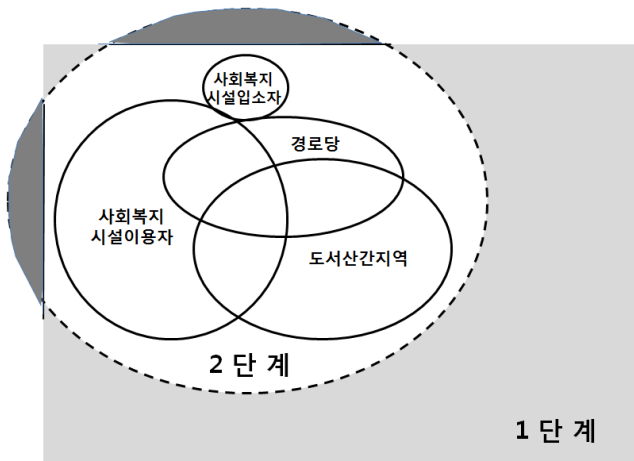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표 5-13〉 소외지역 현황

지역명	도서산간 지역수	거주인구 (명)	총 인구 대비%	인구4,000명 미만지역수	거주인구 (명)	총 인구 대비%
강원도	207	433,078	3.398%	83	287,719	1.518%
경기도	75	465,353		8	24,336	
경상남도	54	124,758		30	66,524	
경상북도	111	198,964		53	109,816	
광주광역시	1	-		0	0	
대전광역시	1	-		0	0	
부산광역시	5	-		0	0	
울산광역시	2	8,928		0	0	
인천광역시	44	92,213		13	25,446	
전라남도	188	340,044		58	135,500	
전라북도	23	1,004		15	22,846	
제주도	7	61,344		2	4,110	
충청남도	35	135,425		15	26,092	
충청북도	27	75,923		16	32,858	
총계	780	1,937,034		285	735,247	

□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경로당 이용인원, 도서산간 지역 주민 등의 대상과 1단계의 교집합 영역은 1,703,328명으로 1+2단계의 총 대상은 10,233,250명이다.

[그림 5-4] 2단계 대상 종합구성도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3단계 문화소외계층 범주와 대상수〉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되거나 문화와의 접근성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집단으로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동시 서비스가 가능한 계층

1) 교정 시설

-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 교정시설의 종류로는 크게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 있으며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문화소외계층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표 5-14〉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386	3,319	3,162	1,590	1,926	2,839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501	10,240	2,089	1,914	2,086	2,164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60	6,157	2,390	567	45,681	

자료 : 법무부(2010)

2) 종합병원

- 질병이 있는 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 머무는 것으로 사회나 가정과 일정기간 격리되어 생활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 할 때 문화소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외계층으로 포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하여 병상 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15>와 같다.

<표 5-15> 종합병원 입원 환자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33,072	12,776	6,524	4,270	6,593	4,984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2,204	20,835	5,106	3,712	4,122	5,313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282	6,917	8,222	2,029	132,961	

자료 : 보건복지부(2011), 보건복지 통계연보 제57호 입원진료 병상 수 - 의뢰기관

3) 군인과 1인 사업자

-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정기간 군복무에 임하게 되어 사회와 격리된다. 이 기간동안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나 관심이 멀어지기 쉬우므로 문화소외계층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한 통계자료는 국가 기밀로 되어 있어 공개되지 않으므로 지역별, 소재지별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전체 규모를 60만명으로 추산하여 대상 규모로 정한다.
- 또한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OECD 국가의 평균인 15%의 2배에 달하는 31.3%이며, 특히 1인 사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간주 할 수 있어, 전국의 자영업자 중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1인 사업자로 정의 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규모 자료는 확보하지 못해 전국의 4,443명을 대상으로 파악했다.

4) 청소년(중·고등학교 청소년)

- 문화소외계층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제도에 진입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특히 생애 주기에서도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컬을 만큼 정서적인 감수성 함양이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문화의 효과 중 정서를 순화시키고, 안정적인 감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청소년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문화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은 집단화 시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그 결과 청소년의 문화소외계층 규모는 다음 <표 5-16>과 같다.

〈표 5-16〉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83,851	253,812	210,683	217,643	136,810	127,923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01,877	935,334	113,841	122,264	155,224	150,192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44,187	190,601	261,703	48,425	3,854,370	

자료 : 부산교육청 홈페이지(2011),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 현황

-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생애주기별 현황표에서 본 연구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지칭하는 연령대의 수급자 비율은 20.6%로 이를 중복 인원으로 파악해 산출했다.

〈표 5-17〉 생애주기별¹⁾ 일반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수급자 수	1,458,198	27,106	56,051	301,001	172,868	509,958	391,214
수급자 비율	100	1.9	3.8	20.6	11.9	35.0	26.8
총인구수	50,515,666	2,299,695	2,457,829	6,826,875	15,237,505	18,187,410	5,506,352
총인구수 ²⁾ 대비 수급자비율	2.9	1.2	2.3	4.4	1.1	2.8	7.1

주: 1) 생애주기는 영유아기(0~4세), 학령기(5~9세), 청소년기(10~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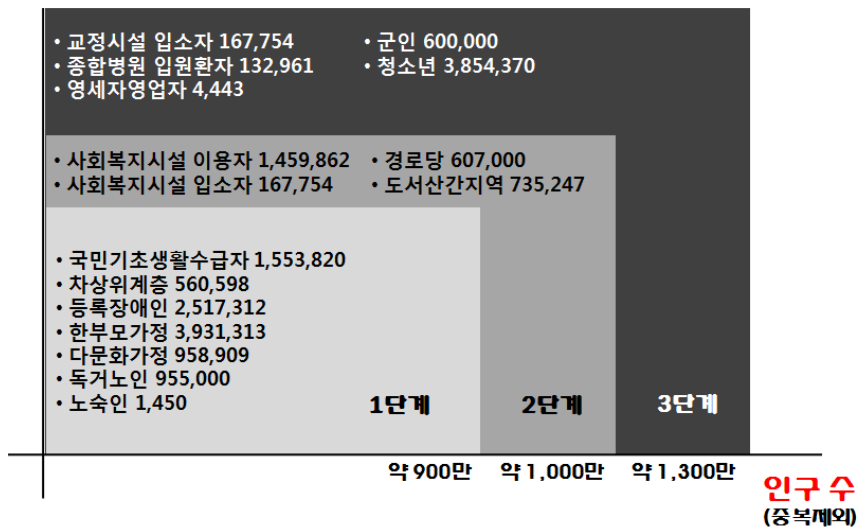
2) 통계청, 2010 주민등록인구(50,515,666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 이를 종합해 3단계 문화소외계층인 교정시설 입소자, 종합병원 입원환자, 군인, 영세 자영업자, 청소년 등의 총 인원은 4,637,455명이고, 앞서 제시한 1+2단계와의 중복 인원은 973,864명으로 결국 3단계에서 추가되는 인원은 9,259,386명이다.

[그림 5-5] 3단계 대상 종합구성도



- 마지막으로 각 계층별 인원을 총체적으로 합산하고, 각 계층별·단계별 중복 인원을 제외하여 1,2,3 단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문화소외계층의 규모는 약 13,896,841명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8>과 같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표 5-18〉 1, 2, 3 단계별 대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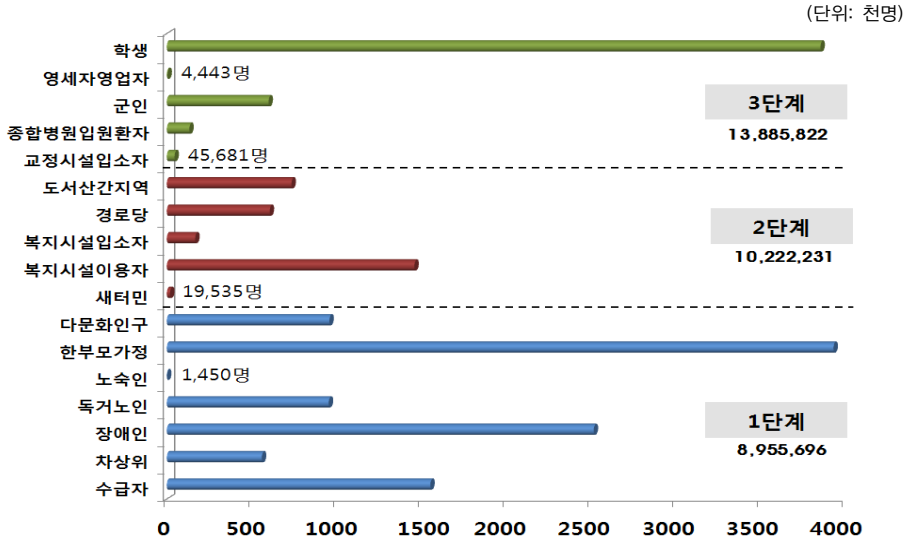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등록 장애인	독거 노인	노숙인	한부모 가정세대	다문화 가정	탈북자	시외복지시 설비유자	시외복지시 생민소자	경로당	도시간 지역	교정시설 입소자	중합병원 입원환자	군인	1인 사업자	청소년
서울특별시	24,256	155,427	414,522		1,109	867,798	254,288		228,022	22,155		0	2,366	33,072			683,861
부산광역시	149,198	39,946	172,785		141	337,604	36,921		75,416	8,922		0	3,319	12,776			253,812
대구광역시	108,586	25,279	117,141		146	232,637	24,410		70,467	7,549		0	3,162	6,524			210,683
인천광역시	73,749	33,966	131,815		25	248,625	49,351		73,177	8,429		25,446	1,590	4,270			217,643
광주광역시	66,821	13,139	88,518			142,568	14,538		60,835	4,471		0	1,926	6,593			136,810
대전광역시	48,338	14,899	71,164			132,083	17,615		49,094	4,323		0	2,830	4,984			127,923
울산광역시	18,851	11,115	49,013			78,368	16,888		30,876	1,939		0	501	2,204			101,877
경기도	209,175	145,985	500,704	955,000		869,378	271,007	19,535	351,634	42,066	607,000	24,336	10,240	20,835	600,000	4,443	995,334
강원도	66,503	12,979	101,067		2	110,083	20,139		49,967	7,406		287,719	2,089	5,106			113,841
충청북도	57,408	13,512	94,654			109,662	26,794		54,367	8,013		32,868	1,914	3,712			122,264
충청남도	72,989	17,680	130,646		27	122,094	43,301		66,698	8,375		26,092	2,066	4,122			155,224
전라북도	110,884	13,143	134,235			138,837	27,370		65,671	9,154		22,846	2,164	5,313			150,192
전라남도	106,210	10,155	147,918			112,688	30,811		69,607	8,966		136,500	2,360	6,282			144,187
경상북도	122,450	20,664	170,396			167,484	40,900		79,430	12,236		103,816	6,157	6,917			190,601
경상남도	104,797	27,350	180,880			225,542	57,286		104,488	10,538		66,524	2,390	8,222			261,703
제주도	24,595	5,359	31,874			45,832	7,175		32,133	3,232		4,110	567	2,029			48,425
계	1,553,820	560,598	2,517,312	955,000	1,450	3,931,313	939,374	19,535	1,459,862	167,754	607,000	735,247	45,681	132,961	600,000	4,443	3,864,370
단계별 계	10,478,402																
중복	1,522,706																
총 합	8,966,715																
중복	2,969,863																
총 합	1,703,328																
총 합	13,896,841																

자료 : 201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종합적 접근〉

[그림 5-6] 소외계층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및 국가통계포털 사이트(www.kosis.kr) - 2010년 기준

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별 대상수 확대 방안

- 기존의 문화복지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모두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명확하게 지원대상이 구별되어 있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사랑티켓 사업을 중심으로 그간의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실적과 실제 대상수를 비교하여 확대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소외계층 문화순회

-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중점 수혜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단지, 다문화가정, 농산어촌, 교정시설, 군부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산업단지, 특수계층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앞에서 제시한 단계별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는 1,2,3 단계의 대상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지원 대상은 다음 <표 5-19>와 같다.

〈표 5-19〉 사업성과(계량실적 - 2011년)

성과지표	목표	현재실적	실적율(%)
수혜인원(명)	499,000	464,031	93.6
활동수준(공연횟수)	1,900	1,907	100.4
외부재원유치(백만원)	10	2	20.0
언론보도 건수(건)	648	76	11.7

- 위의 표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문화순회사업의 지난해 사업 실적의 지원 대상은 464,031명이다. 여기서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전체 대상자 및 추가 가능성을 반영한 추진 가능 대상은 기존 수혜 대상의 10배에 달하는 총 3,951,351명으로 이들에 대한 계층별 대상 인원은 다음 <표 5-20>과 같다.

〈표 5-20〉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대상 추정

(단위: 명)

대상	인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459,862	36.93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67,754	4.24
다문화가정	939,374	23.76
도서산간지역(농산어촌)	735,237	18.6
교정시설	45,681	1.16
군부대	600,000	15.18
영세 자영업자	4,443	0.11
계	3,952,351	100.0

- 특히 계층별로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과 대규모 공단지역 노동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도 본 사업의 확대 대상자로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2) 문화바우처

-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 이 사업은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발급하여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세대주와 청소년을 포함한 최대 7매, 35만원 까지 지원)

〈표 5-21〉 2011년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계층별 관람 현황

지역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	계
서울	17,592	3,034	1,588	5,565	3,936	31,715
부산	11,969	1,272	1,836	3,068	2,351	20,496
대구	7,114	3,918	2,369	1,183	1,262	15,846
인천	9,540	3,176	2,307	1,206	2,958	19,185
광주	3,184	1,970	829	487	690	7,160
대전	4,257	1,598	831	1,098	614	8,398
울산	1,841	364	469	855	633	4,162
경기	4,859	1,931	1,006	1,319	1,199	10,314
강원	2,155	68	963	104	460	3,750
충북	589	872	570	909	459	3,399
충남	1,557	1,937	311	681	591	5,077
전북	4,413	962	168	782	882	7,207
전남	2,265	422	777	385	517	4,366
경북	2,965	4,699	498	83	2,089	10,334
제주	3,720	1,297	707	1,025	1,922	8,671
계	78,020	27,520	15,229	18,750	20,581	160,080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중 대상층이 가장 명확하고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 계층에 대한 대상 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5-22〉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대 수

(단위: 명)

대상		인원
기초생활수급자		1,553,820
차상위계층	자활	24,668
	장애인	150,022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280,394
	한부모가정	388,179
	계	843,263
		626,893 (중복제거)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가구	기초·차상위 탈락자 중	204,296
	행복e음 자격보유자 중	868,753
	계	1,073,049
시설입소자	노인요양시설	117,131
	아동양육시설	17,119
	장애인 생활시설	24,395
	계	158,645
		66,970 (중복제거)
계		3,628,777
		3,320,732 (중복제거)

1) 차상위계층 및 우선돌봄 차상위 : 2011년 12월 말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2) 기초생활 수급자 및 시설입소자 : 2011 보건복지 통계연보

- 이에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수는 3,320,73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히,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가구는 최근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및 복지소외계층으로서 기존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자 상위의 빈곤층(최정생계비의 120% 이하)으로 정의⁴⁾되고 있으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장에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한 상태이며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가 등장하였다. 차상위계층은 170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차상위 자격에 의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계층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6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3만명의 차상위 대상 외에 약 100만명에 달하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5-2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현황

구분	발굴 기준	발굴 현황
2011년	기초수급중지자 중 부양의무자, 사적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204,296명
	행복e음, 공공기관 보유자료(건보료 소액납부자, 단전단가스 등), 지자체 기 보유자료(저소득 노인, 연탄난방세대 등) 활용	868,753명
2012년 이후	차상위 자격확인 제도 마련 - 법적행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부처 복지혜택간 중복 방지를 위해 연계 및 조정	-

자료 : 2011년 12월 말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표 5-24〉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지원연계 서비스

부 처	사업명	부 처	사업명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양곡지원 노인 암검진 및 개인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푸드뱅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고용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성공패키지
문화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바우처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행정 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방송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방송전환

4)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한국가스 안전공사	•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 난방연료긴급지원 • 전기요금긴급지원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문화재청	• 공능무료입장	미소금융 재단	• 미소금융사업
한국장학 재단	• 취약계층 장학지원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 채무조정 분할상환

자료 : 2011년 12월 말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따라서 문화바우처 사업 역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외에 정책 및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구 단위로 파악이 되는 관계 상 차상위 가구에 속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능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상위 가구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사랑티켓

- 사랑티켓은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공연·전시 관람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수 여건과 문화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중점 수혜대상을 아동·청소년(24세 이하)과 노인(65세 이상)에 두고 이들에 대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5-25〉 사랑티켓 지원 방식

구분	1인당 지원금액	지원횟수	비고
사랑티켓 회원(개인)	공연 - 7천원	연 10회	-
사랑티켓 회원(단체)	전시 - 5천원	연 1회	10명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 사랑티켓 사업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화와 집단 서비스가 강한 사업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사랑티켓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5-26>과 같다.

<표 5-26> 사랑티켓 사업성과(2011년)

성과지표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수혜자 만족도(점)	83.1	-	-
수혜인원(명)	565,000	467,938	82.8
복권기금 인지도(%)	50.2	-	-
활동수준(참가작품 수)	5,772	6,268	108.6

-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해 사랑티켓 사업의 수혜자는 467,938명이다. 여기서 본 사업의 중점 대상인 아동·청소년과 노인 계층의 전반적인 통계를 통해 사업의 확대 가능 대상수를 기능해보고자 하는데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24세 이하로 산정해 보면 아동·청소년 인구수만 보더라도 기존의 목표 수혜인원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파악되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27>과 같다.

<표 5-27> 사랑티켓 아동·청소년 대상 수(24세 이하)

(단위: 명)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493,658	495,288	560,042	640,027	620,650	640,950	672,862	686,666	709,218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계
714,748	710,814	725,148	702,062	639,208	630,058	624,560	616,427	10,882,386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1) - 연령별 인구현황

- 또한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구분에 따르면 학령기를 5세부터 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기가 마땅히 아동·청소년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사랑티켓 사업의 대상은 5세부터 간주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경우 사랑티켓 사업의 대상은 5세부터 24세 이하가 되며 기존 대상에 5세~7세 1,358,468명을 포함해 총 대상은 12,240,854명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표 5-28〉 초기학령기 인구 수(5세~7세)

(단위: 명)

5세	6세	7세	계
448,774	435,724	473,970	1,358,46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1) - 연령별 인구현황

- 본 사업 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에 대한 통계에서도 다음〈표-29〉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 대상층 가구 수가 17,152,277에 달한다. 사실상 이는 앞의 대상 분류에서 1단계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2단계 대상 경로당 등의 노인 등을 모두 포괄하는 대상 수이며, 개별화된 서비스와 집단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층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29〉 노인가구¹⁾

(단위 : 가구, %)

	총가구	노인가구 ¹⁾	(구성비)	독거노인가구 ²⁾	(구성비)
2010	17,152,277	2,982,240	17.4	1,021,008	6.0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주 :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3.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별 분석

1) 문화바우처 사업의 홍보 강화

- 제3장의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홍보강화를 통하여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문화나눔 단위사업의 홍보현황을 미루어보아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와 사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중적적인 홍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홍보는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 상에서 매개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 특히 대상층의 상황과 홍보를 고려한 직접 면접 홍보강화, 입소문 홍보, 중간 매개자를 통한 홍보 등의 방법을 다양화해 이들 대상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조사 결과 중 자신이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중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사회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 사실상 지원 대상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통해, 어느 경로를 통해 지원 받는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업의 집단 서비스 활동에는 집중적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대상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복권기금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또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79.3%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문화나눔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 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5-30〉 문화나눔 단위사업별 홍보 현황(2011)

지역	신문 (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문화바우처	353	10	11	7	2	383
전통나눔	135	22	46	4	8	215
사랑티켓	-	-	-	-	-	109
지방문예회관	-	-	-	-	-	1,250
공공박물관 미술관 특별전시	-	-	-	-	-	228
생활문화공동체	84	4	-	-	5	93

자료 : 201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관계자 워크숍 -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2) 문화나눔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 요구

- 문화나눔사업 참여 경로에 대한 설문에서는 문화·복지 시설을 통한 참여가 57.3%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외지역 거주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나눔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문화복지 시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특히 소외지역 거주자 및 소외계층의 경우 복지시설과의 접촉이 일상화 되어 있어 친숙한 관계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복지시설 및 기관을 통한 문화나눔사업 홍보 및 안내는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앞에서 정리한 문화소외계층은 개인별·집단별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혹은 단체에 이미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통한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은 사업의 참여도 증진과 인지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표 5-31〉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 지원대상별 협력기관

사업유형	수혜대상	협력기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 복지센터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농·산·어촌순회사업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학교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교육과학기술부
임대주택 순회사업	주택관리공단·SH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택관리공단, SH공사
다문화대상 순회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여성가족부
교정시설 순회사업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무부
군부대 순회사업	육·해·공군 및 대대급 부대	국방부
기타 시설	순회사업 특수계층 및 시설지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나원 등

- 다음에서는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을 총괄하는 거점 기관인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별 현황을 제시하여, 문화소외계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각 기관별 파트너십이 불가능한 경우 이들 협회의 지역 거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표 5-32〉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구분	중앙 및 시도 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연락처
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02-2077-3908
서울	서울사회복지협의회 (02-771-3460)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02-869-9555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02-920-8817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02-3422-5862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02-2670-4196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02-734-0661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02-3273-2251
부산	부산사회복지협의회 (051-506-6633)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051-865-2186
대구	대구사회복지협의회	-	053-982-1881
인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883-1773)	남구사회복지협의회	032-873-0541
		동구사회복지협의회	032-761-0766
		부평구사회복지협의회	032-512-9200
		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	032-813-2791
		중구사회복지협의회	032-880-2400
광주	광주사회복지협의회 (062-351-2114)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062-951-6642
		남구사회복지협의회	062-671-4104
		동구사회복지협의회	062-233-0005
		북구사회복지협의회	062-511-6377
		서구사회복지협의회	062-365-4620
대전	대전사회복지협의회 (042-531-3711)	동구사회복지협의회	042-274-4700
		중구사회복지협의회	042-221-2579
		서구사회복지협의회	042-545-9874
		유성구사회복지협의회	042-823-5590
		대덕구사회복지협의회	042-627-6800
울산	울산사회복지협의회	-	052-229-6624
경기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031-213-8551)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031-253-2310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031-775-5995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031-401-6472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031-922-5784
		의정부사회복지협의회	031-852-4540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031-796-4666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031-404-4347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031-653-5020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031-366-4023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031-675-7676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2-324-0166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031-996-0094
강원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033-251-3327)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3-262-5994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3-747-1347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	033-644-2744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	033-533-4451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033-553-3665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033-633-1363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33-574-7952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070-8869-8587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033-342-1104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033-373-0199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033-334-0117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033-562-2446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033-452-4567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033-442-1992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	033-481-5161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	033-461-2466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033-682-7602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033-672-8529
충북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043-234-0841)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043-267-0855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043-834-1377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043-873-2882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043-422-1700
충남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042-825-0875)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	041-935-8502
		연기군사회복지협의회	041-862-0404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041-736-6730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041-858-9927
		당진군사회복지협의회	041-357-3000
		부여군사회복지협의회	041-833-5502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041-554-0223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041-943-6075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	041-675-1901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	041-632-2008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	041-952-1414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041-541-7712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041-335-4288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041-667-4801
전북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063-224-1861)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063-241-8931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063-442-6663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063-833-2628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063-533-4119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063-547-1072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063-631-0133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063-243-4248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063-433-1410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063-324-1072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063-643-0263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063-653-0308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063-582-3233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063-351-9797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	063-564-2150
전남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061-285-8945)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	061-322-0088
		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	061-353-5690
		곡성군사회복지협의회	061-363-2128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061-330-8610
		신안군사회복지협의회	061-278-6825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061-454-0512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061-832-2500
경북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053-814-8550)	안동시사회복지협의회	054-858-6439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	054-241-5888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	054-534-7280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054-453-8550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054-742-9046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경남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055-237-0880)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055-942-8480
		마산시사회복지협의회	0707553-2080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055-757-5645
		하동군사회복지협의회	055-884-7070
제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	064-702-3783

3) 장애인 대상 사업의 추가적 지원 방안 강구

- 장애인장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이 문화나눔사업 참여할 경우 교통편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호자가 필요하며 활동보조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문화나눔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하므로 교통편의성 증진과 지역 문화복지시설을 통한 접근성 촉진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는 다음의 장애인 복지법 제 30조를 감안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경제적 부담의 경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기존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문화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장애인 지원 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농구대회, 마라톤, 야구단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장애 스포츠단, 협주단, 합창단 활동과 공연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연, 장애인 축제, 나들이 프로그램과 장애아동·비장애아동 통합놀이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의 <표 5-33>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한 장애인 여가 문화 지원 사업의 사례이다.

<표 5-33> 예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1 장애인 여가문화 지원사업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
사회복지기관시설 지원사업	충주성심학교	50,000,000
" 풋살경기에 도전해요 " 지원사업	해피존주간보호시설	4,800,000
광명다소니예술단 지원사업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50,000,000
지역사회소통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40,000,000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관람 지원사업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1 건	31,699,200
저소득 주민 돕기사업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27,820,000
중증(지적)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강좌 " 가슴 활짝 대문 밖으로 "	참아름다워라ilter	17,541,000
실외 놀이시설 교체공사 지원사업	애망장애영아원	16,000,000
재가장애인 가족사진 지원을 위한 이동 스튜디오 운영사업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15,000,000
재가장애인 여가지원 및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바 나(You Plus)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14,032,000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

-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과 보조장비(휠체어, 지팡이 등)를 지원하고, 장애인 교육과 취업을 위한 정보화기기 및 비품, 학습보조기구, 점자도서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캠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서도 이들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확보한다면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표 5-34〉 예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1 장애인 정보이동편의 지원사업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
장애인 복지택시 지원사업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주시지회 외 2 건	91,885,5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운송용 차량 지원사업	희망세상보호작업장 외 12 건	296,357,680
재가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승합차량지원	경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	20,000,000
지적장애인 이동성강화를 위한 차량 지원사업	포항지적장애인협회	20,000,000
시각장애인정보접근성 지원사업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60,000,000
지역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및 보조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200,000,000
장애인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리프트버스 구입	대구광역시립희망원	100,000,000
중증장애인 가족탈의실 및 샤워실 확충공사	대구광역시달구벌 종합스포츠펀터	12,000,000
요나의 집 화장실 벽체 및 문 교체공사	요나의집	9,170,000
난청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필기통역서비스 " 들리는 눈 그 창을 열다 "	대구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8,000,000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

- 또한 지자체별로 조직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해 문화나눔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노력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복지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앞장에서 단계별로 살펴 본 문화소외계층은 그 추진 방법에 따라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어떤 대상, 어떤 사업 내용과 일정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문화나눔사업의 요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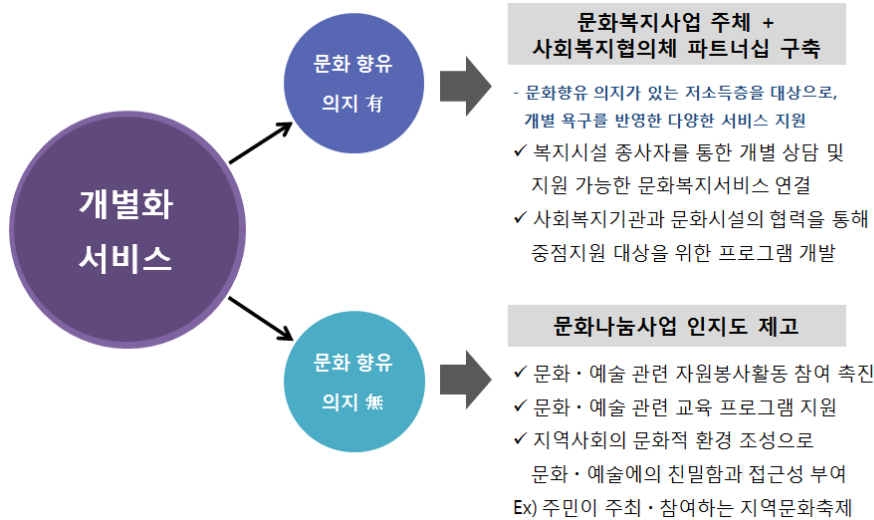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를 개선하여 구조화 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추진에 있어서는 앞서 설정한 단계별 문화소외계층에 따라 추진 체계가 달리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각 단계별로 대상층에 대한 특징을 언급했듯이, 개인별 서비스인지 집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추진 방법,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대상에 대한 사업 방법 등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문화소외계층에서 개인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은 기존의 문화바우처나 사랑티켓 등 개별화 된 서비스나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그러나 제4장의 조사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수혜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대상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는 1단계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 지원 체계안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회복지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 전달 체계를 사회복지 협의체, 즉 지역별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 지회 및 사회복지 시설 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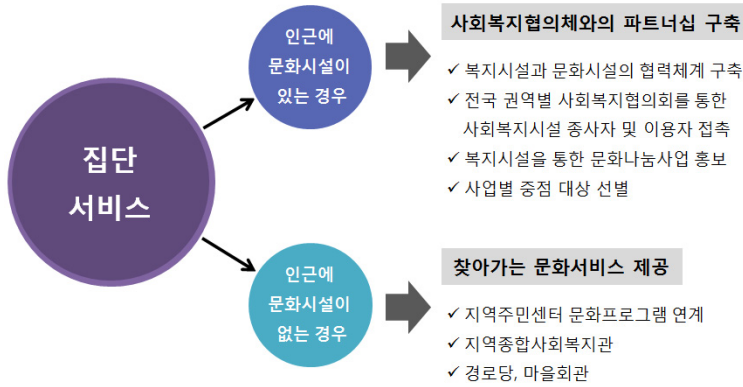
[그림 5-7] 1단계 대상 추진체계



- 다음으로 2단계 대상은 집단별 서비스가 가능한 집단으로서 지역적인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 문화나눔사업단 주체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효과적인 대상이다.
- 지역사회내 문화시설이 있는 경우 그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원연결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 2번 제언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 또한 지역사회내에 문화시설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가 거나, 문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앞서 제시한 4,000명 이하 거주지역 즉, 도서 산간벽지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문화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하며 기존 지역과의 중복을 피하고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소외계층을 집중 선별하여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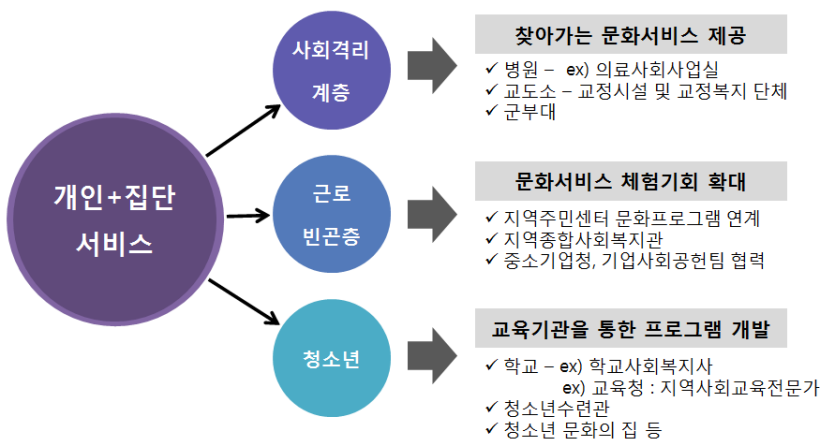
제5장 문화나눔사업 추진 방안

[그림 5-8] 2단계 대상 추진체계



- 마지막으로 3단계 대상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교정시설 수감자와 종합 병원 입원 환자, 군인이므로 이들 대상에게는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만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근로 빈곤층으로 구분되어 지는 영세 자영업자 계층에게는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청소년 계층에게는 학교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입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5-9] 3단계 대상 추진체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문길 외(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세훈 외(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김윤재·허은희(2010), 최신사회문제론, 유명출판사.
5. 문수열 외(2010), 사회복지의 이해, 창지사.
6.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7. _____(2011), 문화바우처 사업 법제화 방안 연구.
8.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
9.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10. _____(2010), 2010 보육시설-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11. _____(2011), 민생안정과 자체평가 자료집.
12. _____(2011), 2011 아동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3. _____(2011),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14. _____(2011), 2011년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5. _____(2011), 2011년 부랑인-부랑인복지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16. 민생안정과
17. 보건복지부·여성부·법무부·보사연(2009),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18. 보건사회연구원(2011), 전국 홈리스 실태 조사 보고서.
19. 서해석 외(2011),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20. 성기현(2007),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우주희(2009), 서민문화정책 추진 전략 - 복권기금을 활용한 서민문화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 이원영(2010),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CULTURAT」 제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장동일 외(2010), 사회문제론, 동문사.
24. 정갑영(2005), 문화복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5. _____(2007), 문화복지법제화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6. 정무성(2011), 문화복지 정책과 문화나눔, 2011 문화복지, 문화나눔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27. 최중혁 외(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 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청목출판사.
28. 최진우(2010), 외국의 문화관광정책 및 행정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9. 통계청(2010), 2010 고령자 통계.
30. _____(2010), 2010 인구총조사.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0),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고문헌

32. _____ (201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34.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35. 홍재웅(2010), 스웨덴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3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홈페이지 <http://www.nea.gov/index.html>
37.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tscouncil.org.uk>
38.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v.uk>
39.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
40. 복권기금 문화나눔 홈페이지 www.lotteryarts.or.kr

부록

부록1. 문화나눔사업 수요조사 결과표

부록2. 문화소외계층 추정 근거

부록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화관련 사업비

부록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상별 문화·예술 관련 배분 사업

부록5.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설문지

부록

부록1. 문화나눔사업 수요조사 결과표

일반적 사항 간 응답 현황 - 지역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성별				
남자	362	51.9	34.8	13.3
여자	679	49.3	40.8	9.9
소계	1,041	50.2	38.7	11.0
연령별				
12-19세	307	44.3	41.7	14.0
20-64세	579	47.2	42.3	10.5
65세이상	155	74.2	18.7	7.1
소계	1,041	50.3	38.6	11.0
장애유무별				
유	151	72.8	25.2	2.0
무	885	46.1	41.2	12.7
소계	1,036	50.0	38.9	11.1
학력별				
중졸이하	390	58.2	28.5	13.3
고졸	321	47.7	45.8	6.5
대졸	294	43.5	44.9	11.6
대학원졸	30	36.7	43.3	20.0
소계	1,035	50.1	38.9	10.9
소득별				
100만미만	391	62.9	29.4	7.7
100만-300만	479	41.8	43.6	14.6
300만 이상	144	46.5	44.4	9.0
소계	1,014	50.6	38.3	11.1

부록

일반적 사항 간 응답 현황 - 성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남자	여자
지역별			
대도시	523	35.9	64.1
중소도시	403	31.3	68.7
농어촌	115	41.7	58.3
소계	1,041	34.8	65.2
연령별			
12-19세	307	42.3	57.7
20-64세	578	35.5	64.5
65세이상	154	17.5	82.5
소계	1,039	34.8	65.2
장애유무별			
유	151	58.9	41.1
무	884	30.9	69.1
소계	1,035	35.0	65.0
학력별			
중졸이하	389	36.2	63.8
고졸	320	35.9	64.1
대졸	294	32.0	68.0
대학원졸	30	36.7	63.3
소계	1,033	34.9	65.1
소득별			
100만미만	389	38.3	61.7
100만-300만	479	30.5	69.5
300만 이상	144	41.7	58.3
소계	1,012	35.1	64.9

부록

일반적 사항 간 응답 현황 - 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12-19세	20-64세	65세이상
지역별				
대도시	524	26.0	52.1	21.9
중소도시	402	31.8	60.9	7.2
농어촌	115	37.4	53.0	9.6
소계	1,041	29.5	55.6	14.9
성별				
남자	362	35.9	56.6	7.5
여자	677	26.1	55.1	18.8
소계	1,039	29.5	55.6	14.8
장애유무별				
유	151	4.0	78.1	17.9
무	883	34.1	51.8	14.2
소계	1,034	29.7	55.6	14.7
학력별				
중졸이하	390	57.9	11.5	30.5
고졸	320	24.7	66.9	8.4
대졸	294	0.3	98.0	1.7
대학원졸	29	0.0	93.1	6.9
소계	1,033	29.6	55.6	14.8
소득별				
100만미만	389	14.9	50.4	34.7
100만-300만	479	38.6	58.5	2.9
300만 이상	144	43.8	54.9	1.4
소계	1,012	30.2	54.8	14.9

부록

일반적 사항 간 응답 현황 -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유	무
지역별			
대도시	518	21,2	78,8
중소도시	403	9,4	90,6
농어촌	115	2,6	97,4
소계	1,036	14,6	85,4
성별			
남자	362	24,6	75,4
여자	673	9,2	90,8
소계	1,035	14,6	85,4
연령별			
12-19세	307	2,0	98,0
20-64세	575	20,5	79,5
65세이상	152	17,8	82,2
소계	1,034	14,6	85,4
학력별			
중졸이하	387	8,5	91,5
고졸	317	27,4	72,6
대졸	294	8,8	91,2
대학원졸	30	3,3	96,7
소계	1,028	14,3	85,7
소득별			
100만미만	387	29,5	70,5
100만-300만	476	5,3	94,7
300만 이상	144	5,6	94,4
소계	1,007	14,6	85,4

부록

일반적 사항 간 응답 현황 - 학력별

(단위: %)

구분	케이스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지역별					
대도시	519	43.7	29.5	24.7	2.1
중소도시	403	27.5	36.5	32.8	3.2
농어촌	113	46.0	18.6	30.1	5.3
소계	1,035	37.7	31.0	28.4	2.9
성별					
남자	361	39.1	31.9	26.0	3.0
여자	672	36.9	30.5	29.8	2.8
소계	1,033	37.7	31.0	28.5	2.9
연령별					
12-19세	306	73.9	25.8	0.3	0.0
20-64세	574	7.8	37.3	50.2	4.7
65세이상	153	77.8	17.6	3.3	1.3
소계	1,033	37.8	31.0	28.5	2.8
장애유무별					
유	147	22.4	59.2	17.7	0.7
무	881	40.2	26.1	30.4	3.3
소계	1,028	37.6	30.8	28.6	2.9
소득별					
100만미만	387	46.8	40.3	12.4	0.5
100만-300만	477	31.2	26.2	38.8	3.8
300만 이상	143	37.8	18.9	37.1	6.3
소계	1,007	38.1	30.6	28.4	2.9

부록

일반적 사항 간 응답 현황 - 소득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100만미만	100만~300만	300만 이상
지역별				
대도시	513	48,0	39,0	13,1
중소도시	388	29,6	53,9	16,5
농어촌	113	26,5	61,9	11,5
소계	1,014	38,6	47,2	14,2
성별				
남자	355	42,0	41,1	16,9
여자	657	36,5	50,7	12,8
소계	1,012	38,4	47,3	14,2
연령별				
12-19세	306	19,0	60,5	20,6
20-64세	555	35,3	50,5	14,2
65세이상	151	89,4	9,3	1,3
소계	1,012	38,4	47,3	14,2
장애유무별				
유	147	77,6	17,0	5,4
무	860	31,7	52,4	15,8
소계	1,007	38,4	47,3	14,3
학력별				
중졸이하	384	47,1	38,8	14,1
고졸	308	50,6	40,6	8,8
대졸	286	16,8	64,7	18,5
대학원졸	29	6,9	62,1	31,0
소계	1,007	38,4	47,4	14,2

부록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단위: %)

구분	사례수(명)	관련기관을 통해서
지역별		
대도시	213	100.0
중소도시	122	100.0
농어촌	30	100.0
소계	365	100.0
성별		
남자	119	100.0
여자	245	100.0
소계	364	100.0
연령별		
12-19세	55	100.0
20-64세	208	100.0
65세이상	100	100.0
소계	363	100.0
장애유무별		
유	93	100.0
무	272	100.0
소계	365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54	100.0
고졸	114	100.0
대졸	87	100.0
대학원졸	8	100.0
소계	363	100.0
소득별		
100만미만	212	100.0
100만-300만	127	100.0
300만 이상	17	100.0
소계	356	100.0

부록

문화나눔사업 참여동기

(단위: %)

구분	사례수(명)	프로그램내용이 좋아서
지역별		
대도시	72	100.0
중소도시	52	100.0
농어촌	13	100.0
소계	137	100.0
성별		
남자	33	100.0
여자	104	100.0
소계	137	100.0
연령별		
12-19세	20	100.0
20-64세	91	100.0
65세이상	25	100.0
소계	136	100.0
장애유무별		
유	24	100.0
무	113	100.0
소계	137	100.0
학력별		
중졸이하	48	100.0
고졸	38	100.0
대졸	42	100.0
대학원졸	6	100.0
소계	134	100.0
소득별		
100만미만	63	100.0
100만-300만	59	100.0
300만 이상	14	100.0
소계	136	100.0

부록

문화바우처 개선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개인 지원	홍보 강화	금액 인상	분야 확대	매개 인력	기타
지역별							
대도시	413	26.6	50.1	24.2	25.9	14.0	8.7
중소도시	321	20.2	52.6	22.7	34.9	12.1	1.2
농어촌	93	23.7	47.3	19.4	43.0	7.5	0.0
소계	827	23.8	50.8	23.1	31.3	12.6	4.8
성별							
남자	289	27.0	51.6	29.1	30.1	10.0	2.8
여자	537	22.2	50.5	19.7	32.0	14.0	6.0
소계	826	23.8	50.8	23.0	31.4	12.6	4.8
연령별							
12-19세	241	28.6	44.8	22.8	34.9	4.6	2.1
20-64세	458	23.1	57.0	25.1	31.4	15.5	1.3
65세이상	126	17.5	40.5	15.1	24.6	17.5	23.0
소계	825	23.9	50.9	22.9	31.4	12.6	4.8
장애유무별							
유	137	30.7	46.0	43.8	32.8	13.9	3.6
무	688	22.5	51.9	18.8	31.1	12.4	5.1
소계	825	23.9	50.9	22.9	31.4	12.6	4.8
학력별							
중졸이하	302	25.5	44.0	18.5	26.5	7.9	10.6
고졸	279	27.6	45.9	29.0	34.1	14.0	1.4
대졸	217	18.0	66.8	21.2	33.2	17.5	0.9
대학원졸	22	13.6	59.1	31.8	40.9	13.6	4.5
소계	820	23.9	51.1	23.2	31.2	12.7	4.8
소득별							
100만미만	327	26.0	39.8	28.4	27.2	13.5	10.4
100만-300만	371	22.4	55.8	19.9	36.4	12.4	1.1
300만 이상	108	23.1	65.7	19.4	26.9	12.0	1.9
소계	806	23.9	50.6	23.3	31.4	12.8	5.0

부록

공연 관람 욕구 유무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지역별			
대도시	519	82.7	17.3
중소도시	400	90.3	9.8
농어촌	115	89.6	10.4
소계	1,034	86.4	13.6
성별			
남자	360	81.1	18.9
여자	673	89.2	10.8
소계	1,033	86.4	13.6
연령별			
12-19세	307	82.7	17.3
20-64세	576	89.6	10.4
65세이상	149	81.2	18.8
소계	1,032	86.3	13.7
장애유무별			
유	149	89.3	10.7
무	880	85.9	14.1
소계	1,029	86.4	13.6
학력별			
중졸이하	386	78.8	21.2
고졸	316	91.8	8.2
대졸	294	89.5	10.5
대학원졸	30	96.7	3.3
소계	1,026	86.4	13.6
소득별			
100만미만	383	83.0	17.0
100만-300만	478	88.5	11.5
300만 이상	144	88.9	11.1
소계	1,005	86.5	13.5

부록

가장 관람하고 싶은 공연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클래식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무용	영화	기타
지역별							
대도시	426	28.4	27.7	62.9	18.1	58.2	2.8
중소도시	358	35.5	20.9	78.8	11.5	47.5	2.8
농어촌	103	30.1	20.4	74.8	14.6	50.5	2.9
소계	887	31.5	24.1	70.7	15.0	53.0	2.8
성별							
남자	288	30.2	23.6	67.7	10.4	62.5	2.4
여자	597	32.0	24.5	72.0	17.3	48.4	3.0
소계	885	31.4	24.2	70.6	15.0	53.0	2.8
연령별							
12-19세	251	25.1	10.4	82.1	12.4	65.7	4.0
20-64세	513	38.6	22.0	75.0	11.3	48.1	2.1
65세이상	121	14.0	62.0	28.9	36.4	46.3	3.3
소계	885	31.4	24.2	70.7	15.0	52.9	2.8
장애유무별							
유	130	32.3	31.5	54.6	11.5	63.8	2.3
무	752	31.3	22.6	73.5	15.7	51.2	2.9
소계	882	31.4	23.9	70.7	15.1	53.1	2.8
학력별							
중졸이하	304	20.1	31.6	59.5	20.4	60.5	4.3
고졸	287	34.8	23.3	71.4	13.6	51.9	1.7
대졸	261	40.2	18.8	81.2	10.0	45.6	1.9
대학원졸	28	39.3	7.1	85.7	14.3	46.4	3.6
소계	880	31.5	24.3	70.7	14.9	52.8	2.7
소득별							
100만미만	316	27.5	37.0	53.2	19.3	55.1	3.5
100만-300만	422	29.6	15.4	82.0	12.8	55.2	2.6
300만 이상	126	44.4	20.6	76.2	11.1	44.4	1.6
소계	864	31.0	24.1	70.6	14.9	53.6	2.8

부록

공연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홍보 부족	방법 모름	수준 낮음	재미 없음	시간 부족	비용 과다	교통 불편	시설 열악	동반자 무	기타
지역별											
대도시	85	37.6	16.5	5.9	34.1	24.7	14.1	12.9	3.5	11.8	4.7
중소도시	36	16.7	8.3	11.1	41.7	47.2	13.9	8.3	8.3	8.3	5.6
농어촌	11	18.2	18.2	0.0	45.5	27.3	0.0	9.1	0.0	0.0	9.1
소계	132	30.3	14.4	6.8	37.1	31.1	12.9	11.4	4.5	9.8	5.3
성별											
남자	64	28.1	17.2	4.7	50.0	28.1	9.4	9.4	4.7	12.5	4.7
여자	68	32.4	11.8	8.8	25.0	33.8	16.2	13.2	4.4	7.4	5.9
소계	132	30.3	14.4	6.8	37.1	31.1	12.9	11.4	4.5	9.8	5.3
연령별											
12-19세	50	20.0	10.0	0.0	50.0	28.0	10.0	8.0	2.0	12.0	8.0
20-64세	57	22.8	17.5	14.0	28.1	47.4	17.5	8.8	5.3	7.0	5.3
65세이상	25	68.0	16.0	4.0	32.0	0.0	8.0	24.0	8.0	12.0	0.0
소계	132	30.3	14.4	6.8	37.1	31.1	12.9	11.4	4.5	9.8	5.3
장애유무별											
유	15	46.7	26.7	13.3	33.3	26.7	20.0	20.0	6.7	6.7	6.7
무	117	28.2	12.8	6.0	37.6	31.6	12.0	10.3	4.3	10.3	5.1
소계	132	30.3	14.4	6.8	37.1	31.1	12.9	11.4	4.5	9.8	5.3
학력별											
중졸이하	77	32.5	13.0	1.3	41.6	22.1	9.1	11.7	3.9	11.7	5.2
고졸	24	25.0	16.7	12.5	25.0	50.0	12.5	8.3	8.3	12.5	8.3
대졸	29	27.6	17.2	17.2	34.5	41.4	24.1	10.3	3.4	3.4	3.4
대학원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소계	131	29.8	14.5	6.9	37.4	31.3	13.0	10.7	4.6	9.9	5.3
소득별											
100만 미만	59	42.4	18.6	6.8	33.9	27.1	11.9	22.0	5.1	13.6	1.7
100만- 300만	54	18.5	11.1	9.3	37.0	37.0	18.5	1.9	5.6	7.4	5.6
300만 이상	14	28.6	7.1	0.0	42.9	35.7	0.0	7.1	0.0	7.1	7.1
소계	127	30.7	14.2	7.1	36.2	32.3	13.4	11.8	4.7	10.2	3.9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지역 내 시설확충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501	0.4	5.4	28.3	53.1	12.8
중소도시	391	2.3	2.8	28.9	46.8	19.2
농어촌	115	3.5	0.9	34.8	40.9	20.0
소계	1,007	1.5	3.9	29.3	49.3	16.1
성별						
남자	352	2.0	6.3	35.2	43.5	13.1
여자	653	1.2	2.6	26.2	52.5	17.5
소계	1,005	1.5	3.9	29.4	49.4	15.9
연령별						
12-19세	305	3.6	4.6	41.3	35.7	14.8
20-64세	559	0.7	4.1	24.0	53.3	17.9
65세이상	141	0.0	1.4	24.8	61.7	12.1
소계	1,005	1.5	3.9	29.4	49.2	16.1
장애유무별						
유	141	0.7	3.5	32.6	48.9	14.2
무	862	1.6	3.9	28.9	49.3	16.2
소계	1,003	1.5	3.9	29.4	49.3	16.0
학력별						
중졸이하	376	2.4	4.0	35.4	43.9	14.4
고졸	308	1.3	2.9	28.2	52.9	14.6
대졸	287	0.7	5.2	22.3	50.9	20.9
대학원졸	29	0.0	0.0	24.1	65.5	10.3
소계	1,000	1.5	3.9	29.1	49.3	16.2
소득별						
100만미만	368	1.4	3.3	28.5	51.1	15.8
100만-300만	471	1.9	4.0	28.7	47.3	18.0
300만 이상	139	0.7	4.3	32.4	50.4	12.2
소계	978	1.5	3.8	29.1	49.2	16.4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수준 높은 공연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8	0.6	4.7	24.2	54.5	16.0
중소도시	386	1.6	4.1	24.6	44.3	25.4
농어촌	114	1.8	2.6	36.8	41.2	17.5
소계	988	1.1	4.3	25.8	49.0	19.8
성별						
남자	352	2.6	6.3	27.8	48.3	15.1
여자	634	0.3	3.2	24.8	49.5	22.2
소계	986	1.1	4.3	25.9	49.1	19.7
연령별						
12-19세	305	3.0	7.2	33.8	36.7	19.3
20-64세	555	0.2	3.2	21.1	52.4	23.1
65세이상	126	0.8	1.6	27.0	63.5	7.1
소계	986	1.1	4.3	25.8	49.0	19.9
장애유무별						
유	140	0.0	3.6	32.1	51.4	12.9
무	843	1.3	4.4	24.8	48.6	20.9
소계	983	1.1	4.3	25.8	49.0	19.7
학력별						
중졸이하	358	2.8	5.9	31.0	44.1	16.2
고졸	309	0.3	4.5	28.2	49.8	17.2
대졸	284	0.0	2.5	16.9	54.2	26.4
대학원졸	30	0.0	0.0	16.7	53.3	30.0
소계	981	1.1	4.3	25.6	49.1	19.9
소득별						
100만미만	349	1.7	2.9	27.2	53.0	15.2
100만-300만	470	1.1	4.0	24.9	48.9	21.1
300만 이상	140	0.0	6.4	24.3	41.4	27.9
소계	959	1.1	4.0	25.7	49.3	19.9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재미있는 공연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96	0.4	1.6	14.9	59.9	23.2
중소도시	392	0.8	1.8	15.1	49.2	33.2
농어촌	114	0.9	0.0	17.5	46.5	35.1
소계	1,002	0.6	1.5	15.3	54.2	28.4
성별						
남자	351	1.7	2.0	16.5	53.3	26.5
여자	649	0.0	1.2	14.6	54.9	29.3
소계	1,000	0.6	1.5	15.3	54.3	28.3
연령별						
12-19세	305	1.6	2.0	22.0	42.3	32.1
20-64세	562	0.2	1.2	13.2	58.2	27.2
65세이상	133	0.0	1.5	8.3	64.7	25.6
소계	1,000	0.6	1.5	15.2	54.2	28.5
장애유무별						
유	141	0.0	1.4	17.7	54.6	26.2
무	857	0.7	1.5	14.9	54.1	28.7
소계	998	.6	1.5	15.3	54.2	28.4
학력별						
중졸이하	369	1.1	2.4	17.6	49.1	29.8
고졸	310	0.3	1.3	15.2	58.1	25.2
대졸	287	0.3	0.7	12.2	57.8	28.9
대학원졸	29	0.0	0.0	10.3	44.8	44.8
소계	995	0.6	1.5	15.1	54.3	28.5
소득별						
100만미만	362	1.1	1.4	14.4	57.2	26.0
100만-300만	471	0.4	0.8	15.7	53.5	29.5
300만 이상	140	0.0	2.1	15.0	49.3	33.6
소계	973	0.6	1.2	15.1	54.3	28.8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지방순회공연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3	2.5	8.1	33.7	41.4	14.3
중소도시	383	1.6	7.3	28.7	39.2	23.2
농어촌	112	3.6	3.6	34.8	36.6	21.4
소계	978	2.2	7.3	31.9	40.0	18.6
성별						
남자	349	4.6	10.3	36.1	33.8	15.2
여자	627	1.0	5.6	29.7	43.4	20.4
소계	976	2.3	7.3	32.0	40.0	18.5
연령별						
12-19세	305	5.6	9.2	42.6	26.6	16.1
20-64세	547	0.9	6.2	27.1	43.3	22.5
65세이상	124	0.0	7.3	26.6	58.1	8.1
소계	976	2.3	7.3	31.9	40.0	18.6
장애유무별						
유	139	0.7	9.4	33.1	42.4	14.4
무	836	2.5	6.9	31.8	39.6	19.1
소계	975	2.3	7.3	32.0	40.0	18.5
학력별						
중졸이하	356	4.5	9.3	36.0	35.7	14.6
고졸	308	1.6	6.5	31.8	40.9	19.2
대졸	278	0.4	5.8	27.7	43.5	22.7
대학원졸	29	0.0	6.9	20.7	51.7	20.7
소계	971	2.3	7.3	31.8	40.1	18.5
소득별						
100만미만	344	3.5	7.0	27.9	45.6	16.0
100만-300만	467	1.7	6.4	32.5	39.2	20.1
300만 이상	138	1.4	8.7	39.9	30.4	19.6
소계	949	2.3	7.0	31.9	40.3	18.5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찾아가는 공연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6	1.6	7.4	28.8	46.7	15.4
중소도시	388	2.3	5.9	28.6	38.9	24.2
농어촌	112	4.5	2.7	31.3	42.9	18.8
소계	986	2.2	6.3	29.0	43.2	19.3
성별						
남자	348	4.6	10.1	31.3	37.6	16.4
여자	636	0.9	4.2	27.8	46.2	20.8
소계	984	2.2	6.3	29.1	43.2	19.2
연령별						
12-19세	305	4.9	9.8	37.0	30.8	17.4
20-64세	550	1.3	4.5	26.7	46.5	20.9
65세이상	129	0.0	5.4	19.4	58.1	17.1
소계	984	2.2	6.3	29.0	43.2	19.3
장애유무별						
유	140	3.6	4.3	30.7	45.7	15.7
무	842	2.0	6.7	28.7	42.9	19.7
소계	982	2.2	6.3	29.0	43.3	19.1
학력별						
중졸이하	364	3.8	8.8	29.4	41.5	16.5
고졸	304	2.3	5.3	30.9	41.8	19.7
대졸	282	0.4	4.3	27.0	46.1	22.3
대학원졸	28	0.0	3.6	17.9	60.7	17.9
소계	978	2.2	6.2	28.8	43.5	19.2
소득별						
100만미만	351	4.0	6.3	26.2	44.7	18.8
100만-300만	469	1.7	5.8	30.5	42.6	19.4
300만 이상	137	0.0	8.8	30.7	40.1	20.4
소계	957	2.3	6.4	28.9	43.1	19.3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해설있는 공연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4	1.9	9.5	32.6	45.0	11.0
중소도시	391	2.0	9.7	31.7	37.9	18.7
농어촌	112	4.5	8.9	33.0	38.4	15.2
소계	987	2.2	9.5	32.3	41.4	14.5
성별						
남자	347	4.9	12.7	32.6	39.2	10.7
여자	638	0.8	7.8	32.3	42.6	16.5
소계	985	2.2	9.5	32.4	41.4	14.4
연령별						
12-19세	305	5.6	15.1	42.6	27.9	8.9
20-64세	551	0.9	7.4	29.6	44.8	17.2
65세이상	129	0.0	5.4	19.4	58.9	16.3
소계	985	2.2	9.5	32.3	41.4	14.5
장애유무별						
유	137	0.0	5.1	30.7	48.2	16.1
무	847	2.6	10.3	32.7	40.4	14.0
소계	984	2.2	9.6	32.4	41.5	14.3
학력별						
중졸이하	363	4.4	12.9	32.8	36.4	13.5
고졸	304	1.3	6.3	32.9	44.7	14.8
대졸	284	0.7	9.5	30.6	44.0	15.1
대학원졸	29	0.0	3.4	31.0	51.7	13.8
소계	980	2.2	9.6	32.1	41.6	14.4
소득별						
100만미만	350	3.1	7.4	28.3	44.9	16.3
100만-300만	469	2.1	10.4	33.9	41.6	11.9
300만 이상	139	0.7	12.2	38.1	32.4	16.5
소계	958	2.3	9.6	32.5	41.4	14.2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사전교육 후 관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0	4.4	17.7	34.6	35.4	7.9
중소도시	391	4.1	14.1	34.3	34.3	13.3
농어촌	110	5.5	19.1	50.0	13.6	11.8
소계	981	4.4	16.4	36.2	32.5	10.5
성별						
남자	346	7.2	18.8	33.2	32.7	8.1
여자	633	2.8	15.2	37.9	32.5	11.5
소계	979	4.4	16.4	36.3	32.6	10.3
연령별						
12-19세	304	9.2	21.1	40.8	20.1	8.9
20-64세	546	2.4	12.6	37.0	35.7	12.3
65세이상	129	1.6	21.7	21.7	48.1	7.0
소계	979	4.4	16.4	36.2	32.5	10.5
장애유무별						
유	138	3.6	10.1	29.0	46.4	10.9
무	840	4.5	17.5	37.4	30.4	10.2
소계	978	4.4	16.5	36.2	32.6	10.3
학력별						
중졸이하	359	7.0	20.6	35.9	27.6	8.9
고졸	307	4.6	12.1	33.9	37.1	12.4
대졸	280	1.4	16.1	38.6	33.2	10.7
대학원졸	28	0.0	14.3	39.3	39.3	7.1
소계	974	4.4	16.4	36.1	32.5	10.5
소득별						
100만미만	348	6.0	17.0	28.7	37.6	10.6
100만-300만	467	3.4	16.9	40.7	30.0	9.0
300만 이상	137	4.4	13.9	40.1	29.2	12.4
소계	952	4.5	16.5	36.2	32.7	10.1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식사 및 간식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99	1.2	9.4	22.0	44.3	23.0
중소도시	389	2.8	11.1	25.4	35.7	24.9
농어촌	112	2.7	4.5	32.1	25.9	34.8
소계	1000	2.0	9.5	24.5	38.9	25.1
성별						
남자	350	2.9	8.9	23.7	38.9	25.7
여자	648	1.5	9.9	25.0	39.0	24.5
소계	998	2.0	9.5	24.5	39.0	24.9
연령별						
12-19세	305	3.3	5.9	29.5	32.1	29.2
20-64세	553	1.6	10.7	25.7	39.2	22.8
65세이상	140	0.7	12.9	8.6	52.1	25.7
소계	998	2.0	9.5	24.4	38.9	25.2
장애유무별						
유	143	1.4	4.2	18.2	40.6	35.7
무	854	2.1	10.4	25.4	38.8	23.3
소계	997	2.0	9.5	24.4	39.0	25.1
학력별						
중졸이하	374	2.1	7.5	22.2	40.1	28.1
고졸	309	1.3	5.8	22.0	39.2	31.7
대졸	281	2.5	14.9	30.2	37.0	15.3
대학원졸	28	3.6	21.4	17.9	46.4	10.7
소계	992	2.0	9.5	24.3	39.1	25.1
소득별						
100만미만	366	0.8	6.3	15.0	44.3	33.6
100만-300만	468	1.9	11.3	30.3	35.5	20.9
300만 이상	137	5.8	13.1	30.7	35.8	14.6
소계	971	2.1	9.7	24.6	38.8	24.8

부록

공연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교통 편의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96	1.0	6.0	17.9	52.0	23.0
중소도시	392	3.3	6.4	25.3	35.7	29.3
농어촌	111	0.9	1.8	28.8	31.5	36.9
소계	999	1.9	5.7	22.0	43.3	27.0
성별						
남자	350	3.7	5.7	21.7	43.1	25.7
여자	647	0.9	5.7	22.3	43.6	27.5
소계	997	1.9	5.7	22.1	43.4	26.9
연령별						
12-19세	305	3.3	5.9	27.5	37.0	26.2
20-64세	556	1.4	5.8	21.8	46.0	25.0
65세이상	136	0.7	5.1	10.3	47.1	36.8
소계	997	1.9	5.7	22.0	43.4	27.0
장애유무별						
유	144	0.0	3.5	14.6	49.3	32.6
무	850	2.2	6.1	23.2	42.4	26.1
소계	994	1.9	5.7	21.9	43.4	27.1
학력별						
중졸이하	370	2.2	4.9	23.0	40.8	29.2
고졸	311	1.3	4.5	17.7	45.3	31.2
대졸	281	2.1	6.8	26.0	45.9	19.2
대학원졸	29	3.4	17.2	20.7	31.0	27.6
소계	991	1.9	5.7	22.1	43.4	26.9
소득별						
100만미만	365	1.1	3.3	13.4	46.6	35.6
100만-300만	468	1.7	6.4	26.3	42.7	22.9
300만 이상	137	5.1	9.5	31.4	38.0	16.1
소계	970	2.0	5.7	22.2	43.5	26.7

부록

전시 관람 욕구 유무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지역별			
대도시	509	69.2	30.8
중소도시	397	83.1	16.9
농어촌	115	80.0	20.0
소계	1,021	75.8	24.2
성별			
남자	354	67.8	32.2
여자	665	80.0	20.0
소계	1,019	75.8	24.2
연령별			
12-19세	304	63.2	36.8
20-64세	570	84.7	15.3
65세이상	145	66.9	33.1
소계	1,019	75.8	24.2
장애유무별			
유	146	82.9	17.1
무	869	74.7	25.3
소계	1,015	75.9	24.1
학력별			
중졸이하	377	61.5	38.5
고졸	315	82.2	17.8
대졸	291	86.3	13.7
대학원졸	30	83.3	16.7
소계	1,013	75.7	24.3
소득별			
100만미만	379	72.3	27.7
100만-300만	472	78.4	21.6
300만 이상	141	76.6	23.4
소계	992	75.8	24.2

부록

가장 관람하고 싶은 전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도서	그림	사진	서예	고미술	도자기	의상	기타
지역별									
대도시	333	17.7	44.7	47.4	17.4	24.0	21.0	21.6	2.7
중소도시	289	15.9	42.9	49.5	5.5	21.5	26.6	32.2	1.4
농어촌	92	13.0	54.3	48.9	7.6	21.7	17.4	30.4	2.2
소계	714	16.4	45.2	48.5	11.3	22.7	22.8	27.0	2.1
성별									
남자	227	18.1	43.2	51.5	18.9	29.5	20.7	15.9	1.8
여자	486	15.4	46.1	47.1	7.8	19.5	23.9	32.3	2.3
소계	713	16.3	45.2	48.5	11.4	22.7	22.9	27.1	2.1
연령별									
12-19세	190	14.2	46.3	62.1	3.7	13.2	15.8	40.0	1.6
20-64세	442	17.9	46.4	48.2	10.2	24.7	24.9	22.4	2.3
65세이상	80	12.5	37.5	18.8	36.3	32.5	28.8	21.3	2.5
소계	712	16.3	45.4	48.6	11.4	22.5	22.9	27.0	2.1
장애유무별									
유	115	19.1	32.2	39.1	27.8	29.6	27.8	19.1	3.5
무	596	15.8	47.8	50.5	8.2	21.5	21.6	28.4	1.8
소계	711	16.3	45.3	48.7	11.4	22.8	22.6	26.9	2.1
학력별									
중졸이하	208	14.9	40.9	47.1	12.5	19.2	25.5	32.2	2.9
고졸	240	14.2	42.9	46.3	15.4	26.7	21.3	28.8	0.8
대졸	235	19.6	50.2	52.3	6.0	22.1	22.6	21.3	3.0
대학원졸	24	25.0	58.3	50.0	8.3	16.7	16.7	16.7	0.0
소계	707	16.5	45.3	48.7	11.2	22.6	22.8	26.9	2.1
소득별									
100만 미만	248	17.3	39.5	35.9	22.2	28.2	27.0	23.8	2.8
100만- 300만	344	14.8	47.7	58.7	4.1	18.9	18.0	31.1	1.7
300만 이상	105	21.9	48.6	46.7	9.5	22.9	25.7	21.0	1.9
소계	697	16.8	44.9	48.8	11.3	22.8	22.4	27.0	2.2

부록

전시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홍보 부족	방법 모름	수준 낮음	재미 없음	시간 부족	비용 과다	교통 불편	시설 열악	동반자 무	기타
지역별											
대도시	150	22.7	12.0	10.7	46.7	22.7	8.0	15.3	2.7	7.3	2.7
중소도시	64	14.1	7.8	10.9	54.7	31.3	14.1	15.6	6.3	10.9	9.4
농어촌	21	33.3	4.8	0.0	38.1	19.0	4.8	19.0	9.5	19.0	9.5
소계	235	21.3	10.2	9.8	48.1	24.7	9.4	15.7	4.3	9.4	5.1
성별											
남자	112	23.2	9.8	8.9	50.9	29.5	8.0	14.3	5.4	12.5	5.4
여자	123	19.5	10.6	10.6	45.5	20.3	10.6	17.1	3.3	6.5	4.9
소계	235	21.3	10.2	9.8	48.1	24.7	9.4	15.7	4.3	9.4	5.1
연령별											
12-19세	109	20.2	5.5	4.6	53.2	24.8	6.4	12.8	2.8	11.0	9.2
20-64세	79	16.5	12.7	13.9	45.6	39.2	13.9	16.5	5.1	8.9	1.3
65세이상	47	31.9	17.0	14.9	40.4	0.0	8.5	21.3	6.4	6.4	2.1
소계	235	21.3	10.2	9.8	48.1	24.7	9.4	15.7	4.3	9.4	5.1
장애유무별											
유	24	25.0	33.3	8.3	45.8	20.8	8.3	29.2	8.3	12.5	4.2
무	209	20.6	7.7	10.0	48.8	24.9	9.6	14.4	3.8	9.1	5.3
소계	233	21.0	10.3	9.9	48.5	24.5	9.4	15.9	4.3	9.4	5.2
학력별											
중졸이하	139	25.2	7.9	9.4	48.2	18.7	6.5	15.1	4.3	9.4	7.2
고졸	52	19.2	19.2	5.8	40.4	28.8	11.5	15.4	1.9	15.4	1.9
대졸	38	13.2	5.3	18.4	60.5	36.8	18.4	15.8	7.9	2.6	2.6
대학원졸	5	0.0	0.0	0.0	40.0	60.0	0.0	20.0	0.0	0.0	0.0
소계	234	21.4	9.8	9.8	48.3	24.8	9.4	15.4	4.3	9.4	5.1
소득별											
100만 미만	100	26.0	13.0	14.0	49.0	16.0	12.0	19.0	5.0	9.0	2.0
100만- 300만	96	18.8	8.3	8.3	49.0	28.1	9.4	12.5	4.2	9.4	5.2
300만 이상	32	15.6	6.3	3.1	43.8	43.8	3.1	15.6	3.1	12.5	9.4
소계	228	21.5	10.1	10.1	48.2	25.0	9.6	15.8	4.4	9.6	4.4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지역 내 시설확충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94	0.8	5.1	27.1	51.4	15.6
중소도시	383	3.4	3.7	28.2	46.7	18.0
농어촌	112	3.6	3.6	33.0	36.6	23.2
소계	989	2.1	4.3	28.2	47.9	17.4
성별						
남자	347	3.7	7.5	30.0	42.9	15.9
여자	640	1.3	2.7	27.3	50.8	18.0
소계	987	2.1	4.4	28.3	48.0	17.2
연령별						
12-19세	300	5.7	5.0	39.7	34.0	15.7
20-64세	552	0.5	4.5	23.7	50.7	20.5
65세이상	135	0.7	2.2	20.7	67.4	8.9
소계	987	2.1	4.4	28.2	47.9	17.4
장애유무별						
유	142	0.7	4.9	31.0	46.5	16.9
무	845	2.4	4.3	27.8	48.3	17.3
소계	987	2.1	4.4	28.3	48.0	17.2
학력별						
중졸이하	364	4.7	4.7	31.6	44.8	14.3
고졸	307	0.7	3.9	29.6	49.2	16.6
대졸	282	0.4	4.6	23.0	50.7	21.3
대학원졸	29	3.4	3.4	17.2	48.3	27.6
소계	982	2.1	4.4	28.1	48.0	17.4
소득별						
100만미만	362	1.4	5.0	26.0	50.8	16.9
100만-300만	462	2.2	4.1	28.6	47.0	18.2
300만 이상	136	3.7	2.9	33.8	41.9	17.6
소계	960	2.1	4.3	28.3	47.7	17.6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수준높은 전시회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0	1.0	5.2	22.9	53.3	17.5
중소도시	384	2.3	3.9	26.3	44.8	22.7
농어촌	114	2.6	2.6	29.8	43.0	21.9
소계	978	1.7	4.4	25.1	48.8	20.0
성별						
남자	348	3.2	6.0	24.7	47.4	18.7
여자	628	1.0	3.5	25.3	49.7	20.5
소계	976	1.7	4.4	25.1	48.9	19.9
연령별						
12-19세	300	5.3	6.3	34.7	35.3	18.3
20-64세	555	0.0	3.8	20.2	52.4	23.6
65세이상	121	0.8	2.5	23.1	66.1	7.4
소계	976	1.7	4.4	25.0	48.9	20.0
장애유무별						
유	142	0.0	5.6	25.4	52.8	16.2
무	834	2.0	4.2	25.1	48.2	20.5
소계	976	1.7	4.4	25.1	48.9	19.9
학력별						
중졸이하	349	4.3	6.3	29.8	44.4	15.2
고졸	308	0.6	3.6	26.6	50.0	19.2
대졸	284	0.0	3.2	17.6	53.5	25.7
대학원졸	30	0.0	0.0	23.3	43.3	33.3
소계	971	1.8	4.3	25.0	48.8	20.1
소득별						
100만미만	348	1.7	4.3	23.3	52.6	18.1
100만-300만	464	1.5	3.9	25.6	49.1	19.8
300만 이상	137	2.2	5.8	25.5	38.7	27.7
소계	949	1.7	4.3	24.8	48.9	20.3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재미있는 전시회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6	0.2	3.3	19.1	55.6	21.8
중소도시	384	2.3	0.8	21.1	46.9	28.9
농어촌	112	1.8	0.9	17.9	53.6	25.9
소계	982	1.2	2.0	19.8	51.9	25.1
성별						
남자	346	2.6	3.2	19.7	50.9	23.7
여자	634	0.5	1.4	19.9	52.7	25.6
소계	980	1.2	2.0	19.8	52.0	24.9
연령별						
12-19세	300	3.7	3.7	25.3	42.0	25.3
20-64세	553	0.2	1.3	18.1	54.4	26.0
65세이상	127	0.0	1.6	13.4	64.6	20.5
소계	980	1.2	2.0	19.7	51.9	25.1
장애유무별						
유	140	0.0	0.7	22.1	55.7	21.4
무	839	1.4	2.3	19.3	51.4	25.6
소계	979	1.2	2.0	19.7	52.0	25.0
학력별						
중졸이하	356	2.8	3.7	19.9	49.4	24.2
고졸	306	0.7	1.3	21.6	53.6	22.9
대졸	284	0.0	1.1	17.3	53.9	27.8
대학원졸	29	0.0	0.0	13.8	55.2	31.0
소계	975	1.2	2.1	19.5	52.2	25.0
소득별						
100만미만	353	1.1	2.0	18.7	55.0	23.2
100만-300만	464	1.5	1.1	19.4	52.2	25.9
300만 이상	137	0.0	4.4	21.2	46.0	28.5
소계	954	1.2	1.9	19.4	52.3	25.3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수도권 전시 지방 순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0	1.7	7.9	34.4	43.3	12.7
중소도시	377	2.1	5.6	31.6	40.3	20.4
농어촌	112	3.6	0.0	35.7	38.4	22.3
소계	969	2.1	6.1	33.4	41.6	16.8
성별						
남자	347	4.0	9.2	35.4	36.3	15.0
여자	620	1.0	4.4	32.4	44.7	17.6
소계	967	2.1	6.1	33.5	41.7	16.6
연령별						
12-19세	300	6.0	7.3	45.7	26.3	14.7
20-64세	546	0.4	5.7	27.3	46.7	20.0
65세이상	121	0.0	5.0	30.6	56.2	8.3
소계	967	2.1	6.1	33.4	41.6	16.9
장애유무별						
유	141	0.7	7.1	33.3	45.4	13.5
무	825	2.3	5.9	33.3	41.1	17.3
소계	966	2.1	6.1	33.3	41.7	16.8
학력별						
중졸이하	347	4.0	6.9	38.3	38.3	12.4
고졸	308	1.9	6.2	33.4	41.2	17.2
대졸	278	0.0	4.7	28.8	45.7	20.9
대학원졸	29	0.0	6.9	20.7	48.3	24.1
소계	962	2.1	6.0	33.5	41.7	16.7
소득별						
100만미만	343	2.6	6.4	30.6	46.1	14.3
100만-300만	463	2.2	5.0	35.0	39.5	18.4
300만 이상	134	0.0	8.2	38.8	36.6	16.4
소계	940	2.0	6.0	33.9	41.5	16.6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찾아가는 전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2	2.3	6.8	30.5	46.5	13.9
중소도시	382	2.9	6.3	28.3	43.5	19.1
농어촌	111	4.5	5.4	33.3	39.6	17.1
소계	975	2.8	6.5	29.9	44.5	16.3
성별						
남자	341	5.0	8.8	32.3	41.1	12.9
여자	632	1.6	5.2	28.8	46.4	18.0
소계	973	2.8	6.5	30.0	44.5	16.2
연령별						
12-19세	300	7.3	10.0	36.0	33.0	13.7
20-64세	545	0.4	5.0	28.1	47.9	18.7
65세이상	128	2.3	4.7	23.4	57.0	12.5
소계	973	2.8	6.5	29.9	44.5	16.3
장애유무별						
유	139	1.4	5.8	30.9	46.0	15.8
무	834	3.0	6.6	29.7	44.4	16.3
소계	973	2.8	6.5	29.9	44.6	16.2
학력별						
중졸이하	357	6.2	9.0	30.3	42.0	12.6
고졸	305	1.6	6.2	31.1	44.9	16.1
대졸	277	0.0	3.2	28.2	47.3	21.3
대학원졸	28	0.0	7.1	28.6	46.4	17.9
소계	967	2.8	6.4	29.9	44.6	16.3
소득별						
100만미만	352	3.1	7.4	28.4	46.3	14.8
100만-300만	459	2.6	5.2	29.4	44.9	17.9
300만 이상	135	2.2	8.1	36.3	39.3	14.1
소계	946	2.7	6.4	30.0	44.6	16.2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해설있는 전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86	2.3	8.4	25.7	46.3	17.3
중소도시	385	3.9	7.0	27.5	44.9	16.6
농어촌	113	4.4	6.2	25.7	42.5	21.2
소계	984	3.2	7.6	26.4	45.3	17.5
성별						
남자	345	6.4	10.7	25.2	45.2	12.5
여자	637	1.4	6.0	27.2	45.4	20.1
소계	982	3.2	7.6	26.5	45.3	17.4
연령별						
12-19세	300	8.3	12.0	31.7	32.7	15.3
20-64세	552	1.1	5.6	25.5	48.6	19.2
65세이상	130	0.0	6.2	17.7	60.8	15.4
소계	982	3.2	7.6	26.4	45.3	17.5
장애유무별						
유	142	0.0	6.3	23.9	54.2	15.5
무	839	3.7	7.9	26.8	43.9	17.8
소계	981	3.2	7.6	26.4	45.4	17.4
학력별						
중졸이하	359	6.4	11.4	24.5	41.8	15.9
고졸	308	2.3	5.8	29.5	48.4	14.0
대졸	281	0.4	5.0	25.3	47.0	22.4
대학원졸	29	0.0	6.9	24.1	44.8	24.1
소계	977	3.2	7.7	26.3	45.4	17.4
소득별						
100만미만	357	3.9	8.4	23.8	47.3	16.5
100만-300만	462	2.4	6.3	26.6	46.1	18.6
300만 이상	136	3.7	9.6	33.8	37.5	15.4
소계	955	3.1	7.5	26.6	45.3	17.4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사전교육 후 관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77	3.8	12.8	33.8	40.3	9.4
중소도시	382	3.7	10.2	33.2	39.0	13.9
농어촌	111	7.2	9.9	40.5	30.6	11.7
소계	970	4.1	11.4	34.3	38.7	11.4
성별						
남자	343	7.0	12.8	33.8	36.4	9.9
여자	625	2.6	10.7	34.7	40.0	12.0
소계	968	4.1	11.5	34.4	38.7	11.3
연령별						
12-19세	300	8.7	15.7	39.3	25.3	11.0
20-64세	545	2.2	8.3	32.8	43.9	12.8
65세이상	123	1.6	15.4	28.5	48.0	6.5
소계	968	4.1	11.5	34.3	38.6	11.5
장애유무별						
유	138	4.3	6.5	29.0	47.8	12.3
무	830	4.1	12.3	35.2	37.2	11.2
소계	968	4.1	11.5	34.3	38.7	11.4
학력별						
중졸이하	351	6.8	15.7	34.2	32.8	10.5
고졸	306	4.2	8.5	33.7	42.5	11.1
대졸	278	0.7	9.7	34.9	42.4	12.2
대학원졸	28	3.6	7.1	32.1	39.3	17.9
소계	963	4.2	11.4	34.2	38.8	11.4
소득별						
100만미만	346	6.1	13.0	27.5	42.2	11.3
100만-300만	461	2.6	9.5	38.2	38.0	11.7
300만 이상	134	3.7	12.7	39.6	34.3	9.7
소계	941	4.0	11.3	34.4	39.0	11.3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식사 및 간식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90	1.6	10.4	23.9	43.1	21.0
중소도시	382	4.2	12.8	25.4	34.8	22.8
농어촌	112	3.6	5.4	25.9	28.6	36.6
소계	984	2.8	10.8	24.7	38.2	23.5
성별						
남자	344	4.4	10.5	24.7	37.5	23.0
여자	638	2.0	11.0	24.8	38.7	23.5
소계	982	2.9	10.8	24.7	38.3	23.3
연령별						
12-19세	300	5.3	7.3	27.7	31.7	28.0
20-64세	548	2.0	12.6	26.6	38.0	20.8
65세이상	134	0.7	11.2	9.7	54.5	23.9
소계	982	2.9	10.8	24.6	38.3	23.4
장애유무별						
유	142	0.7	4.2	19.0	45.1	31.0
무	840	3.2	11.9	25.6	37.1	22.1
소계	982	2.9	10.8	24.6	38.3	23.4
학력별						
중졸이하	359	3.9	9.7	20.1	40.1	26.2
고졸	310	2.6	5.5	23.2	39.4	29.4
대졸	278	1.4	16.9	31.3	36.0	14.4
대학원졸	29	6.9	20.7	34.5	24.1	13.8
소계	976	2.9	10.8	24.7	38.2	23.5
소득별						
100만미만	360	1.4	6.4	16.7	45.0	30.6
100만-300만	461	2.8	12.4	28.2	36.2	20.4
300만 이상	134	6.7	17.9	35.1	29.1	11.2
소계	955	2.8	10.9	24.8	38.5	22.9

부록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정도 - 교통편의 제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
지역별						
대도시	493	1.4	6.3	19.3	51.7	21.3
중소도시	385	3.6	8.3	23.6	37.9	26.5
농어촌	111	2.7	2.7	25.2	37.8	31.5
소계	989	2.4	6.7	21.6	44.8	24.5
성별						
남자	346	4.0	7.2	21.7	42.8	24.3
여자	641	1.6	6.4	21.7	46.0	24.3
소계	987	2.4	6.7	21.7	44.9	24.3
연령별						
12-19세	300	5.7	6.7	26.0	36.3	25.3
20-64세	551	1.1	6.9	22.7	47.2	22.1
65세이상	136	0.7	5.9	7.4	54.4	31.6
소계	987	2.4	6.7	21.6	44.9	24.4
장애유무별						
유	144	0.7	3.5	15.3	45.8	34.7
무	843	2.7	7.2	22.8	44.7	22.5
소계	987	2.4	6.7	21.7	44.9	24.3
학력별						
중졸이하	364	3.6	6.6	18.7	44.8	26.4
고졸	310	1.9	4.2	23.2	41.9	28.7
대졸	278	1.1	8.6	23.7	48.6	18.0
대학원졸	29	6.9	13.8	24.1	31.0	24.1
소계	981	2.4	6.6	21.7	44.5	24.7
소득별						
100만미만	366	1.9	4.4	14.2	48.4	31.1
100만-300만	460	2.0	7.4	25.0	42.8	22.8
300만 이상	134	5.2	9.7	30.6	43.3	11.2
소계	960	2.4	6.6	21.7	45.0	24.4

부록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할 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장애인더 지원	비장애인 확대	장르별 확대	인당지 원증액	물품구 입포함	기타
지역별							
대도시	477	37.5	28.9	15.3	12.4	4.6	1.3
중소도시	388	36.9	30.7	16.0	10.3	5.4	0.8
농어촌	112	30.4	34.8	17.0	12.5	4.5	0.9
소계	977	36.4	30.3	15.8	11.6	4.9	1.0
성별							
남자	354	37.0	28.5	10.2	16.7	5.6	2.0
여자	621	36.1	31.2	19.0	8.7	4.5	0.5
소계	975	36.4	30.3	15.8	11.6	4.9	1.0
연령별							
12-19세	300	31.7	28.3	20.3	12.7	5.3	1.7
20-64세	560	39.1	30.7	13.0	11.4	5.0	0.7
65세이상	116	35.3	33.6	17.2	9.5	3.4	0.9
소계	976	36.4	30.3	15.8	11.6	4.9	1.0
장애유무별							
유	148	43.2	20.3	12.8	17.6	5.4	0.7
무	825	35.0	32.1	16.4	10.5	4.8	1.1
소계	973	36.3	30.3	15.8	11.6	4.9	1.0
학력별							
중졸이하	344	37.2	28.5	16.9	11.3	4.1	2.0
고졸	311	37.3	27.3	14.1	14.1	6.4	0.6
대졸	287	36.2	33.1	16.4	9.4	4.5	0.3
대학원졸	29	24.1	48.3	13.8	10.3	3.4	0.0
소계	971	36.6	30.1	15.8	11.6	4.9	1.0
소득별							
100만미만	341	40.5	27.6	13.2	12.9	4.4	1.5
100만-300만	465	31.2	34.2	17.2	11.2	5.6	0.6
300만 이상	142	43.7	23.9	18.3	9.9	4.2	0.0
소계	948	36.4	30.3	15.9	11.6	5.0	0.8

부록

문화예술 창작활동 욕구 유무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지역별			
대도시	517	70.0	30.0
중소도시	385	76.6	23.4
농어촌	114	80.7	19.3
소계	1,016	73.7	26.3
성별			
남자	358	65.4	34.6
여자	657	78.2	21.8
소계	1,015	73.7	26.3
연령별			
12-19세	305	72.1	27.9
20-64세	565	76.3	23.7
65세이상	144	66.7	33.3
소계	1,014	73.7	26.3
장애유무별			
유	146	82.9	17.1
무	864	72.1	27.9
소계	1,010	73.7	26.3
학력별			
중졸이하	372	65.6	34.4
고졸	316	79.4	20.6
대졸	291	76.6	23.4
대학원졸	29	86.2	13.8
소계	1,008	73.7	26.3
소득별			
100만미만	375	71.2	28.8
100만-300만	469	74.6	25.4
300만 이상	143	79.0	21.0
소계	987	74.0	26.0

부록

가장 하고 싶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문학	미술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무용	영화	기타
지역별									
대도시	361	19.9	37.4	39.3	21.6	34.9	14.7	26.6	3.3
중소도시	284	19.4	32.4	37.7	17.6	47.5	9.2	28.9	1.4
농어촌	92	15.2	30.4	28.3	22.8	56.5	12.0	31.5	1.1
소계	737	19.1	34.6	37.3	20.2	42.5	12.2	28.1	2.3
성별									
남자	228	25.4	34.6	39.5	19.7	39.5	4.4	31.1	2.6
여자	508	16.3	34.4	36.4	20.5	43.7	15.7	26.8	2.2
소계	736	19.2	34.5	37.4	20.2	42.4	12.2	28.1	2.3
연령별									
12-19세	219	12.3	25.1	38.8	7.8	53.4	10.0	50.7	3.2
20-64세	427	23.7	40.7	36.3	20.8	43.8	9.1	19.4	1.4
65세이상	89	13.5	29.2	38.2	48.3	9.0	31.5	14.6	4.5
소계	735	19.0	34.7	37.3	20.3	42.4	12.1	28.2	2.3
장애유무별									
유	121	25.6	34.7	38.0	33.1	29.8	8.3	24.0	5.0
무	612	17.8	34.3	37.4	17.6	44.9	13.1	29.1	1.8
소계	733	19.1	34.4	37.5	20.2	42.4	12.3	28.2	2.3
학력별									
중졸이하	238	14.3	27.3	34.5	22.7	38.2	17.6	37.4	4.6
고졸	247	19.4	36.0	38.9	21.5	41.7	9.3	29.6	1.2
대졸	220	22.3	42.7	39.1	17.7	46.4	9.1	16.8	0.9
대학원졸	26	30.8	26.9	26.9	11.5	57.7	15.4	23.1	0.0
소계	731	19.0	34.9	37.1	20.4	42.5	12.2	28.0	2.2
소득별									
100만 미만	262	17.9	35.1	40.5	33.2	27.1	16.4	20.6	4.2
100만- 300만	348	19.8	34.5	33.0	13.8	52.6	9.2	32.8	0.6
300만 이상	112	21.4	35.7	41.1	10.7	44.6	11.6	31.3	3.6
소계	722	19.4	34.9	37.0	20.4	42.1	12.2	28.1	2.4

부록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질 없음	비용 없음	선생 없음	시간 없음	장소 없음	기회 없음	기타
지역별								
대도시	151	45.0	11.9	13.9	34.4	6.6	15.9	10.6
중소도시	82	68.3	9.8	7.3	36.6	7.3	14.6	3.7
농어촌	22	50.0	9.1	4.5	36.4	13.6	31.8	9.1
소계	255	52.9	11.0	11.0	35.3	7.5	16.9	8.2
성별								
남자	122	52.5	13.1	12.3	38.5	9.8	20.5	7.4
여자	133	53.4	9.0	9.8	32.3	5.3	13.5	9.0
소계	255	52.9	11.0	11.0	35.3	7.5	16.9	8.2
연령별								
12-19세	81	46.9	13.6	6.2	44.4	9.9	23.5	9.9
20-64세	129	55.8	11.6	13.2	38.0	7.8	14.0	3.9
65세이상	45	55.6	4.4	13.3	11.1	2.2	13.3	17.8
소계	255	52.9	11.0	11.0	35.3	7.5	16.9	8.2
장애유무별								
유	23	52.2	21.7	26.1	17.4	21.7	21.7	4.3
무	231	52.8	10.0	9.5	37.2	6.1	16.5	8.7
소계	254	52.8	11.0	11.0	35.4	7.5	16.9	8.3
학력별								
중졸이하	121	47.9	8.3	8.3	32.2	5.8	18.2	14.0
고졸	62	56.5	16.1	12.9	37.1	11.3	16.1	3.2
대졸	66	56.1	12.1	15.2	39.4	7.6	15.2	3.0
대학원졸	4	100.0	0.0	0.0	50.0	0.0	0.0	0.0
소계	253	53.0	11.1	11.1	35.6	7.5	16.6	8.3
소득별								
100만미만	104	53.8	12.5	16.3	27.9	10.6	17.3	10.6
100만-300만	111	55.0	11.7	9.0	36.0	4.5	16.2	8.1
300만 이상	30	43.3	6.7	3.3	60.0	6.7	16.7	0.0
소계	245	53.1	11.4	11.4	35.5	7.3	16.7	8.2

부록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 분야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미술	클래식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무용	영화	공동체 참여	도서관 이용	문화 교육	문화 탐방
지역별											
대도시	495	32.5	23.6	19.2	46.9	15.4	51.7	11.3	19.0	10.1	23.8
중소도시	377	26.3	30.8	19.9	46.7	13.8	49.6	10.1	19.1	6.9	18.3
농어촌	112	28.6	28.6	16.1	54.5	9.8	50.0	10.7	17.0	2.7	27.7
소계	984	29.7	26.9	19.1	47.7	14.1	50.7	10.8	18.8	8.0	22.2
성별											
남자	348	31.9	28.4	15.8	41.7	9.5	59.8	10.6	21.6	6.9	25.3
여자	635	28.5	26.1	20.9	50.9	16.7	45.8	10.9	17.3	8.7	20.3
소계	983	29.7	27.0	19.1	47.6	14.1	50.8	10.8	18.8	8.0	22.1
연령별											
12-19세	300	25.7	26.0	8.0	56.3	13.3	71.0	7.0	23.7	6.0	10.3
20-64세	555	32.6	27.9	18.7	46.8	13.3	45.6	13.2	17.1	9.7	24.9
65세이상	133	25.6	26.6	45.1	29.3	18.0	24.8	9.0	14.3	5.3	36.8
소계	988	29.6	26.6	19.0	47.4	14.0	50.5	10.7	18.7	8.0	22.1
장애유무별											
유	144	31.9	27.8	27.8	35.4	11.8	50.7	14.6	17.4	13.2	26.4
무	835	29.3	26.8	17.6	49.9	14.6	51.0	10.1	18.9	7.1	21.2
소계	979	29.7	27.0	19.1	47.8	14.2	51.0	10.7	18.7	8.0	22.0
학력별											
중졸이하	352	25.3	25.6	21.0	45.5	15.1	56.0	6.5	21.0	6.3	17.6
고졸	309	31.7	25.2	22.0	47.9	12.6	50.8	14.2	14.9	9.7	25.9
대졸	286	30.1	29.4	15.4	50.3	14.7	45.8	12.6	19.6	9.1	23.1
대학원졸	29	44.8	37.9	0.0	51.7	13.8	37.9	10.3	27.6	3.4	27.6
소계	976	29.3	26.9	19.1	47.8	14.1	50.8	10.9	18.9	8.1	22.1
소득별											
100만 미만	357	29.7	26.6	28.6	38.7	15.4	43.4	9.8	18.5	9.0	26.9
100만- 300만	459	30.7	22.7	12.9	55.6	13.5	57.3	10.2	17.6	8.1	18.5
300만 이상	141	26.2	39.0	12.8	47.5	12.8	50.4	14.9	24.1	6.4	22.0
소계	957	29.7	26.5	18.7	48.1	14.1	51.1	10.8	18.9	8.2	22.2

부록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미술 전시	클래식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무용	영화	도서관 이용	문화 탐방	자원 봉사	기타
지역별											
대도시	353	27.5	18.7	16.1	31.4	15.3	38.8	13.3	22.4	9.6	5.1
중소도시	238	25.6	23.5	21.8	37.8	11.8	35.3	13.0	13.9	7.6	0.8
농어촌	85	17.6	25.9	17.6	41.2	12.9	37.6	10.6	29.4	3.5	3.5
소계	676	25.6	21.3	18.3	34.9	13.8	37.4	12.9	20.3	8.1	3.4
성별											
남자	233	25.3	21.9	17.2	29.6	7.7	43.8	15.0	23.6	10.3	3.0
여자	443	25.7	21.0	19.0	37.7	16.9	34.1	11.7	18.5	7.0	3.6
소계	676	25.6	21.3	18.3	34.9	13.8	37.4	12.9	20.3	8.1	3.4
연령별											
12-19세	193	18.7	17.6	4.7	49.7	16.6	58.0	14.0	9.8	8.3	2.6
20-64세	375	30.4	24.3	20.5	34.9	8.8	29.6	12.5	22.4	8.5	2.4
65세이상	106	21.7	17.9	35.8	6.6	25.5	28.3	12.3	31.1	6.6	8.5
소계	674	25.7	21.4	18.4	34.7	13.6	37.5	12.9	20.2	8.2	3.4
장애유무별											
유	113	31.0	20.4	24.8	23.9	13.3	37.2	9.7	30.1	5.3	1.8
무	559	24.7	21.6	17.0	37.2	14.0	37.6	13.1	18.2	8.6	3.8
소계	672	25.7	21.4	18.3	35.0	13.8	37.5	12.5	20.2	8.0	3.4
학력별											
중졸이하	237	19.8	17.3	19.8	32.1	18.6	45.6	13.5	16.5	8.9	5.1
고졸	229	25.8	18.3	17.0	36.2	13.1	38.9	13.1	24.5	6.6	2.6
대졸	184	31.5	29.3	19.0	37.5	8.2	26.6	12.5	19.0	8.7	1.6
대학원졸	19	31.6	21.1	5.3	42.1	10.5	26.3	5.3	36.8	10.5	10.5
소계	669	25.4	21.1	18.2	35.3	13.6	37.5	12.9	20.5	8.1	3.4
소득별											
100만 미만	261	23.8	21.5	26.1	23.8	16.5	36.8	12.3	24.1	8.8	4.6
100만- 300만	291	27.1	19.2	12.4	44.0	11.7	39.5	12.7	16.5	8.2	2.4
300만 이상	103	22.3	27.2	11.7	38.8	11.7	35.9	16.5	23.3	7.8	3.9
소계	655	25.0	21.4	17.7	35.1	13.6	37.9	13.1	20.6	8.4	3.5

부록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 기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비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수준	행사기 간	출연진 유명도	교통 편의	편의 시설	전문 의견	기관 권유	기타
지역별										
대도시	505	40.8	46.7	20.6	14.1	35.4	21.4	7.1	11.9	2.4
중소도시	377	39.8	48.3	26.0	9.0	29.7	13.3	10.3	4.5	1.9
농어촌	112	50.9	42.9	14.3	11.6	25.0	14.3	12.5	4.5	0.0
소계	994	41.5	46.9	21.9	11.9	32.1	17.5	9.0	8.2	1.9
성별										
남자	353	32.3	45.0	22.7	12.5	30.6	23.2	7.9	6.8	3.7
여자	640	46.6	48.0	21.4	11.6	33.0	14.4	9.4	9.1	0.9
소계	993	41.5	46.9	21.9	11.9	32.1	17.5	8.9	8.3	1.9
연령별										
12-19세	302	38.7	42.4	24.5	12.9	31.1	19.5	5.6	4.3	3.0
20-64세	559	44.7	52.8	24.2	10.7	29.7	17.4	11.4	7.0	1.8
65세이상	131	35.1	32.8	6.1	14.5	45.0	13.7	6.1	22.1	0.0
소계	992	41.6	47.0	21.9	11.9	32.2	17.5	9.0	8.2	1.9
장애유무별										
유	144	37.5	34.0	22.9	13.2	39.6	27.1	6.9	9.7	2.1
무	844	42.4	49.4	21.8	11.6	30.7	16.0	9.2	7.9	1.8
소계	988	41.7	47.2	22.0	11.8	32.0	17.6	8.9	8.2	1.8
학력별										
중졸이하	358	31.0	39.9	17.9	10.9	34.9	16.2	4.2	10.9	2.8
고졸	312	46.8	36.2	23.4	12.8	33.7	24.0	12.5	8.7	0.3
대졸	287	49.1	65.2	25.1	10.8	28.2	12.5	11.1	4.5	2.1
대학원졸	29	44.8	72.4	24.1	24.1	20.7	6.9	10.3	10.3	3.4
소계	986	41.7	47.1	21.9	11.9	32.2	17.3	9.0	8.3	1.8
소득별										
100만미만	364	38.5	39.0	19.0	10.2	37.6	21.2	6.9	12.4	2.5
100만-300만	465	45.6	47.7	25.4	12.5	31.0	17.2	11.0	5.6	0.9
300만 이상	139	37.4	66.2	20.9	15.8	22.3	9.4	5.8	5.8	2.9
소계	968	41.7	47.1	22.3	12.1	32.2	17.6	8.7	8.2	1.8

부록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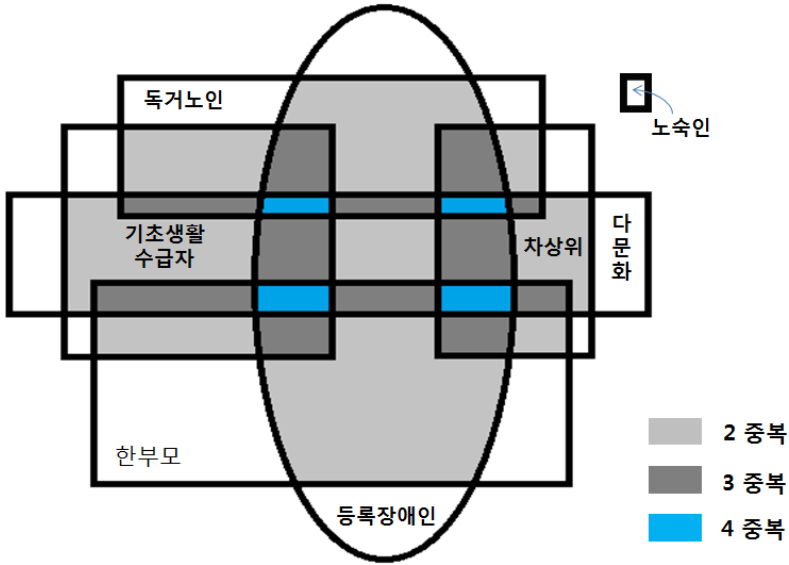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홍보 부족	방법 모름	수준 낮음	재미 없음	시간 부족	비용 과다	교통 불편	시설 열악	동반자 무	기타
지역별											
대도시	481	48.0	31.2	7.5	20.0	27.7	19.1	23.3	9.6	8.9	1.7
중소도시	371	45.6	33.7	5.9	13.7	31.5	19.9	15.9	8.9	9.4	2.2
농어촌	113	47.8	32.7	5.3	18.6	31.0	18.6	21.2	7.1	8.8	2.7
소계	965	47.0	32.3	6.6	17.4	29.5	19.4	20.2	9.0	9.1	2.0
성별											
남자	338	47.6	30.5	9.8	19.5	32.0	17.5	20.4	10.1	13.0	2.7
여자	626	46.8	33.4	5.0	16.3	28.3	20.4	20.1	8.5	6.9	1.6
소계	964	47.1	32.4	6.6	17.4	29.6	19.4	20.2	9.0	9.0	2.0
연령별											
12-19세	294	45.2	25.9	5.4	24.5	31.6	18.0	19.4	8.2	12.9	2.4
20-64세	540	49.8	35.0	7.6	12.2	30.7	20.4	20.0	10.6	7.4	2.2
65세이상	129	40.3	36.4	5.4	23.3	19.4	18.6	23.3	4.7	7.0	0.0
소계	963	47.1	32.4	6.6	17.4	29.5	19.4	20.2	9.0	9.0	2.0
장애유무별											
유	141	46.8	36.2	11.3	12.8	19.9	19.9	34.0	15.6	8.5	3.5
무	820	47.2	31.7	5.7	18.3	31.2	19.3	17.8	7.8	9.1	1.7
소계	961	47.1	32.4	6.6	17.5	29.6	19.4	20.2	8.9	9.1	2.0
학력별											
중졸이하	345	40.3	28.1	5.8	26.4	28.1	17.4	18.3	5.5	9.3	2.0
고졸	304	49.7	36.8	6.6	9.5	27.6	23.4	26.6	11.8	11.5	1.6
대졸	279	51.6	33.3	7.9	14.3	32.3	20.1	15.4	10.4	6.8	1.4
대학원졸	29	58.6	31.0	6.9	27.6	37.9	0.0	17.2	3.4	6.9	3.4
소계	957	47.1	32.5	6.7	17.6	29.5	19.5	20.1	8.9	9.2	1.8
소득별											
100만 미만	355	42.8	32.1	9.3	18.3	21.1	21.7	27.0	9.6	9.9	2.8
100만- 300만	447	48.1	30.4	4.9	18.1	35.8	19.0	15.4	9.2	8.1	1.1
300만 이상	138	53.6	35.5	5.8	14.5	30.4	13.8	17.4	7.2	10.9	1.4
소계	940	46.9	31.8	6.7	17.7	29.5	19.3	20.1	9.0	9.1	1.8

부록

부록2. 문화소외계층 추정 근거

[그림] 1단계 대상 종합구성도



<1단계>

번호	대상	인구수(명)	비고
1	다문화	958,909	
2	장애인	2,517,312	
3	독거노인	955,000	
4	편부모	3,931,313	
5	기초 수급자	1,553,820	
6	기초수급자 & 독거노인	82,765	기초수급자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 27.7%,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비율 34%
7	기초수급자 & 독거노인 & 다문화	1,630	다문화인구 × 0.0197 • 1.97 = 다문화가정인구/전국민인구
8	기초수급자 & 한부모 & 다문화	5,280	9번 × 0.0197
9	기초수급자 & 한부모	263,745	기초수급자 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율 12.2% × 2.46 • 2.46 = 한 부모 가구 평균 가구원수

부록

10	기초수급자 & 독거노인 & 장애인	41,913	33번 × 0.09 • 0.09 = 기초수급 독거노인/전체 기초수급자
11	기초수급자 & 독거노인 & 장애인 & 다문화	825	10번 × 0.0197
12	기초수급자 & 장애인 & 다문화	21,216	17번 × 0.184 • 0.184 = 기초수급 장애인/전체 장애인
13	기초수급자 & 장애인 & 다문화 & 한 부모	1,697	12번 × 0.08 • 0.08 = 한 부모가구원수/전국민인구
14	기초수급자 & 장애인 & 한 부모	28,942	19번 × 0.0197
15	독거노인 & 장애인	49,339	전체 장애인 × 0.0196 • 0.0196 = 독거노인인구/전국민인구
16	독거노인 & 장애인 & 다문화	2,259	17번 × 0.0196
17	장애인 & 다문화	115,305	출처 : 2009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부
18	장애인 & 한 부모 & 다문화	3,098	19번 × 0.0197
19	장애인 & 한 부모	157,296	출처 : 장애인 실태조사, 2008 보건복지부
20	차상위 & 독거노인 & 장애인	11,316	10번 × 0.27 • 0.27 = 차상위 장애인/기초 수급자 장애인 수
21	차상위 & 독거노인 & 장애인 & 다문화	222	11번 × 0.27
22	차상위 & 장애인 & 다문화	5,728	12번 × 0.27
23	차상위 & 장애인 & 한 부모 & 다문화	458	13번 × 0.27
24	차상위 & 장애인 & 한 부모	7,814	14번 × 0.27
25	차상위 & 독거노인	29,795	6번 × 0.36 • 0.36 = 차상위 인구/기초 수급자 인구 수
26	차상위 & 독거노인 & 다문화	586	7번 × 0.36
27	차상위 & 다문화	110,196	33번 × 0.36
28	차상위 & 다문화 & 한 부모	1,900	8번 × 0.36
29	차상위 & 한 부모	94,948	9번 × 0.36
30	차상위	560,598	
31	차상위 & 장애인	128,937	차상위인구수 × 0.23 • 0.23 =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인구수 (출처 : 201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평가자료 『2010 12월말 행복 e음자료』)
32	기초수급자 & 장애인	465,701	전체 장애인의 68%, 2010 보건복지 통계연보
33	기초수급자 & 다문화	30,610	기초 수급자 × 0.0197 • 대한민국 총 인구수 : 48,580,293명 • 대한민국 총 가구수 : 17,339,000가구 • 대한민국 평균 가구원수 : 2.69명 • 한 부모 가구수 : 1,594,000가구 (출처 : 2010 e나라지표)

부록

〈2단계〉

번호	대상	인구수(명)	비고
1	1단계와 중복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313,875	전체 이용자의 약 90%로 추정
2	1단계와 중복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50,978	전체 입소자의 약 90%로 추정
3	1단계와 중복되는 경로당 인구	103,190	경로당인구 × 0.17 • 0.17 = 독거노인/전체 노인 수 (출처 : 2010 인구 총 조사, kosis)
4	1단계와 중복되는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수	135,285	735,247 × 0.184 • 0.184 = 1단계 총인구 수/전체 총 인구 수

〈3단계〉

번호	대상	인구수(명)	비고
1	1·2단계와 중복되는 교정시설 입소자	9,593	교정시설 입소자 × 0.21 • 0.21 = 1단계+2단계인구수/전체 총 인구 수
2	1·2단계와 중복되는 종합병원 입원자	27,921	종합병원 입원자 × 0.21
3	1·2단계와 중복되는 군인 수	126,000	군인 수 × 0.21
4	1·2단계와 중복되는 영세 자영업자 수	933	영세 자영업자 수 × 0.21
5	1·2단계와 중복되는 청소년 수	809,417	청소년 수 × 0.21

부록

부록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화관련 사업비

(단위: 원)

대상	총사업비	문화관련사업비
아동청소년	3,442,128,046	1,580,239,586
장애인	1,653,252,678	411,492,392
노인	725,633,018	173,818,000
다문화	776,744,071	47,534,364
지역사회	1,445,256,850	312,312,340
합계	8,043,014,663	2,525,396,682

부록

부록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상별 문화·예술 관련 배분 사업

〈아동·청소년〉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원)	지회명
아동청소년해외문화탐방 지원사업	고앤두	135,000,000	중앙
아이들과미래 안산지역아동미술교육프로젝트	아이들과미래	70,000,000	중앙
소외아동감성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행복한소리	고덕지역아동센터	5,000,000	서울
건강한청소년 문화만들기 지원사업		87,263,320	경북
서울지역 빈곤청소년을 위한 독서 매뉴얼 제작 및 시범적용 사업 -희망의 인문학 프로젝트	독서대학르네21	48,320,000	서울
전통문화체험 "나눔20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47,000,000	중앙
저소득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23,749,000	울산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향상을 위한 동아리활동 프로젝트	이리보육원	14,632,400	전북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지원 - 어두움을 밝혀주는 반딧불 놀이터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9,000,000	인천
저소득장애아동 및 청소년문화탐방 사업	장흥종합사회복지관	9,000,000	전남
소외계층역사문화탐방	장흥군	9,000,000	전남
빈곤 결손 방임 가정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해피존문화존-섬따라 뱃길따라 "	1318HappyZone울산	8,540,000	울산
재능 나눔을 위한 공연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기차길열작은학교	8,100,000	인천
문화적 소외를 받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성남우리공부방지역아동센터	6,900,000	경기

부록

아동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가톨릭대학교청년사업단	5,000,000	경기
소외계층 아동 전통문화교실	사리지역아동센터	4,950,000	충북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공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4,000,000	중앙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예술 감상 충전 프로젝트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3,397,500	광주
꿈쟁이 오케스트라 나눔	꿈쟁이지역아동센터	2,490,000	제주
예술을 통해 " 악동들이 꿈꾸다 "	화북지역아동센터	2,060,000	제주
요보호 아동의 문화를 위한 영상이 있는 커다란 세상	금창지역아동센터	2,000,000	인천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아동 놀토프로그램 " The fun school " - 문화체험학습 중심으로	서당골지역아동센터	17,000,000	대구
시설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오케스트라 육성	나주금성원	11,000,000	전남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음악적 발달을 위한 실용음악 배움 서비스 사업	목포아동지역아동센터	7,400,000	전남
꿈을 만들어가는 미술공장	여수열린지역아동센터	4,800,000	전남
저소득층 아동 예체능 지원사업		51,600,000	인천
장애인 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상무고등학교	2,000,000	광주
저소득층 해양환경 생태.문화캠프	한국수중환경협회	10,000,000	중앙
저소득 아동을 위한 아트드림 문화동아리 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협회	300,000,000	중앙
아트드림 저소득층 음악인재 양성지원사업		48,800,000	중앙
시설아동 문화생활체험 현장학습지원사업	의성자혜원	780,000	경북
도서산간벽지 아동 문화체험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천사보육원 (천사의집)	49,300,000	중앙
아동문화 복지활동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8,000,000	인천
녹색교통운동 교통사고유자녀 캠프 및 음악교육 지원사업	녹색교통운동	20,000,000	서울

부록

저소득 청소년 예체능소질 개발을 위한 꿈나무 육성사업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5,000,000	부산
저소득아동 제주도 문화체험 지원사업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	10,000,000	충남
사진찍기를 통한 아동들의 올바른 자기이해와 세계관 형성 지원사업	꿈샘지역아동센터	5,000,000	전남
소외아동 감성향상 프로젝트 '예술마루'	아이들과미래	60,000,000	중앙
우리전통 문화체험과 나눔 지원사업	풀씨배움터	2,079,700	경기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음악활동 프로그램	문현지역아동센터	6,000,000	부산
아동문화체험 활동 사업	신애원	1,000,000	경기
건강한청소년 문화만들기 지원사업		77,992,423	경북
저소득층 자녀 초청 고궁견학지원 사업	한국의재발견	30,000,000	중앙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예술 활동프로그램 "무한상상으로 펼치는 행복세상 도담도담 예술놀이터"	청운지역아동복지센터	12,780,000	서울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여가활동프로그램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8,888,000	강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문화체험 기회의 지속적 지지를 위한 음악체험활동	화목지역아동센터	6,000,000	부산
농촌지역 저소득 빈곤 아동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문화체험 사업	움사랑지역아동센터	4,850,000	강원
저소득층 아동 클래식 교실	무산지역아동센터	4,450,000	강원
저소득가정 아동의 정서 문화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4,000,000	충남
농·산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드림키즈)	해오름지역아동센터	3,930,000	강원

부록

한부모가정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푸른하늘 은하수'	성은모자원	3,202,500	강원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사우팅" 지원사업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3,000,000	경기
우리가락뮤지컬 극단반디의 희망이야기	반석지역아동센터	3,000,000	강원
한부모가정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푸른하늘 은하수'	성은모자원	2,900,000	강원
저소득 아동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역사를 찾아서-천혜의 자연과 역사의 현장을 가다)	꿈자리지역아동센터	2,000,000	충남
둔내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학습과 문화체험을 위한 방학교실	황성노인복지센터	1,975,000	강원
저소득층 기초학습 특기적성 문화체험을 위한 지원 사업	계룡사랑지역아동센터	1,835,000	충남
저소득 아동 농촌체험 프로그램지원	우리두리지역아동센터	1,500,000	충남
청소년 문화재사랑캠프-청소년과 문화재가 함께하는 1박 2일	사단법인 사회문화나눔협회	30,000,000	중앙
저소득 가정 문화나눔 지원사업		122,774,743	경북
저소득층 자녀 문화예술교육 '포스코 헬로 아트 클래스'	메세나협의회	100,000,000	중앙
행복한 밥상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10,000,000	중앙
총합		1,580,239,586	

부록

〈장애인〉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원)	지회명
지역사회소통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40,000,000	중앙
중증(지적)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강좌 " 기슴 활짝 대문 밖으로 "	참아름다워라일터	17,541,000	부산
재가장애인 여가지원 및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봐 U+(You Plus)~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14,032,000	충북
성인시각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자신감 고취를 위한 동화구연 교실 " 이야기 속으로 세상 속으로 "	부산점자도서관	13,175,000	부산
장애인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클래식기타클럽운영 및 순회공연 '세고비아프로젝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1,350,000	제주
발달장애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교육프로그램	하트하트재단	10,250,824	중앙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지원 위한 놀토 활용 체험 프로그램	한국장애인부모회전주지부	9,690,000	전북
시각장애인 여가 및 나들이 프로그램 노래교실과 떠나는 신나는 세상나들이	제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9,434,000	충북
지적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을 위한 행복갤러리	만복원	9,000,000	전북
중증장애인의 문화체험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자조모임 지원사업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8,820,000	전북
장애인의 직업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 칼라풀 데이(Colorful Day) "	작업활동센터일배움터	8,588,000	제주
동그라미 장애인 문화재 지원사업	동그라미장애인학교	8,020,000	울산
성인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천의 문학과 소통하기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8,000,000	인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역사기행[동행-同行]	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	7,640,000	인천

부록

음성증상이 강한 만성정신장애인의 증상완화를 위한 활력증진 여가프로그램 내 삶의 비타민	강화정신요양원	7,480,000	인천
색다른우리-예술로하나됨	푸른울타리주간보호시설	7,232,000	울산
신장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기협회	7,080,000	경기
지적장애인을 위한 전통 여가 프로그램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7,000,000	광주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음악활동 지원 프로그램	새소망주간보호시설	6,860,000	전북
시각장애인 역사문화 탐방 " history holic "	경남점자정보도서관	6,690,000	경남
우리도 전문화된 여가생활을 하고 싶어요	송죽원	6,400,000	제주
지역내 거주하는 경증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각화종합사회복지관	5,900,000	광주
시각지적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공연활동	동트는마을	5,393,000	경기
자원봉사자와 지적장애인이 함께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5,000,000	광주
발달장애학생의 한지공예를 통한 정서 함양 프로그램	숫대장애인주간보호센터	5,000,000	광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 문화/건강 지킴이 "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4,760,000	제주
사진으로 만드는 추억	선명요육원	4,050,000	대구
중복시각장애인 찾아가는 품물패 공연활동	광주영광원	4,000,000	광주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여가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남양주시지부	3,767,000	경기
정신장애인의 정서함양을 위한 현대문학 체험 프로그램 카타르시스에 빠지다!	사회복귀시설디딤터	3,136,000	충북

부록

행복마을거주인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	행복마을	2,500,000	대전
지적장애인 문화생활비 지원	사회복지회남양그룹홈	2,000,000	경기
지적장애인들의 문화활동 도모를 위한 도예교실	영화장애인주간보호센터	6,500,000	광주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여가가능향상 프로그램 함께 하는 해피데이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7,650,000	전남
시각장애인의 손끝으로 표현하는 도예 체험교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남지부	4,000,000	전남
장애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사업 <아해!플레이> - Art & Heart! Play!	사랑나눔위캔	30,000,000	중앙
중증장애인 여가 문화활동 기반마련 사업 "우리들도 따따라"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9,800,000	제주
중증장애인 여가 문화활동 기반마련 사업 "우리들도 따따라"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6,250,000	제주
지적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 및 여가활동	신아원	3,000,000	중앙
생활아동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기 구입	혜진원	2,000,000	울산
동기유발형 문화예술창작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활성화 프로젝트 "완(전)소(중)한 나만의 장신구"	강남장애인복지관	13,700,000	서울
중증장애인 풍물패 동아리지원을 통한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교류 증진	정다운마을	10,016,000	강원
저소득 영구임대지역 성인남성장애인의 자아성취감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Green Life Style 만들기 프로그램	수서종합사회복지관	7,940,000	서울
오리의꿈(오카리나악기 배우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	4,580,000	강원

부록

농촌지역 시설장애인과 재가노인의 건강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여가문화 통합프로그램	갈거리사랑촌베니노의집	4,200,000	강원
손으로 보는 세상(시각장애인 노후생활 질 향상을 위한 여가지원프로그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제군지회	3,703,000	강원
시각장애인에게 건전한 문화 활동과 배움의 기쁨을 주는 "몸으로 배우는 우리소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	3,550,000	강원
시각장애인에게 건전한 문화 활동과 배움의 기쁨을 주는 "몸으로 배우는 우리소리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	3,000,000	강원
중증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소집단 여가활동 프로그램 '하누리'	센터	2,742,000	강원
성인장애인을 위한 여가활동지원프로그램	삼척종합사회복지관	2,046,608	강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적장애청소년 동아리활동 "함께 사는 세상"	도래샘주간보호소	2,005,960	강원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아 산시지회	2,000,000	충남
역사유적지탐방 해양체험프로그램 중증장애인등반대회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홍성	2,000,000	충남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중증시각장애인의 재활의지 함양 위한 도자기체험사업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 회천안시지회	2,000,000	충남
재가중증장애인 문화체험 나들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1,620,000	충남
중증시각장애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물놀이 사업	논산시각장애인연합회	1,400,000	충남
Fun Fun 즐기는 우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문화생활 및 파티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해 밀터	1,000,000	경기
시각장애인 문화재 및 유적지 역사탐방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성지회	1,000,000	충남

부록

시각장애인 풍물교실 " 소리로 하나 되는 세상 "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태안군지회	1,000,000	충남
옛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예산군시각장애인연합회	1,000,000	충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연기군시각장애인연합회	1,000,000	충남
추석맞이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수원중앙주간보호센터	1,000,000	경기
총 합		411,492,392	

〈노인〉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원)	지회명
선진노인문화 발전을 위한 실버언론봉사단 " 온에어 "	중구노인복지관	13,970,000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노인의 황혼우울과 자살예방을 위한 노년기 통합 여가 활동 사업	남원사회복지관	11,310,000	전북
꼬맹이와 은빛 청년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보물찾기	화명종합사회복지관	10,150,000	부산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청소년의 세대 통합을 위한 여가지원 프로그램 'bravo! Super senior2'	나눔의마을	10,000,000	대전
시설재가 어르신들의 동아리활동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자존감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선우행복마을	7,600,000	대전
노인의 전래놀이 교육을 활용한 13세대 통합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사업(재미있게 놀자!)	청주우암시니어클럽	7,000,000	충북
여가선용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한 천연염색 프로그램	영산노인전문요양원	7,000,000	전남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어르신 여가활동 프로그램	세화요양원	2,340,000	제주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어르신 여가활동 프로그램	세화요양원	2,340,000	제주
저소득노인 여가지원사업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10,000,000	경남
경로당 이용노인 여가 지원사업	오라3동경로당	1,000,000	제주

부록

저소득 밀집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 프로그램 '밝은 뇌를 위하여'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	63,700,000	강원
노인 여가 증진을 위한 " 프로그램실 마루바닥 설치 " 및 " 야외 벤치 지붕 설치 "	속초시노인복지관	8,570,000	강원
행복이 가득한 문화센터 (어르신께 알맞은 문화/여가 지원사업)	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	5,645,000	강원
신노인 미디어문화 선도를 위한 Sliver Cinema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4,505,000	충남
입소 어르신 여가선용을 위한 원예치료 및 천연비누 만들기	정선군노인요양원	4,000,000	강원
저소득 어르신 건강여가지원 프로그램 " 따뜻한 세상 "	명륜종합사회복지관	2,588,000	강원
복지의 지지체계가 필요한 재가노인의 신체/정서/여가문화 지원 집단프로그램 '행복발전소'	황성노인복지센터	2,100,000	강원
총 합		173,818,000	

〈다문화〉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원)	지회명
다문화및저소득아동 미술치료프로그램 지원사업	(사)국민희망포럼	10,000,000	서울
시설거주여성가장의 삶의 활력 증진 및 성취감을 위한 취미 활동 지원 프로그램	청학모자원	4,490,000	부산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뷰티 체험 지원사업	신광모자원	300,000	전북
한부모 조손가정의 심리정서 여가문화사업 " 손에 손잡고 "	금강종합사회복지관	19,490,000	충남
나들이 및 문화체험	포항모자원	600,000	경북
모범외국인 근로자 가족초청 '한국문화체험사업'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12,654,364	경기
총 합		47,534,364	

부록

〈지역사회〉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원)	지회명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마을 " 금곡동 "	동원종합사회복지관	9,610,000	부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석교동복지만두레	2,000,000	대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	한국메세나협의회	300,000,000	중앙
저소득층 자녀 문화관광 견학	양주시지역사회민관복지 협의체	702,340	경기
총 합		312,312,340	

부록

부록5.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설문지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조사 일시 : 201 년 월 일

CODE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문화나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청소년은 물론 일반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나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 원 장 오 광 수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교 수 정 무 성

※ 다음은 본 설문에 앞서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나눔사업 소개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및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화나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① 문화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관람료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 ② 소외계층 문화순회 :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순회하면서 문화공연을 개최
- ③ 사랑티켓 : 아동·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 지원
- ④ 전통나눔 : 전통예술 공연, 전통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영상물 제작 배포.
- ⑤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 지방문예회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
- ⑥ 공공박물관, 미술관 특별전시 관람 : 문화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특별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포함) 관람기회 제공
- ⑦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 장애인예술단체에 문화예술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부록

I.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조사

1. 문화나눔사업에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 하게 되었습니까?
 - ① 지역의 문화 및 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
 - ②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 ③ 주위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 ④ 부모 등 가족을 통해서
 - ⑤ 인터넷을 통해서
 - ⑥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 ⑦ 기타()

2.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 입니까?
 - ①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 ②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 ③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 ④ 주위 사람들(친구 등)의 권유로
 - ⑤ 부모 혹은 자녀 등 가족의 권유로
 - ⑥ 학교 과제 및 선생님의 권유로
 - ⑦ 기타()

3. 문화바우처 사업 중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V) 하여 주십시오.
 - ① 문화바우처 가구당 지원을 개인당 지원으로 해야 한다.
 - ② 문화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을 넓혀야 한다.
 - ③ 문화바우처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한다.
 - ④ 지원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예 : 문화예술교육 등)
 - ⑤ 문화바우처 사업과 수혜자 간에 연결해주는 매개인력이 필요하다.
 - ⑥ 기타()

부록

7. 전시 관람을 위해 귀하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V) 하여 주십시오.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7-1	지역 내 전시시설 확충					
7-2	수준 높은 전시회 제공					
7-3	재미있는 전시회 제공					
7-4	수도권 전시 지방 순회					
7-5	찾아가는 전시					
7-6	해설 있는 전시					
7-7	사전 교육 후 관람					
7-8	식사 및 간식 제공					
7-9	교통편의 제공					

Ⅲ. 기타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수요

8.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더 많은 장애인에게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② 소외계층 비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
- ③ 문화예술분야를 장르별로 더 확대해야 한다.
- ④ 1인 당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 ⑤ 창작을 위한 물품구입을 지원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
- ⑥ 기타()

9. 귀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6-1 항목로)
- ② 없다(6-2 항목로)

부록

11. 위의 보기 중 ⑨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느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① 미술 전시회(사진, 서예) | ②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포함) |
| ③ 전통예술 공연(국악, 풍물, 민속극) | ④ 연극 (뮤지컬 포함) |
| ⑤ 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 ⑥ 영화 |
| ⑦ 도서관 이용 및 독서 | ⑧ 역사문화유산 탐방 |
| ⑨ 문화예술 자원봉사 | ⑩ 기타() |

12. 귀하가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V) 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비용의 적절성 | ② 프로그램의 수준 |
| ③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 ④ 주최 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
| ⑤ 교통의 편의성 | ⑥ 편의시설의 구비 여부 |
| ⑦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 보도 | |
| ⑧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및 이웃들의 권유 | |
| ⑨ 기타() | |

13. 귀하가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V) 하여 주십시오.

- ① 홍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 ② 프로그램 별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른다.
- ③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다.
- ④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다.
- ⑤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다.
- ⑥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 ⑦ 교통이 불편하다.
- ⑧ 시설(편의시설 포함)이 열악하고 불편하다.
- ⑨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
- ⑩ 기타()

부록

V. 일반적 특성에 관한 항목

14. 응답지역 : _____시(도) _____구(군)
15.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16. 나이 : _____세
17. 장애 유무 : ① 유 ② 무
18. 결혼 여부 : ① 미혼 ② 기혼(동거 포함) ③ 기타(별거, /이혼/사별)

〈성인용〉

19.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업 이상
2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② 서비스/판매직
 ③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④ 자영업(소상인 등)
 ⑤ 농업, 어업, 축산업
 ⑥ 주부
 ⑦ 학생
 ⑧ 정년퇴임 연금생활자
 ⑨ 무직
 ⑩ 기타 ()
2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부록

〈청소년용〉

2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재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재학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재학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생

23. 귀하의 부모님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 ④ 중상 ⑤ 상 ⑥ 최상

24. 귀댁 가장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이상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